제30회 총회

"변화와 혁신으로 함께 웃는 감리교회"

임시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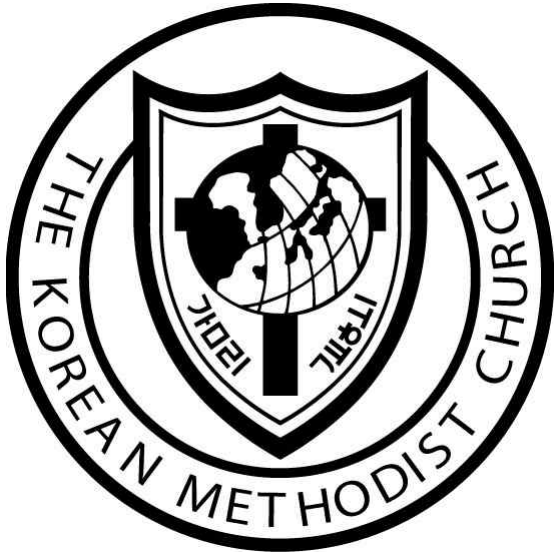

제1편 역사와 교리

원안(2012년 장정)	개정안	비고
제 1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 【3】 2. 미감리회의 한국 선교 미감리회의 선교는 교육과 의료, 문서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은 한국 근대 교육의 요람이 되어 많은 지도자를 배출하였으며, 시병원과 보구여관은 한국 근대 의료사업의 요람이 되었다. 감리회 출판사에서 펴낸 성서와 서적은 복음 전도에 유효한 도구가 되었고 한글문화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1887년 7월 24일 배재학당 학생 박중상이 첫 감리교 세례교인이 되었고, 1887년 10월 9일 서울에서 오늘의 정동제일교회의 모체인 '벧엘예배당'이 설립되었다.** 1897년 서울과 인천, 평양에서 엡윗청년회가 창설되었는데 이는 오늘의 감리교 청년회, 청장년선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의 모체다. 선교 초기부터 신학반과 신학회를 조직하고 한국인 목회자 양성을 추진하여 1901년 최초 한국인 목사로 김창식 목사, 김기범 목사를 배출했다. 미감리회에서는 1902년 하와이 이민 선교를 시작으로 북만주와 몽고, 일본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제 1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 【3】 2. 미감리회의 한국 선교 미감리회의 선교는 교육과 의료, 문서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은 한국 근대 교육의 요람이 되어 많은 지도자를 배출하였으며, 시병원과 보구여관은 한국 근대 의료사업의 요람이 되었다. 감리회 출판사에서 펴낸 성서와 서적은 복음 전도에 유효한 도구가 되었고 한글문화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1885년 7월 29일 정동에 예배처가 마련되고 정동을 중심으로 한 감리교 신앙공동체는 1885년 10월 11일 첫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고, 1887년 7월 24일 배재학당 학생 박중상에게 첫 세례를 거행하였으며, 1887년 10월 9일 남대문 안에 벧엘예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예배처소를 마련하여 선교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1897년 서울과 인천, 평양에서 엡윗청년회가 창설되었는데 이는 오늘의 감리교 청년회, 청장년선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의 모체다. 선교 초기부터 신학반과 신학회를 조직하고 한국인 목회자 양성을 추진하여 1901년 최초 한국인 목사로 김창식 목사, 김기범 목사를 배출했다. 미감리회에서는 1902년 하와이 이민 선교를 시작으로 북만주와 몽고, 일본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였다.(개정)	**※ 수정 근거자료** **1. 1886. 4. 25 아펜젤러 선교사 일기** **2. 1886. 6. 미감리회 연회 보고서** **3. 정동제일교회 모체라고 하는 벧엘예배당은 조선인들만의 예배모임이라고 확인됨. 현재는 소멸되고 없음.**

제2장 교리 제 4 절 사회신경	제2장 교리 제 4 절 사회신경 【00】 1. 사회신경(1930년)(신설) 인류는 겨레와 나라의 차별이 없이 천지의 주재시며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의 같은 자녀임을 믿으며 인류는 형제주의 아래에서 이 사회를 기독주의의 이상사회로 만듬이 우리 교회의 급무로 믿어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회신경을 선언하노라. 1. 인종의 동등 권리와 동등 기회를 믿음. 2. 인종과 국적의 차별 철폐를 믿음. 3. 가정생활의 원만을 위하여 일부일처주의의 신성함을 믿으며 정조문제에 있어 남녀간 차별이 없음을 믿으며 이혼의 불행을 알고 그 예방의 방법을 강구 실행함이 당연함을 믿음. 4. 여자의 현대 지위가 교육, 사회, 정치, 실업 각계에 있어서 향상 발달하여야 될 것을 믿음. 5. 아동의 교육받을 천부의 권리를 시인하여 교육에 힘쓰고 아동의 노동 폐지를 믿음. 6. 인권을 시인하여 공사창 제도 기타 인신매매의 여러 가지 사회제도를 반대함이 당연함을 믿음. 7. 심신을 패망케 하는 주초와 아편의 제조판매 사용을 금지함이 당연함을 믿음. 8. 노동 신성을 믿고 노동자에게 적합한 보호와 대우가 당연함을 믿음. 9. 정당한 생활유지의 품삯과 건강을 해하지 않을	※1930년 교리적 선언과 같이 1930년 사회신경도 역사적 문서로서 장정에 보존해야 함. 단을 신설함. 【56】뒤에 단 신설이 요청되며 이후 전체적으로 단 조정이 필요함

	정도의 노동시간을 가지게 함이 당연함을 믿음. **10. 7일중 1일은 노동을 정지하고 안식함이 필요함을 믿음.** **11. 노동쟁의에 공평한 중재제도가 있음이 필요함을 믿음.** **12. 빈궁을 감소케 함과 산업을 진흥케 함을 믿음.** **13. 불건전한 오락과 허례 사치 등으로 금전과 시간을 낭비함은 사회에 대한 죄악임을 믿음.**	
【57】 감리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1930년 제1회 총회에서 사회신경을 채택하고 이를 신앙의 실천적 목표로 삼아,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루는 데 이바지하여 왔다. 우리는 오늘의 시대가 안고 있는 새로운 문제들을 앞에 놓고 우리의 사회적 삶의 새로운 실천 원칙을 받아들여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 – 이하 생략 –	【57】 **2. 사회신경(1997년)**(개정) 감리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1930년 제1회 총회에서 사회신경을 채택하고 이를 신앙의 실천적 목표로 삼아,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루는 데 이바지하여 왔다. 우리는 오늘의 시대가 안고 있는 새로운 문제들을 앞에 놓고 우리의 사회적 삶의 새로운 실천 원칙을 받아들여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 이하 전과 같음 –	
부 록 2. 연합**속회** 총칙(영국감리교회) 【60】 초대적 그리스도교의 정신과 교리가…… ……(중략)…… 이로 말미암아 온 영국 안에 있는 웨슬리 교회의 기초가 되었으니 그 연합**속회**의 총칙은 아래와 같다.	부 록 2. 연합**신도회** 총칙(영국감리교회) (개정) 【60】 초대적 그리스도교의 정신과 교리가…… ……(중략)…… 이로 말미암아 온 영국 안에 있는 웨슬리 교회의	※ 번역정정 The United Society를 연합신도회로 번역 정정 연합속회 → 연합신도회

	기초가 되었으니 그 연합**신도회**의 총칙은 아래와 같다. (개정)	
【62】 제1은 남을 해롭게 하지 말며 흔히 하기 쉬운 각양 악한 것을 피할 것이다. ……(중략)…… 필요한 일(신병 같은 것) 밖에 술을 마시는 것이나 취하는 것과, 싸움과 시비와 떠들음과 형제간에 송사하는 것과,	【62】 제1은 남을 해롭게 하지 말며 흔히 하기 쉬운 각양 악한 것을 피할 것이다.…… ……(중략)…… 필요한 일(신병 같은 것) 밖에 술 마시는 것이나, 취하는 것과, **노예를 갖고 있거나 인신매매하는 일,** 싸움과……(개정)	※ 번역과정 중 탈자 삽입

제2편 헌법

원안	개정안	비고
제 2 편 헌 법 **전 문** 【65】 개신교의 공통적인 신학적 전통과 18세기 존 웨슬리의 복음주의에 기초하여 설립된 영국감리교회가 미국에 선교하여 미국감리교 연회를 1784년에 조직하였다. 이 미국감리교회가 맥클레이(R. S. Maclay)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 1884년 6월 24일 고종황제로부터 학교와 병원사업을 윤허 받고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H. G. Apenzeller) 목사와 **6월 3일** 스크랜턴(W. B. Scranton) 의사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이어서 1895년 10월 18일 미남감리교회 선교사로 리드(C. F. Reid) 박사를 파송하여 입국함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시작되었다. 1930년에 미국감리회 선교부와 미국남감리회 선교부가 한국에서 하나가 되어 기독교조선감리회를 조직하고 그 동안 감리회의 신앙과 교리, 조직과 제도, 그리고 입법과 행정의 표준이 되어 온 바를 12월 2일에 열린 제1차 총회에서 「교리와 장정」으로 제정하였다. 그 후 수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다시 2007년 10월 입법의회에서 개정하게 되었다.	**제 2 편 헌 법** **전 문** 【65】 개신교의 공통적인 신학적 전통과 18세기 존 웨슬리의 복음주의에 기초하여 설립된 영국감리교회가 미국에 선교하여 미국감리교 연회를 1784년에 조직하였다. 이 미국감리교회가 맥클레이(R. S. Maclay)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 1884년 6월 24일 고종황제로부터 학교와 병원사업을 윤허 받고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H. G. Apenzeller) 목사와 **5월 3일** 스크랜턴(W. B. Scranton) 의사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이어서 1895년 10월 18일 미남감리교회 선교사로 리드(C. F. Reid) 박사를 파송하여 입국함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시작되었다. 1930년에 미국감리회 선교부와 미국남감리회 선교부가 한국에서 하나가 되어 기독교조선감리회를 조직하고 그 동안 감리회의 신앙과 교리, 조직과 제도, 그리고 입법과 행정의 표준이 되어 온 바를 12월 2일에 열린 제1차 총회에서 「교리와 장정」으로 제정하였다. 그 후 수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다시 2007년 10월 입법의회에서 개정하게 되었다.	스크랜턴의 입국일이 역사적 고증을 거쳐 5월 3일임이 확인됨.
제 4 장 감독회장과 감독 【82】 제17조(감독회장) 감리회의 최고임원으로 감독회장을 둔다. ① 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제 4 장 감독회장과 감독** 【82】 제17조(감독회장) 감리회의 최고임원으로 감독회장을 둔다. ① 좌동	

원안	개정안	비고
총괄한다. ② 감독회장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으로 정한다. ③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 전임으로 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 은퇴한다.**	② 좌동 ③ 감독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교회를 담임해야 하며 재임할 수 없다.**(개정)	임기 2년, 교회 담임을 겸임하여야 하고, 임기 마친 후 은퇴조항은 삭제.
【83】 제18조(감독) 각 연회별로 다음과 같이 감독을 둔다. ① 감독은 각 연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정책에 따라 연회의 사업과 행정을 총괄한다. 다만, 미주특별연회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② 감독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으로 정한다. ③ 감독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겸임제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83】 제18조(감독) 각 연회별로 다음과 같이 감독을 둔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감독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교회를 담임해야 하며 재임할 수 없다.**(개정)	교회 담임을 겸임하여야 하고, 연임뿐 아니라 재임할 수 없음.
제9장 헌법 및 법률 개정	**제9장 헌법 및 법률 개정**	
【92】 제27조(헌법 및 법률 개정안의 공고) 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입법의회** 개최 **30일 전까지 감독회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률개정안은 입법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92】 제27조(헌법 및 법률 개정안의 공고) 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감독회장이** 입법의회 개최 30일 전까지 **본부 홈페이지와 기독교타임즈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② 좌동	헌법개정안 공고의 주체와 방법을 명확히 함.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원안	개정안	비고
제2장 교 회 제1절 개체교회 【103】 제2조(개체교회) 의회법에 따라 당회가 구성된 교회를 개체교회라 한다.	**제2장 교 회** 제1절 개체교회 【103】 제2조(개체교회) 의회법에 따라 당회가 구성된 교회를 개체교회라 한다. **다만, 당회를 구성하지 못한 교회는 기도처라 한다.**(개정)	입교인 12명 이하 교회를 기도처로 분류함
【117】 제16조(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신앙이 돈독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자로 40세 이상이 되고 **67세 미만** 된 이로서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하고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이 ② 기획위원회의 천거를 받아 당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신천장로로 결의된 이 ③ 신천장로 고시과정에 합격하고 지방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 통과를 받고 장로증서를 받은 이	【117】 제16조(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신앙이 돈독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자로 40세 이상이 되고 **65세 미만** 된 이로서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하고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이(개정) ② 좌동 ③ 좌동	67세→ **65세**
【123】 제22조(장로의 은퇴) **장로는 70세(2월 말 기준)가 된 후 처음 개최되는 지방회에서 은퇴한다.** 다만, 65세 이상이 된 장로는 자원 은퇴할 수 있다.	【123】 제22조(장로의 은퇴) **2월말 기준으로 70세가 된 장로는 당해 연도 지방회에서 은퇴한다**. 다만, 65세 이상이 된 장로는 자원 은퇴할 수 있다.(개정)	

원안	개정안	비고
제 7 절 기관 파송 전도사, 수련목회자, 개체교회 서리담임자 【131】제30조(기관 파송 전도사) ① 기관 파송 전도사(군목, 선교사, 그 밖의 파송)는 감리사가 파송한 기관에서 맡은 일에 사역한다. ② 준회원자격에 해당하는 이로, 선교사 인준을 받은 이와 군목자격 취득한 이 ③ 수련목회자로 전문기관에 파송 받은 이 ④ 군목으로 입대할 기관파송 전도사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과, 목원대학교 신학과, 협성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이로 하며,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에는 감리교회사, 감리회 「교리와 장정」, 웨슬리 신학, 웨슬리 영성수련, 교회성장학, 전도학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 7 절 서리 파송 전도사 (개정) 【131】제30조(서리 파송 전도사) 서리 파송 전도사는 각 항에 해당하는 이를 말한다. (개정) ① 개체교회 서리 담임자 (개정) ② 수련 전도사 (개정) ③ 국외 선교사 후보자(개정) ④ 군종사관후보생(개정)	'서리 파송 전도사' 로 통합
【132】제31조(수련목회자의 자격) 수련목회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입교인이 된 후 7년 이상 경과되고 연령이 25세 이상으로 신앙이 돈독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이 ②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 목회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 ③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신학과)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신학과) 또는 연합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	【132】제31조(수련목회자의 자격) 원안 삭제 후 아래와 같이 개정	【132】제31조(서리파송전도사의 자격과 임면)과 중복

원안	개정안	비고
득한 이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감리교회사, 감리회 「교리와 장정」, 웨슬리 신학, 웨슬리 영성 수련, 교회성장학, 전도학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이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수련목회자가 될 수 없다. 1. 연회에서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교역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건강진단서(정신과 포함)를 받지 못한 이 2. 직무수행에 방해가 될 정도의 채무가 있거나 채무보증을 한 이 3. 음주, 흡연, 마약, 도박 등을 하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한 이		
	【132】제31조(서리 파송 전도사의 자격과 임면)(개정) **① 서리 파송 전도사는 입교인이 된 후 7년 이상 경과되고 신앙이 돈독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이(신설)** ② 감리회에서 설립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대학원 신학과** 또는 신학대학원, 목회신학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 다만, 미주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를 받은 이는 미주지역에 국한하여 목회할 수 있다. **(개정)** ③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또는 연합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한 이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감리교회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신설 - 서리파송전도사의 자격에 연회준회원의 자격을 이동 하고 연령제한(25세) 해제 ② 원안【167】①에서 이동 ‘감리회가 인정하는 대학교’ 삭제 아래 ③항 참조 ③ 원안【167】②에서 이동

원안	개정안	비고
	④ 감리회가 인정하는 **국내 신학대학원과 외국의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대학원 신학과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감리교회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④ 원안【167】③에서 이동 '국내의 신학대학원과 외국의 신학대학원', '감리교회 필수과목'으로 정리
	⑤ **국내·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연합감리회 소속 13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를 취득한 이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미주 감리교신학대학교의 대학원 신학과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감리교회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⑤ 원안【167】④에서 이동 '외국'→'국내·외' '감리교회 필수과목'으로 정리
	⑥ 감리회가 인정하는 **국내 신학대학원과 외국의 신학대학원이란 총회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승인한 신학대학원을 말한다. (개정)	⑥ 원안【167】⑤에서 이동 '신학정책협의회'→'총회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⑦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감리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를 취득한 이. (개정)	⑦ 원안【167】⑥에서 이동 '해외'→'외국의'
	⑧ 장애인 중 감리회본부의 위탁교육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신학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이 (개정)	⑧ 원안【154】④에서 이동
	⑨ 감리회가 요구하는 필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 감리교회사** **2. 교리와 장정** **3. 웨슬리 신학** **4. 웨슬리 영성 수련** **5. 교회 성장학** **6. 전도학**	⑨ 신설

원안	개정안	비고
	⑩ 제1항 부터 제7항에 해당하는 이는 개체교회 서리 담임자로 파송받을 수 있다.(개정)	⑩ 개체교회 서리 담임자 파송 자격
	⑪ 제1항 부터 제6항에 해당하는 이는 수련전도사 선발고시에 합격하고 목회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개체교회 또는 감리회 인정 선교기관에 수련전도사로 파송을 받을 수 있다.(개정)	⑪ 수련전도사 서리파송 자격
	⑫ 제1항 부터 제6항에 해당하는 이로서 선교훈련원에서 국외선교사 훈련과정을 마치고 국외선교사 후보자로 인준을 받은 국외 선교사 후보자는 개체교회에 1년간 파송받아 수련하고 연회준회원에 허입한 후 국외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있다.(신설)	⑫ 국외선교사 후보자 서리파송 자격
	⑬ 군종사관후보생은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과, 목원대학교 신학과, 협성대학교 신학과 또는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재학 중 국방부 군종사관후보생 선발고사에 합격하고,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또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이로 한다. 다만,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또는 연합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이는 감리회 3개 신학대학원에서 감리교회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신설)	⑬ 군종 사관후보생 서리파송 자격
	⑭ 4년제 신학원을 졸업하고 본인이 교회를 개척설립하여 교회재산을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는 서리전도사로 2년간 감리사의 파송을 받는다.	⑭ 원안【174】②항 제1호에서 이동
	⑮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서리 파송 전도사가 될 수 없다.(개정) 1. 연회에서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교역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건강진단서(정신과 포함)를 받지 못한 이	⑮ 원안【171】⑥항에서 이동 ‘정회원’→서리파송 전도사

원안	개정안	비고
	2. 직무수행에 방해가 될 정도의 채무가 있거나 채무 보증을 한 이 3. 음주, 흡연, 마약, 도박 등을 하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한 이 **⑯ 서리 파송 전도사는 구역인사위원회와 지방인사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감리사가 임면한다. 다만, 기관에서 수련받는 수련전도사는 기관 인사위원회와 지방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감리사가 임면한다.**(신설)	⑯ 서리파송전도사의 임면 절차
【133】 제32조(수련목회자의 파송) ① 수련목회자를 교회에 파송할 시 입교인 100명에 1명을 파송할 수 있**다. 파송기관은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종전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합격자 중 신학대학원 미필자는 신학대학원을 이수한 후 파송한다.** **② 수련목회자는 구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리사가 임면한다. 개체교회나 전문기관에 1년 동안 서리로 사역하고 연회과정 및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 준회원으로 허입된 이는 연회 감독의 파송을 받아 2년간의 준회원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때 준회원은 '전도사'로 호칭한다.** ③ 배우자나 부모가 담임자로 시무하는 교회에서는 수련목회자로 사역할 수 없다.	【133】 제32조(수련**전도사**의 파송) (개정) ① 수련전도사를 교회에 파송할 시 입교인 100명에 1명을 파송할 수 있**으며, 개체교회의 수련전도사 수는 연급별 1명, 총 4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② 삭제** **② 수련전도사를 감리회 인정 선교기관에 파송할 때는 정회원 목사가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신설) ③ 배우자나 부모가 담임자로 시무하는 교회에서는 수련**전도사**로 사역할 수 없다. (개정) **④ 수련전도사를 파송받는 교회 또는 기관은 수련전도사의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신설) **⑤ 수련전도사 파송을 요청하는 교회 또는 기관은 파**	① 수련전도사 파송 인원 제한 위 【132】 제31조(서리 파송 전도사의 자격과 임면) ⑮에 파송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삭제 원안 제2항 삭제 후 항 조절 ② 신설 ③ 수련목회자 → 수련전도사 ④,⑤,⑥,⑦ 신설

원안	개정안	비고
	송 신청서를 해당연회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교회와 기관은 수련전도사를 파송받을 수 없다. (신설) **⑥ 기관에서 수련받은 수련전도사는 수련과정을 마치고 유관기관에서 4년간 사역하여야 하며, 의무사역을 마치기 전에는 개체교회 담임자 또는 부담임자로 파송받을 수 없다.**(신설) **⑦ 개체교회에서 수련전도사 과정을 마친 이는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동일교회에서 계속 시무할 수 없다.**(신설)	
【134】 제33조(수련**목회자**의 직무) 수련**목회자**의 직무는 담임자의 지도 아래 일반목회, 교회운영관리, 사무행정 등에 관한 것을 수련한다.	【**134**】 제**33**조(수련**전도사**의 직무) 수련**전도사**는 개체교회 담임자 또는 감리회 인정 선교기관 정회원 목사의 지도 아래 일반목회, 교회운영관리, 사무행정 **또는 기관 사역에 필요한 사항**을 수련한다. **(개정)**	'수련목회자 → 수련전도사'
【135】 제34조(서리담임자의 자격과 임면) 개체교회 서리담임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35**】 제**34**조(서리담임자의 자격과 임면) (삭제)	위 【**132**】 제**31**조(서리담임자의 자격과 임면)와 중복
【137】 제36조(담임자의 파송) ① 개체교회 담임자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다. ②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③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137】 제36조(담임자의 파송)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안수 받은 목사가 기관에서 수련과정을 마치고 의무사역 기간을 필하고 개체교회 담임자로 파송 받으려면 정회원 연수교육 1회 이상을 받아야 한다.(신설)**	

원안	개정안	비고
【139】 제38조(담임자의 직무) 개체교회 담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영적 지도자 : 담임자는 영적 지도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담당한다. 1. 교회의 모든 예배 절차를 주관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식, 입교식, 성찬식, 혼례식, 장례식 등을 집례한다. 다만, 목사로 안수 받지 못한 교역자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례하지 못한다. 2. 속회를 지도하여 부흥 발전케 한다. 3. 모든 교인의 가정을 심방하여 신앙을 지도하며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4. 교회의 선교사업, 기독교교육사업, 사회사업, 문화사업 등의 진흥을 권장하고 지도한다. 5. 능력 있는 교회 청년들을 발굴하여 지도 육성하며 기독교사업에 헌신 봉사케 한다. ② 행정 책임자 : 담임자는 교회의 행정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교회 행정에 관한 책임을 지며 회의시 장정 또는 규칙을 해석하거나 감리사에게 문의하여 처리한다. 담임자는 사안에 따라 기획위원회, 당회, 구	【139】 제38조(담임자의 직무) 개체교회 담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좌동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좌동 **6. 감리회 신앙 전통과 교리를 전수하기 위하여 감리회 본부에서 발행한 각종 교재를 사용한다.**(신설) ② 좌동 1~8호는 좌동	

원안	개정안	비고
역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집행한다. 2.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회를 다스리고 교인을 지도한다. 3. 원입인과 세례인들에게 「교리와 장정」을 가르친다. 4. 교회에 속한 교인이 다른 교회로 이명 하여 가는 경우에는 이명증서를 교부한다. 5. 교회에 소속한 모든 교인의 주소, 성명, 세례, 임원피택, 혼례식, 장례식 등에 관해 기록한 교적부를 작성하여 보존한다. 6.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교회의 신령상 정황을 비롯하여 교인수와 사업 개요 등을 기록한 교회 현황 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한다. 7. 지방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감리사를 도우며 교회 상황을 감리사에게 보고하고 협력을 받는다. 8. 이웃 교회와 다른 교파 소속 교회와 친선을 도모하고 기독교 연합 사업기관에 협력한다. 9. 총회, 연회, 지방회에서 **배당한** 교회 부담금을 기일 내에 납부한다. 1년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담임자에 대하여는 감독이 직임을 정지시킨다. ③ 교회 회의의 주재자 : 개체교회 담임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회, 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9. 총회, 연회, 지방회에서 **배정한** 교회 부담금을 기일 내에 납부한다. 1년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담임자에 대하여는 감독이 직임을 정지시킨다. ③ 좌동	

원안	개정안	비고
【143】 제42조(부담임자의 파송 제한) ① 담임자가 별세하거나 은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담임자를 시무 중에 있는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하지 아니한다. ② 입교인 100인 이하의 교회에는 부담임자를 파송할 수 없다. ③ 교회를 분리하여 새로 교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담임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143】 제42조(부담임자의 파송 제한)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부부 교역자는 같은 교회에서 담임자와 부담임자로 사역할 수 없다.**(신설) **⑤ 기관에서 수련과정을 마치고 안수 받은 목사가 의무사역 기간을 필하고 개체교회 부담임자로 파송 받으려면 정회원 연수교육 1회 이상을 받아야 한다.**(신설)	【179】 제78조 교역자의 인사처리 ④ 참조
【164】 제6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1년에 **1회 이상 교회**의 회계와 문서처리 전반에 관하여 감사한 후 그 결과를 당회와 구역회에 보고한다.	【164】 제6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교회의 회계와 문서처리 전반에 관하여 감사한 후 그 결과를 당회와 구역회에 보고한다.	개체 교회 감사를 상반기와 하반기 명시
제3장 교역자 제 1 절 연회 회원 【167】 제66조(연회 준회원의 자격) 연회 준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회에서 설립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및 감리회가 인정하는 대학교의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 목회신학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 다만, 미주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받은 이는 미주 지역에 국한하여 목회를 할 수 있다.	제 3 장 교역자 제 1 절 연회 회원 【167】 제66조(연회 준회원의 자격) 연회 준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삭제)**	①【132】 제31조(서리파송전도사의 자격과 임면) ①로 이동

원안	개정안	비고
② 연세대학교 대학원(신학과) 또는 연합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한 이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감리교회사, 감리회 「교리와 장정」, 웨슬리 신학, 웨슬리 영성 수련, 교회성장학, 전도학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②【132】제31조(서리파송전도사의 자격과 임면) ②로 이동
③ 감리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감리교회사, 감리회 「교리와 장정」, 웨슬리 신학, 웨슬리 영성 수련, 교회성장학, 전도학을 포함한 2년간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③【132】제31조(서리파송전도사의 자격과 임면) ③로 이동
④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연합감리회 소속 13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미주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감리교회사, 감리회 「교리와 장정」, 웨슬리 영성 수련, 교회성장학, 전도학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④【132】제31조(서리파송전도사의 자격과 임면) ④로 이동
⑤ 감리회가 인정하는 대학원은 신학정책협의회에서 건의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승인한 대학원(M.Div.) 또는 신학대학원(M.Div. 또는 Th.M.)을 말한다.	⑤ (삭제)	⑤【132】제31조(서리파송전도사의 자격과 임면) ⑤로 이동
⑥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감리회가 인정하는 해외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	⑥ (삭제)	⑥【132】제31조(서리파송전도사의 자격과 임면) ⑥으로 이동
⑦ 제①항부터 제⑥항에 해당하는 이는 개체교회 서리담임자로 파송을 받아 준회원 과정을 거쳐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	⑦ (삭제)	

원안	개정안	비고
⑧ 제①항부터 제⑥항에 해당하는 이는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한 후 개체교회 또는 감리회 인정 선교기관에 수련목회자로 파송 받아 준회원 과정을 거쳐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	⑧ (삭제)	
⑨ 제①항부터 제⑥항에 해당하는 이는 지방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개체교회를 담임하거나 기관 또는 개체교회에서 수련목회자로 1년 동안 사역하고, 연회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 준회원으로 허입된 후, 2년간의 준회원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때 준회원은 '전도사'로 호칭한다.	⑨ (삭제)	
	① 서리 담임자로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개체교회에서 1년간 사역하고 지방회의 천거와 연회 과정고시 및 자격심사를 거쳐 연회에서 품행이 통과된 이(신설)	①,②,③,④,⑤,⑥ 신설
	② 수련전도사로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개체교회 또는 감리회 인정 선교기관에서 1년간 사역하고 지방회의 천거와 연회 과정고시 및 자격심사를 거쳐 연회에서 품행이 통과된 이(신설)	
	③ 국외 선교사 후보자로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개체교회에서 1년간 사역하고 지방회의 천거와 연회 과정고시 및 자격심사를 거쳐 연회에서 품행이 통과된 이(신설)	
	④ 군종사관후보생으로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개체교회에서 1년간 사역하고 지방회의 천거와 연회 과정고시 및 자격심사를 거쳐 연회에서 품행이 통과된 이 (신설)	
	⑤ 제1항, 제3항, 제4항에 해당하는 이는 연회 감독의 파송을 받아 2년, 제2항에 해당하는 이는 연회 감독의 파송을 받아 3년간의 준회원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때 준회원은 '전도사'로 호칭한다. (신설)	⑤준회원 과정에 대한 규정 수련전도사과정은 3년

원안	개정안	비고
	⑥ 준회원 과정을 마치고 목회지(부담임목사 및 기관파송 포함)가 결정된 이는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신설)	⑥ 준회원 과정을 마친 이의 목사안수와 정회원 허입규정
【169】 제68조(연회 준회원의 **보수(생활비)** 연회 준회원의 **보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회 준회원의 **보수(생활비)**는 해당 교회나 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구역 서리담임자의 보수(생활비)는 그 구역(개체교회)에서, 수련목회자의 보수(생활비)는 해당 교회나 기관에서 지급한다. 구역 서리담임자와 수련목회자는 자기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169】 제68조(연회 준회원의 **생활비**)연회 준회원의 **생활비는** 다음 각 항과 같다.(개정) ① 연회 준회원의 **생활비**는 해당 교회나 기관에서 지급한다.(개정) ② **모든 서리파송 전도사의 생활비**는 해당 교회나 기관에서 지급한다. **모든 서리파송전도사는 파송 시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보수(생활비)'→'생활비' ② '구역 서리담임자'→'모든 서리전도사'
【170】 제69조(목사안수) **목사로** 안수 받을 이는 준회원 2년 과정을 마치고 연회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종사관후보생, 국외선교사로 **파송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	【**170**】 제69조(목사 안수) **목사** 안수 받을 이는 준회원 과정을 마치고 연회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종사관후보생, 국외선교사로 **파송받을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 **안수를 받는다**. **(개정)**	자구 수정
【171】 제70조(연회 정회원 허입의 자격) 연회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준회원 과정을 마치고 목사안수를 받은 이 ② 감독이 파송한 개체교회나 기관에서 목회를 하고 입법의회에서 제정한 과정고시에 합격한 이	【171】 제70조(연회 정회원 허입의 자격) 연회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좌동 ② 좌동	

원안	개정안	비고
③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천거로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이 ④ 직무수행에 방해될 정도의 채무가 없고 타인의 채무보증을 한 사실이 없는 이 ⑤ 정회원으로 퇴직하였던 이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재허입할 수 있다. 1. 지방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1년 이상 서리로 시무한다. 2. 지방회의 천거로 본인이 퇴회한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아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정회원이 될 수 없다. 1. 연회에서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교역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건강진단서(정신과 포함)를 받지 못한 이 2. 직무수행에 방해가 될 정도의 채무가 있거나 채무보증을 한 이 3. 음주, 흡연, 마약, 도박 등을 하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한 이 ⑦ 군목으로 정회원에 허입할 이는 신학대학원(Th.M. 또는 M.div.)을 졸업하여야 한다.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1. 좌동 2. **퇴회한 연회의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천거하고, 파송 받을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아야 한다.(개정) ⑥ 좌동 1. 좌동 2. 좌동 3. 좌동 ⑦ 좌동	퇴회한 연회의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천거하고, 파송 받을 연회에서 복직을 결의
【179】 제78조(교역자의 인사처리)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개체교회 담임자, 부담임자, **수련목회자**의 인사문제는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	【179】 제78조(교역자의 인사처리)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개체교회 담임자, 부담임자, **수련전도사, 국외 선교사 후보자, 군종사관후보생**의 인사문제는 구역인사위원회에	① ‘수련전도사, 군종사관후보생, 선교사 후보자’ 삽입

원안	개정안	비고
정) ② 감리회 본부를 비롯한 각 기관의 교역자 인사문제는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③ 국내외에 파송하는 선교사의 인사문제는 소속교회 담임자의 천거와 지방 감리사의 제청으로 감리회 본부에서 선교사로 인준한 후 이를 연회 감독이 소속 선교사로 파송하고 감독회장이 연명한다. 단, 평신도 선교사는 선교국에서 인준하고 교회에서 파송하며 연회에 보고한다. ④ 부부 교역자는 같은 교회에서 담임자와 부담임자로 사역할 수 없다. 다만, 담임자의 배우자가 해당 분야의 기관 사역을 원할 때에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결의와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연회 감독이 기관목사로 파송할 수 있다. (개정) ⑤ 배우자나 부모가 담임자로 시무하는 교회에서는 **수련목회자**로 사역할 수 없다. ⑥ 선교사는 선교사 보고서에 입출국 서류를 포함하여 보고해야 하며, 선교지를 임의로 1개월 이상 이탈한 경우 진급을 보류한다.	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배우자나 부모가 담임자로 시무하는 교회에서는 **수련전도사**로 사역할 수 없다. (개정) ⑥ 좌동	⑤ ‘수련목회자’ → ‘수련전도사’
【182】 제81조(교역자의 은퇴) 교역자의 은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3월말 기준으로 70세가 된 교역자는 당해연도 연회에서 은퇴한다. ② 교역자는 65세 이상이 되면 연회에서 자원 은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체교회나 기관은 잔여임기에 대하여 노후 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20년 이상 재직한 이는 연회에서 공상 은퇴할 수 있다.	【182】 제81조(교역자의 은퇴) 교역자의 은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원안	개정안	비고
④ 연회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이는 자원 은퇴할 수 있다.	④ 좌동	
⑤ 감독회장은 임기를 마친 후 처음 개최되는 연회에서 은퇴한다.	**⑤ 삭제**	감독회장 임기 및 교회 담임 겸임제로 개정하여 은퇴하지 않는다.
	⑤ 목사로 은퇴한 이는 원로목사로 호칭하며, 지방회, 연회의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신설)	은퇴 목사의 호칭, 특별회원에 대한 규정
【183】 제82조(교역자의 신분처리) 교역자의 신분처리는 다음 각 항의 절차를 따른다.	【183】 제82조(교역자의 신분처리) 교역자의 신분처리는 다음 각 항의 절차를 따른다.	
① 어느 회원이든지 재판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	① 좌동	
② 본인의 요청이나 2년간 계속 미파 된 이는 휴직 처리한다.	② 좌동	
③ 어느 회원이든지 파송에 불복할 경우 감독이 그 직임을 정지시킨다.	③ 좌동	
④ 어느 회원이든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는 감독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④ 좌동	
⑤ **4년 간** 계속 정직이나 휴직된 이는 퇴회시킨다.	⑤ **3년 간** 계속 정직이나 휴직된 이는 퇴회시킨다.(개정)	휴직 기간을 단**축**하여 미파와 휴직을 포함하여 5년간 목회를 하지 않을 경우 퇴회하게 한다.
⑥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를 부목사와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 및 평신도는 모든 의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⑥ 좌동	
⑦ 미파 된 이는 미파 될 당시의 지방회 소속으로 하며 모든 회원권은 정지된다.	⑦ 좌동	
⑧ 은퇴한 목사가 감리회가 인정하지 않은 타 교회 및 타 교파의 직책을 맡는 등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불이익을 준다고 인정되어 해당 연회 감독의 통보를 받을 때는 은급재단이사회의 결의로 은급비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한다.	⑧ 좌동	

원안	개정안	비고
【185】제84조(감리사의 자격) 감리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 계속하여 무흠하게 10년 급을 필하고 회기를 마친 이. 다만, 해당되는 이가 없는 경우에는 연급 순에 따라 감리사 서리가 된다. ② 해당 지방에서 2년 이상 시무한 이. 다만, 해당되는 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이 제2항보다 우선한다. ③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한 교회나 미자립교회의 담임자 및 소속목사는 감리사 피선거권이 없다. 미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185】제84조(감리사의 자격) 감리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정회원 연수과정을 2회 이상 필한 자여야 한다.**(신설)	
【188】제87조(감리사의 직무) 감리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사는 임명된 지방을 순방하여 전도하며 지방 내 개체교회의 신령상 및 행정상 정황을 시찰한다. ② 감리사는 지방 안의 교역자(서리전도사 포함)와 장로의 인사문제를 관리한다. ③ 감리사는 지방회, 지방 실행부위원회, 지방 인사위원회 및 구역 인사위원회를 의회법에 따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 감리사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의회법에 따라 2주 이내에 이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되 감리사가 2주 이내에 소집하지 못할	【188】제87조(감리사의 직무) 감리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원안	개정안	비고
때는 감독에게 소집요청을 하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감리사 자신에 관한 인사문제를 심의하는 구역 인사위원회는 감독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리사는 구역회와 지방회 때에 발생하는 모든 규칙상 문제를 직접 해석하든지 아니면 의회에 요청하여 그 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처리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게 한다.	⑤ 좌동	
⑥ 감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부서나 개체교회를 통해 시행하도록 장려한다.	⑥ 좌동	
1. 국내외 선교사업	1. 좌동	
2. 기독교교육사업	2. 좌동	
3. 사회봉사사업과 농촌사업	3. 좌동	
4. 평신도교육훈련과 기독교서적 반포사업	4. 좌동 **5. 감리회 발행 교재 반포 사업**(신설)	
⑦ 감리사는 지방회 각 부서(선교부, 교육부, 사회평신도부)의 수입, 지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회에 상정하여 심의케 하고 전년도 각 부의 수입, 지출 결산에 대한 감사를 받은 후 지방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⑦ 좌동	
⑧ 감리사는 지방 안의 신령상 문제와 행정상 문제를 포함한 지방회 현황보고서 2통을 작성하여 지방회 폐회 후 10일 이내에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⑧ 좌동	
⑨ 감리사는 개체교회에 속한 예배당과 주택 등이	⑨ 좌동	

원안	개정안	비고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그렇지 아니한 때는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한다. ⑩ 감리사는 개체교회 재산의 매매나 전세계약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감리사는 지방 내 미자립교회의 현황을 문서로 매년 보고한다. ⑫ 감리사는 지방 및 교회의 통계표와 기타 역사 자료를 수합하여 보존하며 감리사 인수인계 목록에 삽입하여야 한다. ⑬ 감리사는 지방 내 불성실한 교역자를 조사하여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연회 감독에게 보고한다. ⑭ 감리사는 개체교회 담임자가 유고되어 기획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교회 기획위원회를 소집하여 부담임자 중에서 담임목사 직무대행을 지명한다.	⑩ 좌동 ⑪ 좌동 ⑫ 좌동 ⑬ 좌동 ⑭ 좌동	
【196】 제9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 무흠하게 **시무하고** 해당 연회에서 4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다만, 1인이 2회까지만 입후보할 수 있다. ②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 교회로서 자립교회의 담임자이어야 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	【196】 제9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정회원 연수과정 4회를 이수하고,** 해당 연회에서 4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다만, 1인이 2회까지만 입후보할 수 있다. (개정) ② 좌동	‘계속’ 삭제 【172】 제72조(연회 정회원의 직무) 규정에 따라 ‘정회원 연수과정 4회를 이수하고’ 삽입

원안	개정안	비고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으로 선출되고 총회에서 취임한 이	③ 좌동	
【197】제96조(감독의 임기) 감독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유고시 보선된 감독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보선된 감독이 1**년 미만**을 시무하였을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197】제96조(감독의 임기) 감독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교회를 담임해야 한다.** 단, 유고시 보선된 감독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한다. (개정)	
없음	【000】제00조(전직 감독의 예우) **감독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는 전직감독으로 호칭한다. 단 임기 중 또는 퇴임 후 정직이상 처벌을 받은 이는 제외한다.**(신설)	감독회장의 예우와 일관성 있게 조정함 【949】제66조(교역자의 복권) 참조
【203】제102조(연회 총무의 자격) 연회 총무의 자격은 10년 이상 연회 정회원으로 **재직하고** 해당 연회에서 3년 이상 시무한 40세 이상이 된 이로 한다.	【203】제102조(연회 총무의 자격) 연회 총무의 자격은 10년 이상 연회 정회원으로 **재직하고, 정회원 연수과정 3회를 이수하고,** 해당 연회에서 3년 이상 시무한 40세 이상이 된 이로 한다. (개정)	【172】제72조(연회 정회원의 직무) 규정에 따라 '정회원 연수과정 3회를 이수하고' 삽입
【219】제118조(선교연회 관리자의 자격) 선교연회 관리자의 자격은 연회 정회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하고,** 해당 연회에서 5년 이상 시무한 50세 이상이 된 이로 한다.	【219】제118조(선교연회 관리자의 자격) 선교연회 관리자의 자격은 연회 정회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하고, 정회원 연수과정 3회를 이수하고,** 해당 연회에서 5년 이상 시무한 50세 이상이 된 이로 한다.(개정)	
【220】제119조(선교연회 관리자의 임기와 선출방법) ① 선교연회 관리자의 임기는 연회 총무의 임기와 같다. ② 선교연회 관리자의 선출은 해당 연회 감독의 추천으로 선교연회 **운영위원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20】제119조(선교연회 관리자의 임기와 선출방법) ① 좌동 ② 선교연회 관리자의 선출은 해당 연회 감독의 추천으로 선교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개정)	② **운영위원회** → **실행부 위원회**
제2절 감독회장	제2절 감독회장	

원안	개정안	비고
【232】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 무흠하게 **시무하고,**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②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 자립교회의 담임자이어야 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회장으로 선출되고 총회에서 취임한 이	【232】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정회원 연수과정 4회를 이수하고,**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개정) ② 좌동 ③ 좌동	'계속' 삭제 【172】 제72조(연회 정회원의 직무) 규정에 따라 '정회원 연수과정 4회를 이수하고' 삽입
【233】 제132조(감독회장의 임기)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 단, 유고시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보선된 감독회장이 **2년 미만**을 시무하였을 경우 1차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233】 제132조(감독회장의 임기) 감독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교회를 담임해야 한다.** 단, 유고시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한다. (개정)	감독회장의 임기 조정 및 교회 담임을 겸하도록 규정
【234】 제133조(감독회장의 직무) 감독회장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독회장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 본부의 행정을 총괄하고, **총무**, 원장, 실장 및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감독회장은 임기 중에 **서부선교연회, 호남**선교연회를 관리한다. ③ 감독회장은 임기 중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④ 감독회장은 임기 중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234】 제133조(감독회장의 직무) 감독회장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독회장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 본부의 행정을 총괄하고, **국장**, **실장**, **사장** 및 직원을 지휘 관리한다.(개정) ② 감독회장은 임기 중에 선교연회를 관리한다. ③ 좌동 ④ 좌동	② ' **서부선교연회, 호남'→삭제**

원안	개정안	비고
⑤ 감독회장은 임기 중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⑤ 삭제**	⑤, ⑥, ⑦, ⑧, ⑬, ⑭항 삭제후 전체 항 순연 변경
⑥ 감독회장은 임기 중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⑥ 삭제**	
⑦ 감독회장은 임기 중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⑦ 삭제**	
⑧ 감독회장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⑧ 삭제**	⑱항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함
⑨ 감독회장은 임기 중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직책상 위원이 된다.	⑤ 좌동	⑨ → ⑤
⑩ 감독회장은 입법의회에서 의결한 헌법 또는 법률의 시행을 공포한다.	⑥ 좌동	⑩ → ⑥
⑪ 감독회장은 각 국의 위원회(이사회)에서 선출한 총무를 임면한다.	**⑦ 감독회장은 각 국의 위원회 및 각 사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보자 중 국장과 사장을 임면한다.(개정)**	⑪ → ⑦
⑫ 감독회장은 행정기획실장을 천거하고 감독회의의 인준을 받아 이를 임면한다.	⑧ 좌동	⑫ → ⑧
⑬ 감독회장은 각 국 총무, 원장, 실장의 제청을 받아 부총무 및 부장을 임면한다.	**⑬ 삭제**	
⑭ 감독회장은 연수원 원장을 천거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면한다.	**⑭ 삭제**	
⑮ 감독회장은 장정과 본부 내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한다.	⑨ 좌동	⑮ → ⑨
⑯ 감독회장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이사가 된다. 감독회장의 이사 임기는 감독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⑩ 좌동	⑯ → ⑩
⑰ 감독회장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접수된 감사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차기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⑪ 좌동	⑰ → ⑪

원안	개정안	비고
⑱ 감독회장은 총회, 입법의회, 총회 실행부위원회 및 감독회의의 당연직 의장이 된다. 감독회장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감독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⑫ 좌동	⑱ → ⑫
⑲ 감독회장은 총회 개회 중 발생하는 모든 규칙상의 문제를 직접 해석하거나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⑬ 좌동	⑲ → ⑬
⑳ **감독회장은 월간 「기독교세계」와 주간 「기독교타임즈」의 발행인이 되며 주간 「기독교타임즈」의 이사장이 된다. 다만, 주간 「기독교타임즈」 발행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두고 운영한다.**	⑭ **감독회장은 「감리회출판사」와 「기독교타임즈사」의 발행인과 이사장이 된다.** (개정)	⑳ → ⑭ **감독회장은 발행인과 이사장이 됨**
㉑ 감독회장은 총회 폐회 기간 중 심사 및 재판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1차에 한하여 재 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재결의는 30일 이내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⑮ 좌동	㉑ → ⑮
제5장 감리회 본부	**제5장 감리회 본부**	
[236] 제135조 (전직감독 회장의 예우) 감독회장을 **지내고 퇴임하는** 이는 전직 감독으로 예우한다.	[236] 제135조 (전직감독 회장의 예우) 감독회장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는 전직 감독으로 예우한다.(개정)	지내고 → 임기를 마치고
【238】 제137조(본부의 부서) 본부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선교국 ② 교육국 ③ 사회평신도국 ④ 사무국 ⑤ **출판국** ⑥ **연수원** ⑦ **행정기획실**	【238】 제137조(본부의 부서) 본부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선교국 ② 교육국 ③ 사회평신도국 ④ 사무국 ⑤ **행정기획실**(개정) ⑥ **감리회출판사**(개정) ⑦ **기독교타임즈사**(개정)	⑥ 연수원 ···→삭제 항조정 기독교타임즈사 신설
【239】 제138조(선교국의 조직) 국내외의 선교정책을 수립하고	【239】 제138조(선교국의 조직) 국내·외의 선교정책을 수립하고	

원안	개정안	비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선교국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① **총무 1명** ② **부총무 1명(해외선교 담당)** **③ 국내선교부, 사회농어촌환경부, 해외선교기획부, 선교사관리부 부장 각 1명**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선교국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개정) **① 국장 1명**(개정) **② 직원 7명**(개정) **③ 삭제**	
【240】 제139조(선교국의 직무) 선교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개척과 교회성장, 이주민선교 등 국내선교정책에 관한 업무 ② 농어촌 환경선교 및 특수선교사업과 사회선교정책에 관한 업무 ③ 선교관계책자의 편집과 자료수집에 관한 업무 ④ 북한선교정책, 새터민(탈북민)선교정책 및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업무 ⑤ 국·내외 교회일치운동의 협력에 관한 업무 ⑥ 군목, 군인교회 전담 목회자의 관리 등 군선교정책 및 제반 업무 ⑦ 세계선교정책 수립과 시행 업무 ⑧ 선교훈련과 인적, 물적 자원 개발에 관한 업무 ⑨ 세계교회와의 선교협약 체결 및 선교협력에 관한 업무 ⑩ 전략적 선교지 개발 및 정책적 파송에 관한 업무 ⑪ 선교사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⑫ 해외교민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 ⑬ 국내외 선교단체 및 비정부기구(NGO) 협력에 관한 업무	【240】 제139조(선교국의 직무) 선교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 개척과 교회 성장, 미자립 교회 지원과 성장 등 국내선교에 관한 업무**(개정) ② **농어촌, 환경, 장애인, 이주 노동자 등 사회선교 및 특수선교에 관한 업무**(개정) ③ **신앙과 직제 연구에 관한 업무**(개정) ④ **국·내외 교회 일치와 연합 활동에 관한 업무**(개정) ⑤ **군목, 군인교회 전담목회자의 관리 등 군선교 정책 에 관한 업무**(개정) ⑥ **국내외 선교관계 책자의 편집, 자료 수집과 편찬에 관한 업무**(개정) ⑦ 좌동 ⑧ 좌동 ⑨ 좌동 ⑩ 좌동 ⑪ 좌동 ⑫ 좌동 ⑬ 좌동	

원안	개정안	비고
⑭ 선교후원교회 관리에 관한 업무	⑭ **선교후원교회 통합 관리에 관한 업무**(개정)	
【241】 제140조(교육국의 조직) 감리회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교육국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① 총무 1명** **② 교육행정부, 장년교육정책부, 차세대교육정책부, 교육교재부 부장 각 1명**	【241】 제140조(교육국의 조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국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개정) **① 국장 1명**(개정) **② 직원 8명**(개정)	
【242】 제141조(교육국의 직무) 교육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학교의 조직과 관리에 관한 업무 ② 교회교육에 필요한 교재편집,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교사 양성에 관한 업무 ③ 속회와 양육 등 제자화에 대한 전반 업무 ④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및 청년회 전국연합회 등 교육관련 단체에 대한 지도육성 업무** ⑤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 **및 계통학교 지도연락에 관한 업무** ⑥ 사회교육과 문화교육 및 장학재단에 관한 업무 ⑦ 학원선교사의 양성, 관리 등 학원선교에 관한 업무	【242】 제141조(교육국의 직무) 교육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감리회 계통학교와 교회학교, 청년회의 지도육성 및 활성화 정책에 관한 업무**(개정) ⑤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 **및 목회자 후보자들에 관한 업무**(개정) ⑥ **사회, 문화교육에 관한 업무**(개정) ⑦ 좌동 **⑧ 개체교회 부흥을 위한 정책 및 자료 개발 업무**(신설) **⑨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업무**(신설) **⑩ 목회, 설교 자료 지원에 관한 업무**(신설) **⑪ 정회원 및 평신도 연수과정에 관한 업무**(신설) **⑫ 장학생 선발 및 지급 등 장학재단에 관한 업무**(신설) **⑬ 영성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신	⑪ 연수원의 직무에서 이동 ⑬ 연수원의 직무에서 이동

원안	개정안	비고
	설) **⑭ 영성공동체 개발 및 영성수련원 설립 사업에 관한 업무**(신설)	⑭ 연수원의 직무에서 이동
【243】 제142조(사회평신도국의 조직) 감리회의 평신도운동과 사회봉사 및 사회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사회평신도국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① 총무 1명** **② 평신도부, 사회봉사부, 사회복지부 부장 각 1명**	【243】 제142조(사회평신도국의 조직) 감리회의 평신도운동과 사회봉사 및 사회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회평신도국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개정) **① 국장 1명**(개정) **② 직원 5명**(개정)	
【244】 제143조(사회평신도국의 직무) 사회평신도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의 지도 육성 ② 평신도 훈련과 평신도 지도자 **육성 및 연수교육** ③ 국내외 선교사업 지원과 교육봉사 사업 ④ 가정생활운동의 지도육성 ⑤ 사회봉사사업, 사회복지사업 및 절제운동 ⑥ 국제 평신도운동 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 사업 ⑦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에 관한 업무 협의 ⑧ 사회복지재단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244】 제143조(사회평신도국의 직무) 사회평신도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남·여·청장년선교회 지도육성 및 활성화 정책 업무**(개정) ② 평신도훈련 및 평신도 지도자 **양성 정책 업무**(개정) **③ 국내외 평신도 선교, 봉사사업 및 평신도자원개발, 국제단체교류협력 업무**(개정) **④ 평신도 재능기부운동, 신앙실천운동에 관한 업무**(개정) **⑤ 희망봉사단 활성화 및 사회봉사,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업무**(개정) **⑥ 국내외 재해기금 모금 및 지원업무**(개정) ⑦ 좌동 ⑧ 좌동	
【245】 제144조(사무국의 조직) 감리회의 유지재단과 은급재단의 관리를 위한 운영정책과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사무국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245】 제144조(사무국의 조직) 감리회의 유지재단과 은급재단의 관리를 위한 운영정책과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사무국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원안	개정안	비고
① 총무 1명 ② 재산관리부, 회관관리부, 은급부, 재단회계부, 민원부 부장 각 1명	① 국장 1명(개정) ② 직원 16명(개정)	
【246】 제145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회관 관리에 관한 업무 ② 유지재단과 은급재단에 관한 사무의 관장과 기본재산 대장의 영구보관 ③ 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와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계획과 지시에 따른 감리회 본부의 기본재산 관리 ④ 미연합감리회 선교사 묘역관리 ⑤ 유지재단 회계 업무	【246】 제145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회관 등 기본재산 관리에 관한 업무(개정) ② 유지재단 등 각 종 영리 및 비영리 재단에 관한 업무(개정) ③ 감리회 모든 재산 관리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업무(개정) ④ 좌동 ⑤ 유지재단 및 본부 회계 업무(개정) ⑥ 은급 사업에 관한 업무(신설) ⑦ 연수 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신설)	
【251】 제150조(행정기획실의 조직) 총회 및 감독회의와 감리회 본부의 행정기획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기획실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① 행정기획실장 1명 ② 총회행정부, 기획홍보부, 역사전산부, 서무행정부, 본부회계부 부장 각 1명	【247】 제150조(행정기획실의 조직) 총회 및 감독회의와 감리회 본부의 행정기획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기획실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① 좌동 ② 직원 7명(개정)	【251】 ⇢ 【247】 단 변경
【252】 제151조(행정기획실의 직무) 행정기획실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독회의의 행정에 관한 사항 ② 총회 및 입법의회의 행정에 관한 사항 ③ 감독회장에 대한 비서업무 ④ 감리회 역사자료 수집 및 관리, 감리회 정보화 사업, 목회자와 교회 정보관리, 인터넷 서버운영에 관한 업무	【248】 제151조(행정기획실의 직무) 행정기획실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252】 ⇢ 【248】 단 변경

원안	개정안	비고
⑤ 감리회 정책과 사업에 대한 기획업무, 각 국 정책업무의 조율, 업무협조 및 홍보에 관한 업무 ⑥ 감리회 본부의 인사와 서무행정에 관한 사항 ⑦ **감리회 본부의 재정운영과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⑧ 각 국 및 각 연회와의 행정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⑨ 행정상의 대외적 업무연락에 관한 사항 ⑩ 각 국에 속하지 않은 행정사항	⑤ 감리회 정책과 사업에 대한 기획업무, 각 국, **실** 정책업무의 조율, 업무협조 및 홍보에 관한 업무(개정) ⑥ 좌동 **⑦ 각 국, 사 및 각 연회와의 행정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개정) ⑧ 좌동 ⑨ 좌동 ⑩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행정지원 업무**(신설) ⑪ **장·단기 발전위원회 행정지원 업무**(신설) ⑫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 행정지원 업무**(신설) ⑬ 좌동	⑦ 본부의 재정운영과 회계업무는 사무국 업무로 이관 장단기 발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지원 업무 ⑩ → ⑬
【247】 제146조(**출판국**의 조직) 감리회의 기관지, 교재,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 및 보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출판국**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① 총무 1명** **② 「기독교세계」부, 출판부 부장 각 1명**	【249】 제146조(**감리회출판사**의 조직) 감리회의 기관지, 교재,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 및 보급에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감리회출판사**를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개정) **① 사장 1명**(개정) **② 직원12명 단, 직원 증감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 실행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47】 → 【249】 단 변경** **출판국 → 감리회출판사로 변경**
【248】 제147조(**출판국**의 직무) **출판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기독교세계」의 기획, 편집, 발행 및 보급 ② 각종 교재, 도서 및 간행물의 기획, 편집, 발행 ③ 각종 교재, 도서 및 간행물의 보급 및 유통	【250】 제147조(**감리회출판사**의 직무) **감리회출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개정)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248】 → 【250】 단 변경**
【249】 제148조(연수원의 조직) 감리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모든 감리교회와 기관들이 하나님의 선교	**【249】 삭제**	

원안	개정안	비고
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지도자들의 영성훈련과 교육, 지도력 개발을 도모하고 이와 관련된 과제를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연수원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① 원장 1명 ② 제1연수부(일영), 제2연수부(입석) 부장 각 1명		
【250】 제149조(연수원의 직무) 연수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역자 및 평신도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② 영성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③ 목회자 배우자를 위한 신학교육원 운영에 관한 업무 ④ 청소년 및 청년 수련사업에 관한 업무 ⑤ 대안교육에 대한 연구 및 산돌학교 운영에 관한 업무 ⑥ 영성공동체 개발 및 영성수련원 설립 사업에 관한 업무 ⑦ 시설관리와 임대사업 및 회계에 관한 업무 ⑧ 유스호스텔 재산관리 및 회계에 관한 업무	【250】 삭제	
없음	【000】 제000조(기독교타임즈사의 조직) 기독교타임즈사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기독교타임즈사를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신설) ① 사장 1명 ② 직원 4명 단, 직원 증감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와	

원안	개정안	비고
	총회 실행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없음	**【000】 제000조(기독교타임즈사의 직무) 기독교타임즈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신설)** **① 취재 및 기획, 편집, 발행(신설)** **② 광고 및 판매, 보급(신설)** **③ 국내외에서의 선교, 교육, 봉사활동의 홍보(신설)** **④ 일반업무(신설)**	
【253】 제152조(총무의 직무) 각 **국 총무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독회장을 보좌하여 장정에 규정된 **각 국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한 정책 및 사업을 입안하고 집행한다. ③ 해당국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직원의 추천 및 해임을 건의한다.	【253】 제152조**(국장, 실장, 사장의 직무) 각 국 국장, 실장, 사장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개정) ① 감독회장을 보좌하며 장정에 규정된 **각 국, 실, 사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② 좌동 ③ 해당 국**, 실, 사의** 직원을 지휘 **관리**한다.(개정) ④ **각 국, 실, 사장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 및 이사장에게 보고한다.**(개정) **⑤ 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54】 제153조(**총무, 원장, 실장의** 자격) **총무, 원장, 실장**은 40세 이상이 되고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시무하였거나 장로로서 6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한다.	【254】 **제153조(국장, 실장, 사장의 자격) 국장, 실장, 사장은** 40세 이상이 되고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시무하고, 정회원 연수과정 3회를 이수였거나,** 장로로**서** 5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은퇴 전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 또는 전문경력자. 다만 감리회 재판법에 의하여 정직 이상의 처벌,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이**(개정)	【172】 제72조(연회 정회원의 직무) 규정에 따라 '정회원 연수과정 3회를 이수하거나' 삽입 【255】 제154조 ⑥을 이동 조정
【255】 제154조(**총무, 원장, 실장, 부총무의** 임면) 본부의 **총무, 원장, 실장, 부총무의** 임면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본부의 각 국 총무는 감독회장이 해당 국 위원장**과 협의하여 후보 2명을 각 국위원회(이사회)에 추천하여 재적위원	【255】 **제154조(국장, 실장, 사장의 임면) 본부의 국장, 실장, 사장의** 임면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개정) **① 본부의 각 국 국장은 해당 국위원회에서 공채한다. 해당 위원회가 지원자 중 후보자를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원안	개정안	비고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임명한다. ② 총무가 결원일 경우 감독회장은 2개월 이내에 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후임 총무를 보선하여 임명한다. ③ 사회평신도국 총무는 평신도로 하되 가급적 사회복지 전문가로 한다. ④ 행정기획실장은 감독회장이 천거하여 감독회의의 인준을 받아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⑤ 원장은 감독회장의 천거로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면한다. ⑥ 교회법에 의하여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았거나 사회법(형법)에 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이로 한다. ⑦ 부총무는 해당 국 총무의 천거로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배수 추천하면 감독회장이 국장을 선임하여 임명한다. 다만, 각사 사장의 임면 절차는 각사 정관에 준한다.**(개정) **② 각 국장, 실장이 결원일 경우 감독회장은 2개월 이내에 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후임을 보선해야 한다.**(개정) **③ 사회평신도국 국장은 평신도로 한다.**(개정) ④ 좌동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256】 제155조**(총무, 원장, 실장의 임기) 총무, 원장, 실장의 임기는 선임된 총회를 기점으로 하여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1차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256】 **제155조(국장, 실장, 사장의 임기)** **① 국장의 임기는 선임된 총회를 기점으로 하여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개정) **② 실장의 임기는 감독회장의 임기와 같다.**(신설) **③ 사장의 임기는 선임된 총회를 기점으로 하여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신설)**	
제4절 본부 각 국·원 위원회 및 재단이사회 【257】 제156조(본부 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 본부 각	**제4절 본부 각 국 위원회, 이사회 및 재단이사회**(개정) 【257】 제156조(본부 각 **국** 위원회, **각 사 이사회**와 각 재단이	

원안	개정안	비고
국·원 위원회와 각 재단에 이사회를 다음 각 항과 같이 설치한다. ① 선교국위원회 ② 교육국위원회 ③ 사회평신도국위원회 ④ 출판국위원회 ⑤ 연수원 운영위원회 ⑥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⑦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회 ⑧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이사회 ⑨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이사회 ⑩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이사회 ⑪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이사회	사회) 본부 각 국 위원회, 각 사 이사회와 각 재단이사회를 다음 각 항과 같이 설치한다.(개정)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감리회출판사 이사회(개정) ⑤ 삭제 ⑤ 기독교타임즈사 이사회 (신설) ⑥ 좌동 ⑦ 좌동 ⑧ 좌동 ⑨ 좌동 ⑩ 좌동 ⑪ 좌동	원안 ⑤은 연수원 자체가 폐지 됨으로 삭제 ⑤ 기독교타임즈사는 신설
【258】 제157조(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직무) 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본부의 각 국·원 위원회는 해당 국·원의 정책 및 사업과 예산을 책정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제출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② 본부의 각 국위원회와 재단이사회는 해당국의 총무를 선출한다. ③ 본부의 각 재단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사업과 예산을 책정하고 해당 총무를 통해 시행한다. ④ 본부의 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는 입법의회에	【258】 제157조(각 국 위원회, 각 사 이사회와 각 재단이사회의 직무) 각 국 위원회, 각 사 이사회와 각 재단이사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① 본부의 각 국 위원회, 각 사 이사회와 각 재단이사회는 해당 국·사·재단이사회의 정책 및 사업과 예산을 책정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제출하고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개정) ② 본부의 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는 해당 국장 후보자를 선발하여 감독회장에게 천거한다.(개정) ③ 본부의 각 재단이사회와 각 사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사업과 예산을 책정하고 해당 국·사장을 통해 시행한다.(개정) ④ 본부의 각 국 위원회, 각 사 이사회와 각 재단이사	

원안	개정안	비고
서 제정한 정관, 운영 규정 및 시행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국·원의 직무를 총무 및 원장을 통해 시행하도록 한다.	**회는 입법의회에서 제정한 정관, 운영 규정, 본부내규 및 시행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국·사의 직무를 국·사장을 통해 시행 한다.**(개정) **⑤ 각 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59】 제158조(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조직) 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① **각 국·원 위원회의 조직** 1.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대표 1인과 평신도 대표 1인 2. **감독회의에서 호선된 1인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해당 국·원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무·원장을 통하여 보고를 받도록 한다.** 3. **총무·원장이 제청하여 국·원의 위원회에서 인준한 전문위원 3인은 해당 위원회에서 발언권만 보유한다.** 4. **각 총무·원장은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을 보유한다.** ② 각 재단이사회의 조직 1. **감리회** 유지재단이사회 : 감독회장,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대표 1명과 평신도대표 1명 2. **교역자 은급재단이사회 : 감독회장,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대표 1명과 평신도대표 1명**	**【259】 제158조(각 국 위원회, 각 사 이사회, 각 재단이사회, 내규위원회의 조직) 각 국 위원회, 각 사 이사회, 각 재단이사회, 내규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개정) **① 각 국 위원회와 각 사 이사회의 조직**(개정) 1. 좌동 **2. 감독회의에서 호선한 위원장 또는 이사장 1명.**(개정) **3. 각 국·사장이 제청하여 국·사의 위원회에서 인준한 전문위원 3인은 해당 위원회에서 발언권만 있다.**(개정) **4. 각 국·사장은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있다.**(개정) **② 각 재단이사회의 조직** **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회 : 감독회장,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대표 1명, 평신도대표 1명과 호남선교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또는 평신도 중 1명**(개정) **2.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이사회 : 각 연회 및 호남선교연회에서 교역자 또는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 11명, 감독회에서 추천한 교역자 1명과 전문직**	

원안	개정안	비고
	이사(공인회계사 포함) 3명으로 조직한다. 다만 각 연회에서 선출한 이사 중 4명(교역자 2명, 평신도 2명)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교체하지 않으며, 그 순번은 감독회의에서 정한다.(개정)	
3.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이사회 : 감독회장, 감리회대표 6명, 복지관대표 5명, 미연합감리회 선교사대표 2명, 복지전문가 1명	3.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이사회 : 감독회장, 총회 실행부 위원회에서 선출한 감리회 대표 4명, 직영 사업기관 대표 2명, 사외 이사 3명, 미연합감리회 세계선교부대표 1명으로 조직한다. 다만 총회실행부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태화복지재단 및 사회복지재단 이사로 선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4. 사회복지재단이사회 : 감독회장,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대표 1명과 평신도대표 1명, 전문직 이사 3명	4.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이사회 : 감독회의에서 호선한 이사장 1명,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한 감리회 대표 6명, 사업기관 대표 1명, 사외이사 3명으로 조직한다. 다만 총회실행부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태화복지재단 및 사회복지재단 이사로 선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5. 장학재단이사회 : 감독회장,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대표 1명과 평신도대표 1명	5.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이사회 : 감독회의에서 호선한 이사장 1명, 각 연회 및 호남선교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또는 평신도 중에서 1명(개정)	
6. 각 재단이사회의 이사장은 감독회장이 된다.	6. 삭제	감독회장의 당연직 이사장 삭제
7. 총무는 직권상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을 보유한다.	6. 해당 국·사 장은 직권상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있다.(개정)	7 → 6으로 조정
	③ 본부 내규위원회는 장정개정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독회장이 추천한 각 국장, 실장, 사장	

원안	개정안	비고
	중 3명 과 장정개정위원장이 추천한 장정개정 위원중 3명으로 구성한다.(신설)	
【262】 제161조(감독회의의 직무) 감독회의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회의 신령상 문제와 사업 및 행정의 통일성에 관한 문제를 협의한다. ② 감리회의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며 필요시에는 이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감독 중에서 각 국·원에 위원장** 1인을 선임하여 파송한다. ④ 그 밖에 감리회의 부흥 발전과 원활한 행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⑤ 감독회장이 천거한 행정기획실장을 인준한다.	【262】 제161조(감독회의의 직무) 감독회의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해당 국·재단이사회의 위원장, 이사장** 1인을 선임하여 파송한다.(개정) ④ 좌동 ⑤ 좌동	
제7절 감 사 【265】 제164조(감사) **본부와 기독교타임즈의** 회계 및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제7절 감 사** 【265】 제164조(감사) **감리회 본부 각 국· 실· 사· 재단의** 회계 및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개정)	
【266】 제165조(감사의 정수) **본부 감사는** 각 연회별로 1명씩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 또는 원 위원과 이사는 감사가 될 수 없다**. 평신도를 선출하는 연회에서는 감사의 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가급적 회계의 전문성이 있는 이를 선출하도록 한다.	【266】 제165조(감사의 정수) **감사는** 각 연회 및 호남선교연회에서 1명씩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 사 위원과 이사는 감사가 될 수 없다**. 평신도를 선출하는 연회에서는 감사의 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가급적 회계의 전문성이 있는 이를 선출하도록 한다.(개정)	
【268】 제1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 2회 정기적으로 본부의 회계와 행정 전	【268】 제1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 2회 정기적으로 본부의 회계와 행정 전반	

원안	개정안	비고
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② 감독회장이 요청하면 감사한다. ③ 감사 결과 중요한 사항을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경우에는 감독회장에게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회장은 14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한 결과를 총회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를 해당 심사위원회 또는 본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u>및 총회관련 제반 사업에 대하여</u>** 감사한다. (개정)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부칙(2013. 11. 00) 【296】제1조(경과조치) ①[196】제1항,【203】, 【219】,【232】제1항,【254】은 2018년부터 시행한다. ② [259]제158조 ③은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000] 제2조(시행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편 의회법

원안	개정안	비고
【298】 제3조(의장의 권한과 직무) 각 의회 의장은 해당 의회를 소집하고 사회하며 의사를 의회법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한다.	【298】 제3조(의장의 권한과 직무) 각 의회 의장은 해당 의회를 소집하고 사회하며 의사를 의회 법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하며, 접수된 행정문서는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 기관이나 위원회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321] 제26조(기획위원회 직무) 기획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임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협의** ② **담임자의 목회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③ 신천장로 천거 ④ 권사, 집사, 기타 임원의 당회천거 ⑤ 상근 직원의 임면에 관한 협의 ⑥ 그 밖의 중요사항에 관한 협의	**[321]** 제26조(기획위원회 직무) 기획위원회의 직무는다음과 같다. ① **담임자의 목회에 관한 사항 협의**(개정) ② **구역회, 임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결의**(개정) ③ 좌동 ④ 좌동 ⑤ 상근 직원의 임면에 관한 **결의**(개정) ⑥ 그 밖의 긴급한 사항에 관한 **결의. 다만, 결의된 사항은 차기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원안 ①→②로** **원안 ②→①**
【324】 제29조(구역회의 구분 및 소집) 구역회는 정기구역회와 임시구역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구역회는 매년 12월 또는 1월 중에 감리사가 소집한다. ② 구역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감리사가 소집한다. ③ 구역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감리사가 담임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1주일 전까지** 지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324】 제29조(구역회의 구분 및 소집) 구역회는 정기구역회와 임시구역회로 구분한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구역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감리사가 담임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7일 전까지** 지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④ 담임자가 구역회를 서면으로 청원하여도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구역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담임자의 요청에 따라 소속 연회 감독이 구역회를**	**1주일을 7일로** **구역회를 개최토록 구체화**

원안	개정안	비고
	소집하고, 구역회 일시와 장소는 감독이 담임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7일 전까지 지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326】 제31조(구역회 의장) 구역회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 다만, 감리사의 위임이 있을 경우 담임자가 의장이 될 수 있다. 감리사 유고 시**에는 소속 연회 감독이 구역회를 주재할 수 있다.**	【326】 제31조(구역회 의장) 구역회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 다만, 감리사의 위임이 있을 경우 담임자가 의장이 될 수 있다. 감리사 유고 시 **또는 제29조 제4항에 따라 구역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연회 감독이 구역회 의장이 된다.**(개정)	
【328】 제33조(구역회의 직무) 구역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구역회는 담임자와 모든 임원의 보고를 받는다. ② 구역회는 구역 안의 신령상 정황을 조사한다. ③ 구역회는 전년도 수입지출 결산을 보고받고 신년도 예산을 확정하며 각종 부담금과 그 밖의 헌금의 수지된 것을 사문한다. ④ 구역회는 구역회원 중에서 최소 5명 이상의 지방회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⑤ 구역회는 교인 및 사역자와 임원(목사, 전도사, 장로 제외)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심사, 재판하기 위해 담임자의 추천으로 심사위원 3명과 재판위원 5명을 감리사가 임명한다. 다만, 구역회가 닫힌 후에는 담임자가 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리사에게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한다.** ⑥ 구역회는 개체교회의 예배당, 주택 등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임대차, 그리고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사무를 조사 처리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구역회는 교회에 기증된 동산과 부동산을 받아	【328】 제33조(구역회의 직무) 구역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교인이 재정장부를 열람하려면 입교인 2/3이상의 서명 동의가 있어야 한다.**(신설) ⑤ 좌동 **⑤ 삭제** ⑥ 좌동	④ 신설 원안 ④→⑤로 심사 재판의 전문성, 공정성을 위하여 1심 심사, 재판을 연회로 이관하고 구역 심사, 재판을 폐지함

원안	개정안	비고
처리한다. ⑧ 구역회는 교역자의 이·취임식, 주택, 생활비, 은퇴와 은급, 안식년(매 7년마다)에 대한 안건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⑨ 구역회는 교회 및 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을 협의 처리한다. ⑩ 구역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구역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고구역회라 하며, 사고구역회는 감리사가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⑦ 좌동 ⑧ 좌동 ⑨ 좌동 ⑩ 좌동	
제 2 절 구역 인사위원회	**제 2 절 구역 인사위원회**	
【330】 제35조(구역 인사위원회의 설치) 개체교회 교역자의 **인사에 관한 문제를**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구역 안에 구역 인사위원회를 둔다.	【330】 제35조(구역 인사위원회의 설치) 개체교회 교역자의 **인사 및 기관파송 교역자의 소속에 관한 문제를**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구역 안에 구역 인사위원회를 둔다.(개정)	기관파송 교역자의 소속에 관한 문제 첨가
【334】 제39조(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구역 인사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기명날인하여 위원회 소집 요구서를 감리사에게 제출한 경우 감리사는 구역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요구서에는 인사이동을 요구하는 대상 교역자의 성명, 생년월일, 인사이동을 요구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요구를 받은 감리사는 2주일 이내에 구역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집 일시와 장소를 기재한 소집 통보서가 구역 인사위원 전원에게 1주일 이전에 도착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34】 제39조(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원안	개정안	비고
단, 감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독이 소집 만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부담임목사와 수련목회자의 인사처리를 위한 구역 인사위원회는 감리사의 위임을 받아 담임목사가 소집 처리할 수 있다. ⑤ 인사이동에 대한 해당 교역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교역자의 도덕적 과실이나 목회에 실패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교역자의 이동은 억제되어야 한다. ⑥ 독립 구역이 아닌 교회담임자의 인사처리는 해당 교회 임원들과 협의하여 감리사가 처리한다. ⑦ 교역자가 구역 인사위원회의 결의 없이 이동할 경우 해당 연회 감독은 모든 직임과 권리를 정지시키고 구역 인사위원회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지방 감리사는 즉시 고발한다. 단, 재판비용은 해당 연회에서 부담한다.	④ 부담임목사와 수련전도사의 인사처리 **<u>및 기관파송 교역자의 소속 여부 처리</u>**를 위한 구역 인사위원회는 감리사의 위임을 받아 담임목사가 소집 처리할 수 있다.(개정)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	기관파송 교역자의 소속 결정을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335】 제40조(인사처리절차) 담임자의 인사처리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① 담임자의 인사처리는 구역 인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로 의결한다. ② 인사처리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이 직권으로 파송한다. ③ 부담임자의 인사처리는 구역 인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335】 제40조(인사처리절차) 담임자의 인사처리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u>다만, 사고구역 또는 구역인사위원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 실행부위원회가 해당교회 구역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한다.</u>**(개정)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제4장 지 방 회 제1절 지방회	**제4장 지 방 회** 제1절 지방회	

원안	개정안	비고
【337】 제42조(지방회의 구성) ① 지방회는 23개소 이상의 구역과 10명 이상의 연회 정회원이 있어야 구성된다. ② 국외지방은 선교지방회로 10개소 이상의 구역과 8명 이상의 연회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337】 제42조(지방회의 구성) ① 지방회는 23개소 이상의 구역과 10명 이상의 연회 정회원이 있어야 구성된다. **다만, 행정구역단위로 지방회가 분할될 경우 최소 2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② 좌동	
【338】 제43조(지방회의 조직) 지방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조직한다. ① 해당 지방에 소속한 연회 회원(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인 교역자 ② 지방교회에 파송 받은 장로 ③ 서리담임자, 전도사(수련목회자, 군목 및 선교사 후보) ④ 각 구역 권사 대표, 선교부 대표, 교육부 대표, 사회봉사부 대표, 문화부 대표, 재무부 대표, 관리부 대표, 남선교회 대표, 여선교회 대표, 청장년선교회 대표, 청년회 대표, 교회학교 대표 각 1명 ⑤ 남선교회 지방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지방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지방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지방연합회 회장, 청년회지방연합회 회장 ⑥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⑦ 각 구역은 5명 이상의 대표를 지방회에 보낸다.	【338】 제43조(지방회의 조직) 지방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조직한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 ⑧ **지방회는 원로장로를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신설)	

원안	개정안	비고
【344】 제49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344】 제49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진급과정 중에 있는 장로를 심사하고 장로로 안수하며 신천장로, 복권되는 장로, 이명장로를 파송한다.	① 좌동	
1. 당회에서 천거한 신천고시과정 장로와 진급과정 중에 있는 장로에 대한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이는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장로 임명을 의결한 후 장로증서를 준다.		
2. 모든 과정을 마친 장로는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천거로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을 통과한 후 장로안수를 한다.		
② 연회 준회원 후보, 연회 재허입을 원하는 이, 그리고 다른 교파에서 이명 하여 온 교역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회 회원 허입을 연회에 청원한다.	② 좌동	
③ 각부 총무, 실행부위원, 인사위원,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을 선출한다.	③ 좌동	
④ 교회의 모든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되지 아니한 구역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④ 좌동	
⑤ 지방 실행부위원회 위원과 개체교회 담임자로 공천위원회를 구성한다.	⑤ 좌동	
⑥ 지방회는 회원 간의 고소·고발 사건을 심사하고 재판하기 위해 심사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재판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을 선출한다.	**⑥ 삭제**	심사 재판의 전문성, 공정성을 위하여 1심 심사, 재판을 연회로 이관하고 지방 심사, 재판을 폐지함
⑦ 각 교회별 재정 현황을 조사하고 부담금을 배정한다.		

원안	개정안	비고
⑧ 지방 안의 교회당, 주택, 임대차, 물품 등 교회자산을 조사하고 그 자산의 유지재단 편입, 등기의 여부를 조사한다.	⑥ 좌동	원안 ⑦⑧⑨⑩⑪⑫⑬⑭을 ⑥⑦⑧⑨⑩⑪⑫⑬으로 조정
⑨ 구역회 회의록을 조사한다.	⑦ 좌동	
⑩ 지방에 소속한 교역자의 사역보고를 받는다. 미자립교회 담임자는 지방회에 교회현황을 문서(별도양식 참조)로 매년 보고한다.	⑧ 좌동	
⑪ 전도사, 지방회 평신도 회원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수리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고 재판이 필요할 때 이를 재판위원회에 회부한다.	⑨ 좌동	
⑫ 지방이 분할을 원하는 경우 연회 및 지방 경계법에 따라 분할 사유, 분할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지방회 의결을 통해 지방분할 건의안을 연회에 제출한다. 다만, 지방분할로 인하여 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분할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⑩ 좌동	
⑬ 연회에 참석할 평신도 대표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⑪ 좌동	
1. 연회 평신도 대표는 매년 그 지방회에 출석한 평신도 중에서 장로를 임명된 년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에는 권사를 임명된 년수에 따라 선출하되 다만 **연회 실행부위원, 연회 남·여·청장년선교회·청년회·교회학교연합회장 및** 지방 여선교회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30%까지는 장로의 임명된 년수에 상관없이 **여성 장로로 할 수 있다**.	⑫ 연회에 참석할 평신도 대표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연회 평신도 대표는 매년 그 지방회에 출석한 평신도 중에서 **평신도 자치적으로** 장로를 임명된 년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에는 권사를 임명된 년수에 따라 **구역별 정회원 수와 교인 수를 참작하여** 선출하되 다만, **연회 실행부위원과** 지방 여선교회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30%까지는 장로의 임명된 년수에 상관없이 **여성 장로로 우선 배정한다.**(개정)	30%까지는 장로의 임명된 연수에 상관없이 여성 장로로 할 수 있다 → 우선 배정한다. 제3호의 내용을 1호에 첨가하여 오해소지를 없앰 각 선교회 연합회장은 당연직 연회 실행부위원이므로 삭제
2. 연회 평신도 대표는 해당 지방회에 소속한 현직 정회원 수와 동수로 한다.	2. 좌동	
3. 평신도 대표의 선출은 각 구역별 정회원 수와 교인 수를 참작하여 선출하되 그 선출 절차 일체를 평신도들이 자치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3. 삭제**	
⑭ 지방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원안	개정안	비고
지방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고지방회라 하며, 사고지방회는 감독이 처리한다.	⑬ 좌동	1호에 첨가하고 삭제함
【347】 제52조(지방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담사항) 지방회에 설치하는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담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전도사, 장로과정고시위원회 : 전도사와 장로의 과정고시를 주관하는 위원회로서 교역자에 한하여 위원이 되며 총회에서 제정한 과정고시령에 준하여 과정고시를 실시한다. ② 전도사, 장로자격심사위원회 : 전도사, 장로 및 연회 준회원에 허입할 이의 품행과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교역자와 평신도로 구성한다.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도덕적 범과가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지방 심사위원회에 제소한다. ③ 선교사업위원회 : 감리회 본부의 선교정책과 연회의 선교방침에 따라 지방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선교사업의 기획과 실시에 관한 사항을 분담한다. ④ 기독교교육사업위원회 : 감리회 본부의 기독교교육정책과 연회의 기독교교육방침에 따라 지방회에서 추진하는 기독교교육사업 및 문화사업의 기획과 실시에 관한 사항을 분담한다. ⑤ 사회평신도사업위원회 : 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사업 정책과 연회의 사회평신도사업 방침에 따라 지방회에서 추진하는 평신도사업에 관한 사항을 분담한다. ⑥ 재정위원회 : 개체교회 재정운영 실태 조사와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347】 제52조(지방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담사항) 지방회에 설치하는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담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좌동	

원안	개정안	비고
연구, 검토한다. ⑦ 교회관리분과위원회 : 개체교회의 건물, 임대차, 비품,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었는지의 여부와 구역회 회의록을 조사, 보고한다.	⑦ 좌동	
⑧ 심사위원회 : 지방회에 제출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여 지방 재판위원회에 재판을 청구하는 위원회로서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⑧ 삭제**	심사 재판의 전문성, 공정성을 위하여 1심 심사, 재판을 연회로 이관하고 지방 심사, 재판을 폐지함
⑨ 재판위원회 : 심사위원회에서 청구한 고소·고발 사건을 재판하는 위원회로서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⑨ 삭제**	
⑩ 건의안심사위원회 : 지방회에 제출된 건의안을 검토하여 지방회에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로서 동수의 교역자와 평신도로 구성한다.	⑧ 좌동	원안 ⑩⑪을 ⑧⑨로 항 변경
⑪ 투표위원회 : 지방회 개회 중에 실시하는 각종 투표업무를 분담한다.	⑨ 좌동	
【351】 제56조(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지방 실행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지방 감리사, 서기 및 회계 ② 각부 총무 ③ 정회원 대표 3명, 평신도 대표 3명 ④ 남선교회·여선교회·청장년선교회지방연합회 회장 ⑤ **감사와 교회학교지방연합회 회장은 직권상** 지방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보유한다.	【351】 제56조(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지방 실행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남선교회·여선교회·청장년선교회, **청년회, 교회학교, 장로회** 지방연합회 회장(개정) ⑤ **감사는 직권상** 지방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만 있다.(개정)	
제 5 절 지방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367】 제72조(직무)	**제 5 절 지방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367】 제72조(직무)	

원안	개정안	비고
①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현황파악 ② 미자립교회 양산 방지 대책 강구 ③ **미자립교회, 부담금** 납부사항, 교역자 직무사항 및 교회실태 전반을 조사하여 보고한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개체교회 부담금** 납부사항, 교역자 직무사항 및 교회실태 전반을 조사하여 보고한다.(개정)	
제 6 절 지방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 【369】제74조(설치) 지방회 안에 지방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를 둔다.	**제 6 절 삭제** 【369】제74조(설치) **삭제**	지방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는 삭제하고 연회와 총회에 신설함
【370】제75조(조직) 위원은 다음과 같이 조직하고 감리사가 위원장이 된다. ① 감리사 ② 교역자 대표 3명 ③ 평신도 대표 3명	【370】제75조(조직) **삭제**	
【371】제7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71】제76조(임기) **삭제**	
【372】제77조(직무) ① 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지방 내의 인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며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② 불성실한 교역자란 교역자로서의 소명 의식이 부족하고, 목회에 대한 열의가 없으며,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이로 아래 각 호와 같다. 1. 목회에 전념하지 않고 오락 및 도박에 빠진 이 2. 불경건한 생활을 하는 이 3. 이중 직업을 가진 이 4.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이 5. 통계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보고하는 이 6. 이단집단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이단사상에 빠진 이	【372】제77조(직무) **삭제**	

원안	개정안	비고
7.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 시 금품을 수수한 이 ③ 조사한 결과 사안에 따라 시정 경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의 회부, 연회 심사위원회에의 고소 또는 연회 감독에게 직권으로 직임정지를 요청한다. ④ 지방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항은 총회 성직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⑤ 모든 조사, 처리 비용은 해당 의회에서 부담한다.		
【373】 제78조(위원회 소집) ① 위원장은 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사안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거나, 위원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사안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아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 요청서를 제출하면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 만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감독이 소집한다.	【373】 제78조(위원회 소집) **삭제**	
【374】 제79조(선교연회의 조직) ① 국내외에서 선교하여 전도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입법의회에서 선교연회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선교연회는 소속연회의 교역자들과 평신도 대표들로 조직한다. ③ 선교연회는 사업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자를 둔다. ④ 선교연회는 해당 연회 감독, 관리자, 서기, 감리사, 평신도 대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선교·교육·사**	【374】 제79조(선교연회의 조직)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선교연회는 해당 연회 감독, 관리자, 서기, 감리사, 평신도 대표로 **실행부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운영위원회 → 실행부위원회

원안	개정안	비고
회평신도위원장, 남·여 선교회연합회장, 청장년선교회연합회장, 교회학교연합회장, 감사는 발언권만 갖는다. ⑤ 선교연회의 조직 및 운영은 기독교대한감리회「교리와 장정」에 따른다.	⑤ 좌동	
【386】제91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회는 임기 2년의 감사 2명을 선출하여 연회 본부의 회계 및 행정사무를 감사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 ② 연회는 임기 2년의 과정고시위원을 두고 준회원 **및 다른 교파에서 이명 하여 오는 교역자의 자격과 과정을 심사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 ③ 연회는 임기 2년의 자격심사위원을 두고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및 다른 교파에서 이명 하여 오는 교역자의 자격과 품행을 다음 각 호와 같은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연회 회원 허입, 재허입, 휴직, 퇴직, 면직, 은퇴 등의 사항을 결정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 1. 무고하게 2년 간 계속하여 연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연회 회원에게는 감독이 정직을 명한다. 2. 2년 간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미파 중에 있는 교역자에게는 감독이 휴직을 명한다. 3.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하였던 연회 회원이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파송을 청원하면 감독에게 해당교역자를 파송하도록 요청한다. 4. 감리회의 교리나 기독교의 정통적 교리를 부인하고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교역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연회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5. 교역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도덕적 범	【386】제91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좌동 ② 연회는 임기 2년의 과정고시위원을 두고 준회원 **교역자의 과정고시를 실시하여 연회에 보고하고, 정회원 연수과정 이수사항을 파악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개정) ③ 좌동	

원안	개정안	비고
과가 있는 교역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연회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연회는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에 허입과 재허입은 개인별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회원과 진급 중에 있는 준회원은 일괄적으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품행을 통과한다.	④ 좌동	
⑤ 연회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사안을 조정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교역자, 장로 등 지도자의 민사, 형사 사건을 조정 중재하기 위해 행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하되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가 정하여 연회 실행부위원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⑤ 좌동	
⑥ 연회는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를 두어 심의 조정한 후 연회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	⑥ 좌동	
⑦ 연회는 연회원 교역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과 장로와 전도사에 대한 상소사건을 심사, 재판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재판위원 12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 2명)으로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좌동	
⑧ 연회 행정재판위원은 12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감독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 법전문인 1명)으로 구성하되 감독이 지명하는 2명을 포함하여 7명을 1개반으로 편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좌동	
⑨ 연회는 연회 소관의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평신도사업이 감리회 본부 정책에 따라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분석 검토한다.	⑨ 좌동	
⑩ 연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관이사 및 위원을	⑩ 좌동	

원안	개정안	비고
파송한다. 1. 연회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 이사 각 1명을 선출하여 파송한다. 다만, 그 연회 감독이 이사로 파송된 대학교에는 이사를 파송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회에서 파송한 이사를 거부하는 신학대학교의 출신자는 감리회 연회 회원으로 허입하지 아니한다. 2. 연회는 감리회에서 설립하였거나 토지, 건물, 재정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감리회와 직접적인 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교육기관 제외)을 관리하고 이사 또는 위원을 선출 파송한다. ⑪ 연회는 연회에 출석한 회원 중에서 총회에 참석할 대표를 선출하며 각 연회 서기는 총회에 참석할 대표들의 성명, 신급, 연령, 주소를 순서대로 기록하여 감리회 본부에 보고한다. ⑫ 연회는 총회 대표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리회 본부 **각 국·원 위원 및 재단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여 파송한다. 다만, 총회 실행부위원, **각 국·원 위원, 재단이사** 등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연회는 감리회 본부 각 국·원 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2. 연회는 감리회 유지재단의 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3. 연회는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4. 연회는 교역자은급재단의 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⑪ 좌동 ⑫ 연회는 총회 대표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리회 본부 **각 국 위원, 각 사 이사 및 재단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여 파송한다. 다만, 총회 실행부위원, **각 국·사·재단이사회 위원, 이사** 등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1. **연회는 감리회 본부 각 국 위원, 각 사 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개정) 2. 좌동 3. 좌동 4. 연회는 교역자은급재단의 이사로 **교역자 또는 평신도 중 1명을 선출한다.**(개정)	

원안	개정안	비고
5. **연회는 사회복지재단의 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5. **연회는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과 감리회 태화사회복지재단의 이사로 교역자 또는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다만, 감독회장이 소속한 연회는 제외한다.**(개정)	연회가 사회복지재단과 태화복지재단의 이사를 선임하면 총실위가 이를 각 재단에 파송하도록 한다. 감독회장은 당연직위원이므로
6. **연회는 장학재단의 이사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6. 좌동**	
7. 연회는 감독회장과 감독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2명, 평신도 대표 2명을 선출한다.	7. 좌동	
8. 연회는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8. 연회는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가급적 장정개정위원을 역임한 이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9. 연회는 총회 공천위원으로 2명(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하여 명단을 감독회장에게 보고한다.	9. 좌동	
10. 연회는 총회 실행부위원으로 총회 대표 중에서 2명(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을 선출한다.	10. 좌동	
11. 연회는 **주간「기독교타임즈」** 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과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11. 연회는「감리회출판사」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과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신설)	11호 신설
	12. 연회는 **「기독교타임즈사」**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과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 한다.(개정)	원안 11호 → 12호
12. 연회는 총회 행정조정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3.** 좌동	원안의 12호부터 18호까지 13호부터 19호로 각호 번호가 변경됨
13. 연회는 총회 심사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4.** 좌동	
14. 연회는 총회 특별심사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5.** 좌동	
15. 연회는 총회 재판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	**16.** 좌동	

원안	개정안	비고
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6. 연회는 총회 특별재판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7. 좌동	
17. 연회는 총회 행정재판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8. 좌동	
18. 연회는 총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으로 2명(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 19. 좌동	
19. **연회는 연수원 운영위원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9. 삭제	연수원 폐지로 원안 19호 삭제
⑬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 선출 :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한다.	⑬ 좌동	
⑭ 연회는 다음과 같이 연회 안의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⑭ 좌동	
1. 개체교회 예배당, 주택, 임대차와 기타 부대시설이 재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감리회 본부에 보고한다.		
2. 교회의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의 연회 대표에게는 피선거권을 일절 부여하지 아니한다.		
3. 연회는 교회사업을 위하여 기부하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재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⑮ 연회는 제3편 제4장 제86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의 규정에 따라 감리사를 선출하고 감리사의 이·취임식을 거행한다.	⑮ 좌동	
⑯ 연회는 지방 감리사와 이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를 지방회별로 선출하여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구성한다. 다	⑯ 좌동	

원안	개정안	비고
만, 평신도 실행부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⑰ 은퇴한 회원(자원은퇴 포함)은 감리회의 공직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각 국·원 위원, 각 재단이사, 각 위원회 위원, 연합기관 파송 이사 및 위원은 은퇴 이전에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⑱ 연회는 제9편 연회 및 지방 경계법에 규정된 분할 요건을 갖추면 연회분할 건의안을 채택하여 입법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개체교회가 200개소 이상이 되면 선교연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선교연회에는 관리자를 둔다. ⑲ 연회는 감리회 본부 감사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⑳ 총회의 모든 선출직 위원과 이사는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단, 당연직과 평신도단체의 선출직 대표와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은 예외로 한다. ㉑ 미주특별연회의 직무는 연회의 직무에 준하되 총회 실행부위원 외에 본부에 파송하는 각종 위원과 이사를 파송할 수 없다. ㉒ 연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연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고연회라 하며, 사고연회는 감독회장이 처리한다.	⑰ 좌동 ⑱ 좌동 ⑲ 좌동 ⑳ 좌동 ㉑ 좌동 ㉒ 좌동	
【393】 제98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① 감독은 당연직 의장이 된다. ② 각 지방 감리사와 이와 동수의 각 지방 평신도 대표 ③ 연회 정서기 1명. 다만 연회 실행부위원회 서기를 겸한다.	【393】 제98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원안	개정안	비고
④ 연회 사업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만 보유한다. ⑤ 연회 총무와 감사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⑥ **연회 남선교회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연합회 회장, 청년회연합회 회장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④ **연회 사업분과위원회 위원장**(개정) ⑤ **연회 남·여·청장년선교회, 청년회, 교회학교, 장로회 연합회 회장**(개정) ⑥ 연회 총무와 감사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개정)	연회 3개 사업분과 위원장 및 각 단체장들이 연회 실행부위원이 됨 원안의 ⑥이 → ⑤로 이동 직권 상 실행부 위원으로 변경됨 원안의 ⑤가 → ⑥으로 이동
【394】 제99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회 또는 총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예비심사 ②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심의, 신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의 심의 확정 ③ 연회에서 실시할 주요 사업의 심의와 이의 집행 ④ 연회 및 지방 사업실적의 평가 분석 ⑤ 연회 및 지방의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장·단기 계획수립 ⑥ 연회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집행 ⑦ 연회가 닫힌 후에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처리 ⑧ 연회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공천 ⑨ 감독이 천거한 연회 총무의 인준 ⑩ 연회 각 협동총무의 선출 ⑪ 감독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되어** 선출되지 못한 경우 **가급적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	【394】 제99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 ⑧ 좌동 ⑨ 좌동 ⑩ 좌동 ⑪ **감독의 궐위 시 또는** 감독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리사 중 연급 순, 연	직무대행 선출 당선무효 포함 가급적 30일 → '가급적' 삭제

원안	개정안	비고
어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감독 직무대행은 연회 및 연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의 직무를 대행한다.	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직무 대행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인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감독 직무대행은 연회 및 연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삽입
⑫ 감독의 궐위 시에는 가급적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로 후임 감독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인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보선된 감독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⑫ 삭제**	보궐선거 규정은 선거법에 규정함
제 5 절 연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404】 제109조(직무) ① 지방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② 조사 및 처리할 사항을 총회 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시행한다.	**제 5 절 연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404】 제109조(직무) ① 좌동 ② 좌동 **③ 개체교회 부담금 납부사항, 교역자 직무사항 및 교회실태 전반을 조사한다.(신설)**	
없음	제 0 절 연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신설)	

원안	개정안	비고
	【000】 제00조(설치) 연회 안에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를 둔다.(신설)	
없음	【000】 제00조(조직) 위원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신설) ① 교역자 대표 3명(신설) ② 평신도 대표 3명(신설) ③ 감독이 지명하는 1명(신설)	
없음	【000】 제0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없음	【000】 제00조(직무)(신설) ① 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연회 내의 인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며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신설) ② 불성실한 교역자란 교역자로서의 소명 의식이 부족하고, 목회에 대한 열의가 없으며,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이로 아래 각 호와 같다.(신설) 1. 목회에 전념하지 않고 오락 및 도박에 빠진 이(신설) 2. 이중 직업을 가진 이(신설) 3.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이(신설) 4. 통계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보고하는 이(신설) 5. 총회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에서 규정한 이단집단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이단사상에 빠진 이(신설) 6.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이(신설) 7. 불성실한 목회로 이임과 함께 교회를 폐지하는 이(신설) 8. 예배처소가 없는 교회의 교역자(신설) 9. 주일 예배가 없는 교회의 교역자(신설)	

원안	개정안	비고
	③ 조사한 결과 사안에 따라 시정 경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의 회부, 연회 심사위원회에의 고소 또는 연회 감독에게 직권으로 직임정지를 요청한다.(신설) ④ 연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항은 총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신설) ⑤ 모든 조사, 처리 비용은 해당 연회에서 부담한다.(신설)	
없음	【000】 제00조(위원회 소집)(신설) ① 위원장은 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사안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거나, 위원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신설) ② 위원이 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사안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아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 요청서를 제출하면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신설) ③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 만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감독이 소집한다.(신설)	
제 6 절 연회 사무완결 【406】 제111조(연회 사무완결의 절차) 연회는 다음 총문의 각 항을 감독이 서기에게 묻고 이에 대해 서기가 답변함으로 사무를 완결한다. ① 연회에 대하여 1. 이 연회는 합법적으로 구성되었습니까? 2. 이 연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되었습니까?	**제 6 절 연회 사무완결** 【406】 제111조(연회 사무완결의 절차) 연회는 다음 총문의 각 항을 감독이 서기에게 묻고 이에 대해 서기가 답변함으로 사무를 완결한다. ① 좌동	

원안	개정안	비고
3. 이 연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회계가 신원보증을 세웠습니까?		
4. 모든 교역자의 품행과 직무상 처리에 무흠 여부를 심사하였습니까?		
② 준회원에 대하여	② 준회원에 대하여	
1. 준회원에 허입된 이가 누구입니까?	1. 좌동	
2. **준회원에** 계속된 이가 누구입니까?	2. **준회원 1년급에** 계속된 이가 누구입니까? (개정)	
3. 준회원 2년급에 진급한 이가 누구입니까?	3. 좌동	
4. 이미 목사안수 받고 준회원 2년급에 진급한 이가 누구입니까?	4. 좌동	원안 제5호를 제4호로 이동
5. 준회원 2년급에 계속된 이가 누구입니까?	5. **준회원 3년급에 진급한 이가 누구입니까?** (신설)	5. 수련전도사 과정이 3년이므로 조정
6. 다른 연회에서 이명 하여 온 이가 누구입니까?	6. **준회원 3년급에 계속된 이가 누구입니까?** (신설)	6. 수련전도사 과정이 3년이므로 조정
7. 다른 연회로 이명 하여 간 이가 누구입니까?	7. **준회원 과정을 마치고 준필에 계속된 이가 누구입니까?**(신설)	7. 신설
8. 금년에 국외선교사로 파송된 이가 누구입니까?	8. 좌동	6 → 8
9. 국외선교사로 파송되어 가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9. 좌동	7 → 9
10. 금년에 국외유학을 간 이가 누구입니까?	10. 좌동	8 → 10
11. 국외유학을 계속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11. 좌동	9 → 11
12. 국외유학에서 돌아온 이가 누구입니까?	12. 좌동	10 → 12
13. 국외 감리교회로 이명 하여 간 이가 누구입니까?	13. 좌동	11 → 13
14. 국외 감리교회에서 이명 하여 온 이가 누구입	14. 좌동	12 → 14

원안	개정안	비고
니까?		
15. **퇴직한** 이가 누구입니까?	15. 좌동	13 → 15
16. 금년에 신병으로 휴직한 이가 누구입니까?	16. 좌동	14 → 16
17. 휴직이 계속되는 이가 누구입니까?	17. 좌동	16 → 17
18. 휴직에서 복직한 이가 누구입니까?	18. 좌동	17 → 18
19. 금년에 별세한 이가 누구입니까?	19. 좌동	18 → 19원안
	20. **퇴회된** 이가 **누구이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개정)	15를 20으로 이동 20 원안 15에서 이동, 퇴직 → 퇴회
	21. 좌동	19 → 21
③ 정회원에 대하여	③ 정회원에 대하여	
1. 금년에 허입된 이가 누구입니까?	1. 좌동	
2. 재허입된 이가 누구입니까?	2. 좌동	
	3. 정회원 1년급에 계속할 이가 누구입니까?(신설)	정회원 진급에서 누락된 이를 표기하기 위하여 신설함
	4. 정회원 2년급에 계속할 이가 누구입니까?(신설)	
	5. 정회원 3년급에 계속할 이가 누구입니까?(신설)	
	6. 정회원 4년급에 계속할 이가 누구입니까?(신설)	
	7. 정회원 5년급에 계속할 이가 누구입니까?(신설)	
	8. 정회원 6년급에 계속할 이가 누구입니까?(신설)	
	9. 정회원 7년급에 계속할 이가 누구입니까?(신설)	
	10. 정회원 8년급에 계속할 이가 누구입니	

원안	개정안	비고
	까?(신설)	
	11. 정회원 9년급에 계속할 이가 누구입니까?(신설)	
	12. 정회원 10년급에 계속할 이가 누구입니까?(신설)	
	13. 금년에 정회원 연수과정 제1과정을 필한 이가 누구입니까?(신설)	
	14. 금년에 정회원 연수과정 제2과정을 필한 이가 누구입니까?(신설)	
	15. 금년에 정회원 연수과정 제3과정을 필한 이가 누구입니까?(신설)	
	16. 금년에 정회원 연수과정 제4과정을 필한 이가 누구입니까?(신설)	
3. 다른 연회에서 이명 하여 온 이가 누구입니까?	17. 좌동	3 → 17
4. 다른 연회로 이명 하여 간 이가 누구입니까?	18. 좌동	4 → 18
5. 다른 교파에서 이명 하여 허입된 이가 누구입니까?	19. 좌동	5 → 19
6. 휴직한 이가 누구입니까?	20. 좌동	6 → 20
7. 휴직이 계속되는 이가 누구입니까?	21. 좌동	7 → 21
8. 휴직에서 복직한 이가 누구입니까?	22. 좌동	8 → 22
9. 금년에 국외선교사로 파송되어 간 이가 누구입니까?	23. 좌동	9 → 23
10. 국외선교사로 파송되어 가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24. 좌동	10 → 24
11. 금년에 국외에 유학을 간 이가 누구입니까?	25. 좌동	11 → 25
12. 국외유학을 계속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26. 좌동	12 → 26

원안	개정안	비고
13. 국외유학에서 돌아온 이가 누구입니까?	27. 좌동	13 → 27
14. 국외유학자로 2년급에 계속할 이가 누구입니까?	**14. 삭제**	원안 14~22까지는 개정안 3~12에 포함되므로 삭제함
15. 국외유학자로 3년급에 계속할 이가 누구입니까?	**15. 삭제**	
16. 국외유학자로 4년급에 계속할 이가 누구입니까?	**16. 삭제**	
17. 국외유학자로 5년급에 계속할 이가 누구입니까?	**17. 삭제**	
18. 국외유학자로 6년급에 계속할 이가 누구입니까?	**18. 삭제**	
19. 국외유학자로 7년급에 계속할 이가 누구입니까?	**19. 삭제**	
20. 국외유학자로 8년급에 계속할 이가 누구입니까?	**20. 삭제**	
21. 국외유학자로 9년급에 계속할 이가 누구입니까?	**21. 삭제**	
22. 국외유학자로 10년급에 계속할 이가 누구입니까?	**22. 삭제**	
23. 정직된 이가 누구입니까?	28. 정직된 이가 **누구이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개정)	23 → 28, 정직사유 기재 명기하도록 함
24. 정직에서 복직된 이가 누구입니까?	29. 좌동	24 → 29
25. 면직된 이가 누구입니까?	30. 면직된 이가 **누구이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개정)	25 → 30, 정직사유 기재 명기하도록 함
	31. **면직에서 복권된 이가 누구입니까?**(신설)	31. 면직에서 복권된 이 삽입
	32. **퇴회된 이가 누구이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신설)	32. 퇴회된 이 삽입, 퇴회사유 명기하도록 함

원안	개정안	비고
26. 정년은퇴한 이가 누구입니까?	33. 좌동	26 → 33
27. 자원은퇴한 이가 누구입니까?	34. 좌동	27 → 34
28. 공상은퇴한 이가 누구입니까?	35. 좌동	28 → 35
29. 자원퇴회한 이가 누구입니까?	36. 좌동	29 → 36
30. 공상퇴회한 이가 누구입니까?	37. 좌동	30 → 37
31. 출회당한 이가 누구입니까?	38. 좌동	31 → 38
32. 금년에 별세한 이가 누구입니까?	39. 좌동	32 → 39
33. 국외 감리교회에서 이명 하여 온 이가 누구입니까?	40. 좌동	33 → 40
34. 국외 감리교회로 이명 하여 간 이가 누구입니까?	41. 좌동	34 → 41
④ 협동회원에 대하여	④ 협동회원에 대하여	
1. 금년에 허입된 이가 누구입니까?	1. 좌동	
2. 금년에 재허입된 이가 누구입니까?	2. 좌동	
3. 휴직한 이가 누구입니까?	3. 좌동	
4. 휴직이 계속되는 이가 누구입니까?	4. 좌동	
5. 휴직에서 복직한 이가 누구입니까?	5. 좌동	
6. 다른 연회에서 이명 하여 온 이가 누구입니까?	6. 좌동	
7. 다른 연회로 이명 하여 간 이가 누구입니까?	7. 좌동	
8. 정회원으로 허입한 이가 누구입니까?	**8. 삭제**	협동회원은 정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삭제
9. 면직된 이가 누구입니까?	8. 면직된 이가 **누구이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개정)	원안 9 → 8호
⑤ 품행에 대하여	⑤ 품행에 대하여	
1. **준회원으로** 목사안수를 받기 위하여 천거된 이가 누구입니까?	1. **준회원으로 허입하면서 목사안수를 받기위해 천거된 이가 누구입니까?**(신설)	준회원으로 허입하면서 목사안수 받는 이 준회원 과정을 마치고 목사안수 받는 이

원안	개정안	비고
2. 준회원으로 허입하면서 목사안수례를 받은 이가 누구입니까?	2. 준회원**과정을 마치고** 목사안수를 받기위해 천거된 이가 누구입니까?(개정)	1 → 2,
3. **준회원으로** 목사안수례를 받은 이가 누구입니까?	3. **협동회원으로 목사안수를 받기위해 천거된 이가 누구입니까?**(신설)	협동회원으로 목사안수 받는 이
	4. 좌동	2 → 4로 조정
		준회원으로 허입하면서 목사안수 받는 이
	5. 준회원**과정을 마치고** 목사안수례를 받은 이가 누구입니까?(개정)	준회원 과정을 마치고 목사안수 받는 이
	6. **협동회원으로 목사안수례를 받은 이가 누구입니까?**(신설)	협동회원으로 목사안수 받는 이
⑥ 교인상황에 대하여	⑥ 좌동	
1. 금년에 원입인 수가 몇 명입니까? (아동 포함)		
2. 금년에 세례를 받은 이가 몇 명입니까?		
3. 금년에 아동세례를 받은 이가 몇 명입니까?		
4. 금년에 유아세례를 받은 이가 몇 명입니까?		
5. 금년에 입교한 이가 몇 명입니까?		
6. 입교인의 총수가 몇 명입니까?		
⑦ 그 밖의 사무에 대하여	⑦ 그 밖의 사무에 대하여	
1. 연회 회계가 보고하였습니까?	1. 좌동	
2. 모든 위원이 보고하였습니까?	2. 좌동	
3. **통계서기가** 모든 통계를 작성하여 감리회 본부와 **연회 본부에** 보고하였습니까?	3. **서기가** 모든 통계를 작성하여 감리회 본부와 **연회에** 보고하였습니까?	연회에는 통계서기가 없으므로 개정
4. 고소가 있습니까?	4. 좌동	
5. 공소나 상고가 있습니까?	5. 좌동	
6. 다음 총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선출된 교역자 대표와 평신도 대표가 누구입니까?	6. 좌동	

원안	개정안	비고
7. 감리회 본부와 연회 본부 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한 **지방이** 있습니까? 8. 각 지방 감리사들은 누가 임명되었으며 평신도실행부위원은 누가 선출되었습니까? 9. 다음 연회는 어디에서 모입니까?	7. 감리회 본부와 연회 본부 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까?(개정) 8. 좌동 9. 좌동	각종 부담금은 교회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
【414】 제119조(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교회의 총괄적 정책수립 : 총회는 감리교회의 부흥발전을 위한 각 분야별 정책을 수립하여 연회와 지방회에 시달하여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② 감리회 본부 설치 : 총회는 의결된 정책을 기획하고 연회를 통해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감리회 내의 통신사업과 홍보사업을 위해 서울에 감리회 본부를 설치한다. ③ 감독과 감독회장 선출 :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과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④ 감독과 감독회장 이·취임식 : 총회는 감독과 감독회장의 이·취임식을 한다. 다만, 회기 내에 총회가 개최되지 못해 취임식이 불가능한 경우 회기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감독 또는 감독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가장 먼저 열리는 총회에서 취임식을 한다. ⑤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 총회는 교역자수급 및 고시를 위하여 총회 특별위원회로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를 두고 그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⑥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설립 : 총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을 설립하고 감리회에 속한 모든 토지와 건물 등 자산의 소유권을 보존하게 한다. 유지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정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	【414】 제119조(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⑪ 항 좌동	

원안	개정안	비고
한다. ⑦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설립 : 총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을 설립하고 교역자의 은급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은급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 ⑧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설립 : 총회는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 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설립 : 총회는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사회복지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 ⑩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설립 : 총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장학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장학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 ⑪ 각 기관 이사와 위원 파송 :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기관에 이사와 위원을 파송한다. 1. 총회는 감리회에서 설립한 법인이나 기관, 그리고 감리회와 관계된 기관에 이사 또는 대표를 파송한다. 2. 총회는 감리회와 관계된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이사를 파송한다. 3. 총회는 교회연합기관과 특수선교기관에 이사 또는 위원을 파송한다. 4. 총회에서 파송한 이사나 위원이 감리회		

원안	개정안	비고
의 정책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감리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가 이들을 소환할 수 있다. 다만, 총회가 닫힌 후에는 감독회의에서 소환한다. 5. 총회가 직권상 파송한 이사는 파송된 기관의 임기에 관계없이 직권상 임기와 동일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총회는 이사의 파송을 취소한다. 다만, 총회가 닫힌 후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파송을 취소한다. ⑫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교 또는 대학교 총장 인준 : 총회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목원대학교 총장, 협성대학교 총장** 등의 임명에 따른 인준을 한다. 인준을 받지 못한 총장은 즉시 직위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렇게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각 총장의 인준은 총회에서 등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다만, 총회가 닫힌 후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⑬ 입법의회 회원 선출 : 총회는 다음과 같이 입법의회 선출직 회원을 선출한다. 1. 총회는 총회 회원 중에서 입법의회 선출직 회원으로 총회 회원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회원을 연회별로 선출한다. 입법의회 회원은 교역자와 평신도를 동수로 한다. 2. 연회별로 후보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을 순위를 정하여 선출한다. 3. 연회 감독은 입법의회 회원이 선출되는 즉시 이를 총회 서기에게 보고한다. 4. 감독회장은 입법의회 회원이 확정되는	⑫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교 또는 대학교 총장 인준 : 총회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등의 임명에 따른 인준을 한다. 인준을 받지 못한 총장은 즉시 직위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렇게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각 총장의 인준은 총회에서 등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다만, 총회가 닫힌 후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개정) ⑬ 좌동	

원안	개정안	비고
대로 연회별로 2명씩(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의 입법의회 공천위원을 선정하여 입법의회 각 분과위원을 공천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⑭ 총회 심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⑭ 총회 심사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따라 각 연회 및 호남선교연회에서 교역자 또는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 1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한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개정)	호남선교연회 인원증감에 따른 개정
⑮ 총회 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따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	⑮ 총회 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따라 **각 연회 및 호남선교연회에서 교역자 또는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 1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개정)	
⑯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한다. 단, 연회추천 평신도위원은 가급적 법전문인으로 한다.**	⑯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따라 각 연회 및 호남선교연회에서 교역자 또는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 1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한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개정)	
⑰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따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전임감독 1명과 법조인 3명으로 구성한다. **단, 연회추천 평신도 위원은 가급적 법조인으로 한다.**	⑰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따라 **각 연회 및 호남선교연회에서 교역자 또는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 1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전임감독 1명과 법조인 3명으로 구성한다.(개정)	
⑱ 총회 행정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따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	⑱ 총회 행정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따라 **각 연회 및 호남선교연회에서 교역자 또는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 1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개정)	
⑲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40명(교역자 20명, 평신도 20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2명(전임감독 1명, **평신도 법조인 1명**)으로 조직한다.	⑲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선출한 42명(교역자 21명, 평신도 2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3명(전임감독 1명, **법조인 2명**)으로 조직한다.(개정)	선관위에 법조인 2명으로 증원

원안	개정안	비고
⑳ 총회 행정조정위원회는 교회 안의 각종 사건이 법정 소송에 이르지 않도록 조정, 중재하기 위하여 **연회에서 선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2명으로 조직한다.	⑳ 총회 행정조정위원회는 교회 안의 각종 사건이 법정 소송에 이르지 않도록 조정, 중재하기 위하여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따라 각 연회 및 호남선교연회에서 교역자 또는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 1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2명으로 조직한다.(개정)	
㉑ 총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는 **연회에서 지명하는 20명(교역자 10명, 평신도 10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2명으로 조직한다.	㉑ 총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는 **각 연회 및 호남선교연회에서 교역자 또는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 1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2명으로 조직한다.(개정)	
㉒ **감리회 본부 감사위원회** 조직 : 총회는 감리회 본부의 회계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연회에서 선출된 감사들로 감사위원회를 조직한다. 감사는 **10개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조직한다.** 4명(교역자 2명, 평신도 2명)은 감사의 연속성을 위해 교체하지 않으며 그 순번은 감독회의에서 정한다.	㉒ **총회 감사위원회** 조직 : 총회는 감리회 본부의 회계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연회에서 선출된 감사들로 감사위원회를 조직한다. 감사는 **각 연회 및 호남선교연회에서 교역자 또는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 11명**으로 조직한다. 4명(교역자 2명, 평신도 2명)은 감사의 연속성을 위해 교체하지 않으며 그 순번은 감독회의에서 정한다.(개정)	
㉓ 총회는 본부 사업보고, 회계보고 및 감사보고를 받는다.	㉓ 좌동	
㉔ 선교연회 조직 : 총회는 국내외적으로 선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선교기반이 조성된 지역에 입법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교연회를 조직할 수 있다. 선교연회에는 선교연회 관리자를 둔다.	㉔ 좌동	
㉕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법조인은 총회 회원이 아니어도 지명할 수 있다.	㉕ 좌동	
㉖ 임시 총회의 직무는 임시 총회 소집 안건에 한한다.	㉖ 좌동	
제9장 입법의회	**제9장 입법의회**	
【426】 제131조(입법의회 의장) 입법의회의 의장은 **감독회장이 된다.** 감독회장 유고시에는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감독이,	【426】 제131조(입법의회 의장) 입법의회의 의장은 감독회장이 된다. 감독회장 유고시에는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감독이,	

원안	개정안	비고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 중에서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 중에서 **연급 순, 연장자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연장자 → 연급, 연장자 순으로
【432】제137조(입법의회 분과위원회) 입법의회는 각 분야별 연구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다음 각 항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하여 조직한다. ①~⑮ 원안(내용 생략)	【432】제137조(입법의회 분과위원회) 입법의회는 각 분야별 연구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다음 각 항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하여 조직한다. ①~⑮ 원안 좌동 **⑯ 투표위원회 : 입법의회의 각종 투표 시에 회원수, 의결 정족수를 파악하고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투표위원회를 둔다.**(신설)	투표위원회 신설
제 10 장 총회실행부위원회 【434】제139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직권상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 선교연회 관리자,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년회전국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전국연합회 회장 ② 선출직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 각 연회별로 총회대표 중에서 교역자, 평신도 각 1명 ③ 당연직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 총회 정.부서기 2명. 다만 정서기는 실행부위원회 서기를 겸한다. ④ **본부 감사**는 직책상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제 10 장 총회실행부위원회 【434】제139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직권상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 선교연회 관리자, 남·여·청장년선교회, 청년회, 교회학교, **장로회 전국연합회 회장**(개정) ② 선출직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 각 연회별로 총회대표 중에서 교역자, 평신도 각 1명**과 호남선교연회 교역자 또는 평신도 중 1명**(개정) ③ 좌동 ④ **총회 감사**는 직책상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되 **감사위원장만 발언권을** 보유한다.(개정) ⑤ **연회 총무, 각 국 국장, 실장, 및 사장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배석한다.**(신설)	장로회 전국연합회장을 총회실행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함.

원안	개정안	비고
【435】제140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총회 안건의 예비심사 ② 총회, 입법의회 개최 일시와 장소 및 안건 협의 ③ 총회가 닫힌 후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및 새로 발생한 중요 안건의 심의 처리 ④ 감리회 본부의 신년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의 평가분석 ⑤ 감리회 본부의 신년도 예산편성 및 전년도 결산 심의 ⑥ 감리회 본부의 사무행정 내규 제정 및 개정	【435】제140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감리회 본부의 사무행정 내규 **인준** (개정)	
⑦ 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되어** 선출되지 못한 경우 **가급적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실시하고 보고받는다.(신설)** ⑧ **감독회장의 궐위 시 또는** 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인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원안 ⑦ → ⑧로 조정. ‘감독회장의 궐위시’ 포함 ‘당선무효’ 포함 ‘가급적 30일’ → ‘가급적’ 삭제 [435]140조 총회실행부 위원회 ⑥ 내규조직사항

원안	개정안	비고
⑧ 감독회장의 궐위 시에는 가급적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임기를 마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로 후임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인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⑧ 삭제	
【437】 제142조(총회 특별위원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두어 해당업무를 시행하도록 한다. ① 행정조정위원회 ② 선거관리위원회 ③ 재판위원회 ④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⑤ 장정연구위원회 ⑥ 장정유권해석위원회	【437】 제142조(총회 특별위원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두어 해당업무를 시행하도록 한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좌동 ⑦ **교역자 특별조사 처리위원회(신설)**	⑦ **총회에 교역자 특별조사 처리위원회 신설**
없음	**제0절 총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신설) **【000】 제000조(설치) 총회 안에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를 둔다.**(신설)	
없음	**【000】 제000조(조직) 위원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신설) **① 교역자 대표 5명**(신설) **② 평신도 대표 5명**(신설) **③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1명**(신설)	

원안	개정안	비고
없음	【000】 제00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없음	【000】 제000조(직무)(신설) ① 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인지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며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신설) ② 불성실한 교역자란 교역자로서의 소명 의식이 부족하고, 목회에 대한 열의가 없으며,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이로 아래 각 호와 같다.(신설) 1. 목회에 전념하지 않고 오락 및 도박에 빠진 이(신설) 2. 이중 직업을 가진 이(신설) 3.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이(신설) 4. 통계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보고하는 이(신설) 5. 총회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가 규정한 이단 집단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이단사상에 빠진 이(신설) 6.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이(신설) 7. 불성실한 목회로 이임과 함께 교회를 폐지하는 이(신설) 8. 예배처소가 없는 교회의 교역자(신설) 9. 주일 예배가 없는 교회의 교역자(신설) ③ 조사한 결과 사안에 따라 시정 경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의 회부, 연회 심사위원회에의 고소 또는 연회 감독에게 직권으로 직임정지를 요청한다.(신설) ④ 모든 조사, 처리 비용은 총회에서 부담한다.(신설)	
없음	【000】 제000조(위원회 소집)(신설) ① 위원장은 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사안을 인지하	

원안	개정안	비고
	거나, 제보를 받거나, 위원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신설) **② 위원이 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사안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아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 요청서를 제출하면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신설) **③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 만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감독회장이 소집한다.**(신설)	
【439】 제144조(총회 행정조정위원회의 구성) 총회 행정조정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선임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5명), 감독회장이 지명한 2명으로 구성한다.	【439】 제144조(총회 행정조정위원회의 구성) 총회 행정조정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따라 각 연회 및 호남선교연회에서 교역자 또는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 1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한 2명으로 구성한다.(개정)	**호남선교연회** 1명 추가
제 2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2 절 선거관리위원회	
【444】 제149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조직 : 각 연회 교역자, 평신도 각 2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한 2명으로 조직한다. ② 임무 :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준한다.	【444】 제149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조직 : 각 연회 교역자, 평신도 각 2명과 **호남선교연회 교역자, 평신도 각 1명 그리고** 감독회장이 **지명한 3명으로** 조직한다.(개정) ② 좌동	호남선교연회 교역자와 평신도 각 1명
【458】 제163조(직무) ① 총회가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 ② 유권해석의 심리와 결정은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출입금지 또는 퇴장을 명하거나 기타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458】 제163조(직무) ① 좌동 ② 유권해석의 심리와 결정은 **공개한다.** (개정) ③ 좌동	다만 이하는 삭제 어떤 조항이든 장정유권해석위에서 결의된 것은 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반드시 공개되어 모든 이가 알아야 한다.

원안	개정안	비고
④ 누구든지 유권해석에 관하여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④ 좌동	
⑤ 유권해석의 합의는 법조인 2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합의에 관한 의견이 3가지 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최다 의견수로 결정한다.	⑤ 좌동	
⑥ 다음 각 호의 유권해석은 법조인 2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감독회장이 재 결의를 요청하는 경우 2.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3. 종전의 유권해석과 유사한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4.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와 같은 요건으로 의결하기로 결의한 경우	⑥ 좌동	

제5편 교회 경제법

원안	개정안	비고
제5편 경제법	제5편 경제법	
【48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8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부담금 : 부담금이라 함은 감리회 본부, 연회 및 지방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과 교역자은급법이 정하는 은급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의무적으로 납입하게 하는 부담금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좌동	
1. 감리회 본부 부담금 : 감리회 본부 부담금(이하 '본부 부담금'이라 한다.)은 감리회 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의 1%를 분담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감리회 본부는 수납된 본부 부담금 중에서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 및 기타 예산을 책정하여야 한다. 각 연회 선교사업비와 교역자 양성비는 별표 3.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수익금 처분)에 따라 배당 지원한다.	1. 좌동	
2. 연회 본부 부담금 : 연회 본부 부담금은 각 연회별로 해당 연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 중 일정액을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이 경우, 개체교회 일반회계 결산액 중 분담하는 연회 본부 부	2. 좌동	

원안	개정안	비고
담금의 비율은 각 연회별로 정한다. 3. 지방회 부담금 : 지방회 부담금은 각 지방별로 해당 지방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 중 일정액을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이 경우, 개체교회 일반회계 결산액 중 분담하는 지방회 부담금의 비율은 각 지방회별로 정한다.	3. 좌동	
4. 은급 부담금 : 은급 부담금은 교역자은급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의 1.5%를 교역자은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4. 은급 부담금 : 은급 부담금은 교역자은급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의 2%를 교역자은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개정)	4. 은급부담금 비율을 1.5% → 2%
② 예산회계 원칙 : 예산회계의 원칙이라 함은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수입·지출 예산의 편성, 의결 절차, 감사 및 결산에 관한 일체의 기본적인 원칙을 말한다.	② 좌동	
③ 고정자산 : 고정자산은 개체교회, 감리회 본부 또는 감리회 산하 단체, 기관 등에서 취득,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의 유형고정자산과 기타 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③ 좌동	
④ 일반회계 :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감리회 본부, 동 소속기관, 단체 등에서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 외에 통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립 시행하는 일반적인 회계를 말한다.	④ 좌동	

원안	개정안	비고
제3장 부담금 없음	제3장 부담금 【000】 제0조(부담금 실사 및 확인) 연회 미자립교회 대책 및 교회실태조사 위원회는 개체교회의 통계표를 실사하여 확인을 필하고 감리회본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에 불응하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당해 연도 회원권이 없다.(신설)	

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정관

원안(2012년 장정)	개정안	비고
<별표> 재단 정관 및 규정 **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정관** (1926. 5. 7 법인설립허가) **제 2 장 임 원** **[524] 제 5 조(임원)** 본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명 ② 이 사 **20명** ③ 감 사 2명	**<별표> 재단 정관 및 규정** **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정관** (1926. 5. 7 법인설립허가) **제 2 장 임 원** **[524] 제 5 조(임원)** 본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명 ② 이 사 **21명** ③ 감 사 2명	2. 이 사 **20명→21명 호남선교연회**
[525] 제 6 조(선출) 임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각 연회에서 목사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임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감독회장은 직권상 이사장이 되고 감사는 본부 감사 중 감사위원회에서 배정한 2명으로 한다.	**[525] 제 6 조(선출)** 임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각 연회에서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과 호남선교연회에서 교역자 또는 평신도 중 1명**을 선임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감독회장은 직권상 이사장이 되고 감사는 본부 감사 중 감사위원회에서 배정한 2명으로 한다.(개정)	호남, (**호남선교연회**1명)→추가

5.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정관

원안(2012년 장정)	개정안	비고
5.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정관 개정 1989. 9. 8. 문화공보부로부터 인가 개정 1991. 2. 5. 문화부로부터 일부변경 인가 개정 1994. 5. 17. 문화체육부로부터 일부변경 인가 개정 1998. 11. 16. 문화관광부로부터 일부변경 인가 개정 2000. 12. 8. 문화관광부로부터 일부변경 인가 개정 2002. 11. 1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변경 허가 개정 2002. 11. 2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변경 허가 개정 2004. 4. 1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내용변경 허가	**5.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정관** 좌동 **개정 2013. 00. 0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내용변경 허가 (신설)**	2004년에서 20012년까지 개정삽입
제2장 임 원 【596】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명 ② 이 사 20명 ③ 감 사 3명	**제2장 임 원** **【596】 제5조(임원) 본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명 **② 선출직 이사 11명 (개정)** **③ 전문직 이사 3명 (개정)** ④ 감 사 2명	**② 전문직 이사: 전문가로서 감리회 집사이상 자를 추천하여 감독회의에서 3명을 선출하여 총회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597】 제6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연회 선출 이사, 직권상 이사, 감사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여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597】 제6조(임원의 선임방법) **임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여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개정)** ① 삭제	**원안 ①은 조의 정의로 이동**

원안(2012년 장정)	개정안	비고
② 연회 선출 이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각 연회에서 목사 1명, 평신도 1명을 선출한다.	① 연회 선출 이사는 각 연회 및 호남선교연회에서 교역자 또는 평신도 중 1명을 선출한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4명(교역자2명, 평신도2명)은 교체하지 않으며 그 순번은 감독회의에서 정한다.(개정)	원안 ② → ①로
	② 전문직 이사는 기독교대함감리회 감독회의에서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여 변호사, 세무사, 금융전문가, 부동산전문인 중 3명을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출하되 감리회 집사 이상이여야 하며 동일 직종에서 2명이상은 안 된다. (신설)	② 전문직 이사 신설
③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직권상 이사가 된다.	③ 삭제	
④ 감사는 본부 감사 중 3인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감사 중 2인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개정)	
⑤ 임원은 임원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임원들이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좌동	
⑥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의 제5항에 규정한 바와 관계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⑤ 좌동	
【600】 제9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및 직무)	【600】 제9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및 직무)	
① 이사장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감독회장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기독교대함감리회 감독회의에서 선출직 이사 중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궐위 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후임 이사장을 선출 한다. (개정)	은급재단 이사장은 선출직 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궐위 시 문제점을 보완함
②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회의 의장이 되며 그 밖의 이사회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② 좌동	

원안(2012년 장정)	개정안	비고
【602】 제11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본 법인의 재산 상황과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상황을 감사한다. ② 제1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본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02】 제11조(감사의 직무)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감사는 본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며 그 시정을 요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기독교타임즈에 공고한다.**(개정)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 구체적 지적사항을 시정케 하기 위함
【603】 제12조(이사의 해임) 이사로서 그 직무에 성실하지 못하며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임한 후 보고한다.	【603】 제12조(이사의 해임) 이사로서 그 직무에 성실하지 못하며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해임하여 해당 연회 및 감독회의에 통보하고 보선하게 한다.(개정)**	보고 처에 대한 구체적 명기와 보선 절차를 명기하였음.
【606】 제1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사업계획과 운영 ② 예산 및 결산심의 ③ 정관 변경, 제 규정 제정 및 법인 해산 ④ 재산의 관리, 취득, 처분 교환 및 기채 ⑤ **업무집행** ⑥ 법인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⑦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06】 제15조(이사회의 **직무**)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삭제** ⑤ 좌동 ⑥ 정좌동	

원안(2012년 장정)	개정안	비고
⑧ 임원선출 및 해임	⑦ 좌동 ⑧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는다.**(신설)	
	부 칙 (2013. 00. 00. 서울특별시 문화과 - 호) **【630】 제1조(시행일)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13. 11. 00. 부터 시행한다.(신설)**	정관의 규정 변경 시 법인 신고사항임

6.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 시행규정

원안(2012년 장정)	개정안	비고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632】 제3조(기금조성) 은급법 제4조(기금의 조성의무)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할 금원(金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632] 제3조(기금조성) 좌동	
① 허입부담금 : 허입예정자는 **연회 허입시 당해연도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자 생활비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① 허입부담금 : 허입예정자는 **준회원 허입과정 지원을 하는 해의 생활비 1개월분을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일시 또는 분납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비 최저 금액은 60만원으로 한다.**(개정)	준회원 허입 시 기준 보증이 최저 60만원임
② 교역자은급부담금	② 교역자은급부담금 : **교역자는 2014년부터 매년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자 생활비 최저 기준은 60만원으로 한다. (개정)**	신 은급법 폐지로 인한 변경사항 표기 원안의 1호 → 교역자 은급부담금 정의로 이동
1.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는 2004년부터 3년마다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자 생활비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2.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 중 1984년도 이전에 이미 연회원으로 입회한 교역자와 1984년 이후 준회원 허입자로서 허입부담금을 미납한 교역자는 납입하는 해의 1개월분 생활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준회원 허입자로서 허입부담금을 미납한 교역자는 납입하는 해의 1개월분 생활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원안의 2호 → 1호
3.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준회원 허입시에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미납하면 은급혜택을 일절 받을 수 없다.**	2. **준회원 허입 시에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미납하면 은급혜택을 일절 받을 수 없다.**(개정)	원안의 3호 → 2호
4.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정회원 교역자 은급부담금을 미납하면 미납 1회마다 은급금 지급시 10%의 감	4. 삭제	원안의 4호 삭제

원안(2012년 장정)	개정안	비고
소 처분을 받게 된다. ③ 본인납입액 :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는 신(新)은급제도의 납입액을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1.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는 '본인납입액'과 '교회지원액'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고, '본인납입액' 및 '교회지원액'은 위 교역자가 감리연금에 가입시 납입을 확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본인납입액'과 '교회지원액'의 비율은 교역자은급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교역자와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2.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 또는 그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가 은급법 및 시행규정에서 정한 '월 납입액'('본인납입액'과 '교회지원액'을 합산한 금액)을 미납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다음 달에 미납액을 전부 납부하여야 하며, 교역자와 개체교회가 합계 2개월분 이상의 '월 납입액'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신(新)은급제도에 의한 감리연금, 기타 은급제도에 의한 본인 및 배우자, 유가족의 은급금을 받을 권한이 소멸된다. 다만, 은급재단이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미납된 금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신(新)은급제도에 의한 감리연금 및 기타 은급제도에 의한 은급금 수령권한이 다시 발생한다.	③ 삭제	원안의 ③은 감리연금법 해당사항이므로 삭제

원안(2012년 장정)	개정안	비고
3. '월 납입액'은 기준금액을 20만원으로 하되, 교역자 및 소속 개체교회의 재정에 따라 해당 교역자는 감리연금 가입시 또는 납입기간 중에 감액이나 증액을 할 수 있다. 다만, 최소 '월 납입액'은 10만원으로 하며, 최대 '월 납입액'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교회은급부담금	③ 교회은급부담금 :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교회는 전년도 경상비 총 결산 액의 2.0%를 교회은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한선은 년 20만원으로 한다.**(개정)	원안의 1호 → 교회은급부담금 정의로 이동 은급부담금을 현행 1.5%에서 0.5% 상향조정한 것이며 최저 금액을 정한 것임.
1.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교회는 전년도 경상비 총 결산액의 1.5%를 교회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2. 교회은급부담금은 개체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퇴직적립금 또는 교회지원액과 별도로 매년 예산을 세워 납부하여야 한다.	2. 삭제	원안의 2호 삭제
3. 경상수입 결산이란 교회 일반회계의 총 수입금에서 전년도 이월금 수입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 좌동	원안의 3호 → 1호
4. 교회가 은급부담금을 미납하면 모든 의회 회원권이 보류(「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제4장 제43조(지방회의 조직) 제6항, 제7장 제84조(연회의 조직), 제8장 제113조(총회의 구성) 제5항)되며, 교역자 목회시무연한 계산에서 미납된 기간은 제외한다.	2. 좌동	원안의 4호 → 2호
⑤ 교회지원액	**⑤ 폐지**	원안 ⑤는 감리연금법 해당사항이므로 폐지
1. 은급법 제3조의 적용대상인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 중 1958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교역자가 있는 교회는, 그 교회에 시무하는 교		

원안(2012년 장정)	개정안	비고
역자와 파송한 선교사의 '월 납입액' 중 교역자가 납부하기로 한 '본인납입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은급법 제3조의 적용대상인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 중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가 있는 교회는, 그 교역자에 대해서는 '교회지원액'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개체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퇴직적립금' 지급을 폐지한다. 3. 퇴직적립금은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교역 중인 개체교회의 경우에 기존과 동일하다. ⑥ 감리연금 납입 유예 : 신(新)은급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 미자립교회 등 교역자와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 감리연금의 '월 납입액'에 대하여 납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역자 및 해당 개체교회는 은급재단에 감리연금 납입을 최장 2년까지 유예 신청할 수 있다.	⑥ 폐지 ④ 교회은급부담금과 교역자 은급부담금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일시 또는 분납으로 납부해야 한다.(신설) ⑤ 개체교회 또는 각 선교회가 파송한 해외 선교사의 은급부담금은 파송교회 또는 파송선교회에서 납부한다.(신설) ⑥ 2008년 신은급법 시행에 의해 감리연금에 가입한 교역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지 및 해약할 수 있다.(신설)	

원안(2012년 장정)	개정안	비고
⑦ 의연금 : 제3조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개인 또는 기관이 기탁하는 의연금 ⑧ 기타 수익금 : 기금의 예금 또는 신탁과 투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과실금과 기타 수익금	⑦ 좌동 ⑧ 좌동	
제2장 운 영	**제2장 운 영**	
【633】 제4조(위원회) 은급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연구를 위하여 아래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 : 은급사업 운영, **각종 기금업무**, 재단업무, 정관 및 시행규정 등 법률에 관한 사항 ② 목회관리위원회 : 교역자의 전반적인 목회관리, 재직기간산정, 자격등의 문제를 처리한다. 이를 위해 교역자 재직에 대한 조사의 권한을 가지며 목회 적법 여부를 심의 처리한다. ③ 재정위원회 : 예산 및 결산, 부담금책정, **기금관리와 통계** 등 ④ 재산개발위원회 : 재산개발, 주택, 묘지개발, 복지시설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	【633】 제4조(위원회) 은급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연구를 위하여 아래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 : 은급사업 운영, 재단업무, 정관 및 시행규정 등 법률에 관한 사항(개정) ② 좌동 ③ 재정위원회 : 예산 및 결산, 부담금책정, **각종 기금업무와 관리 및 통계** 등(개정) ④ 좌동	
【634】 제5조(위원회 조직 및 임기) ① 각 위원회 위원은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각 위원회 위원구성은 5~7명 이내로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각 위원회에 위원장, 서기 각 1명을 둔다. ④ 각 위원회 위원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각 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되 연 1회** 정기적으로 모이며, 필요한 때는 수시로 **모일 수 있다.**	【634】 제5조(위원회 조직 및 임기) ① 좌동 ② 각 위원회 위원구성은 **4명** 이내로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개정) ③ 좌동 ④ 좌동 ⑤ 각 위원회는 **각 위원장이 소집하되 연 2회 (상, 하반기)** 정기적으로 모이며, 필요한 때는 수시로	연1회를 2회 정기적으로 함으로 운영을 원활히 함

원안(2012년 장정)	개정안	비고
	모인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635】 제6조(은급부 설치) ① 은급재단 안에 은급부를 두고 은급재단이사회 결의에 따라 모든 사무를 정리한다. ② 은급부에 부장, 서기 등의 직원을 두되 임명은 장정 및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내규에 준한다.	【635】 제6조(은급부 설치) 삭제	은급재단 사무는 사무국에 속하여 운영하도록 함
【636】 제7조(기금운영) 은급기금은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금융기관에만 예치하여 관리하고, 은급사업비는 기금과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에서 사용한다.	【636】 제7조(기금운영) 은급기금은 반드시 이사회에서 의결한 금융기관 및 수익발생이 예상되는 채권 및 부동산 등을 1회당 자산10%이하를 은급이사회에서 지정한 자문회사의 자문을 받아 은급이사회 만장일치로 운용하며 은급사업비는 적립된 기금과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에서 사용한다.(개정)	기금 운용 시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중시하여 판단하도록 한 것임
【637】 제8조(예산 및 결산) ① 매년 전반기 정기 이사회에서 결산을 승인하고, 후반기 정기 이사회에서 신년도 예산안과 함께 각종 은급금 지급에 대한 기본액수(기준금)를 정한다. ② 예산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637】 제8조(예산 및 결산) ① 좌동 ② 예,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결산서는 매년 2월 말까지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 기독교타임즈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제3장 은급금 급여	제3장 은급 금 급여	
【640】 제11조(급여의 원칙) ① 은퇴은급금 :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연회에서 정년 또는 자원 및 공상 은퇴한 경우에는 생활보조금으로서 이사회에서 해마다 정하는 기본액수(기준금)에 재직기간을 곱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감리회에서 부부 목사(담임, 부담임,	【640】 제11조(급여의 원칙) ① 은퇴은급금 : 교역자가 연회에서 정년 또는 자원 및 공상 은퇴한 경우에는 생활보조금으로 매년 25,000원을 기본액수(기준 금)로 하여 재직기간을 곱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며 재직기간 40년 이상 초과한 이도 40년으로 하여 초과분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은급 수혜 교역자 재직기간을 명시함

원안(2012년 장정)	개정안	비고
소속)로 재직한 경우, 부부 중 1인에게는 동일 재직연한 5년 이상은 30%, 10년 이상은 10%를 지급한다.	부부목사(담임, 부담임, 소속)로 재직한 경우, 부부 중 1인에게는 동일 재직연한 5년 이상은 30%, 10년 이상은 10%를 지급한다. (개정)	
② 감리연금 :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가 연회에서 정년 또는 자원 및 공상 은퇴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1.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가 65세 이전에 자원 및 공상 은퇴한 경우에는 신(新)은급제도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은급기금으로 전입하여 은급 지급 기준에 따라 매월 수령할 수 있다. 2. 1958년 7월 1일 이후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재직기간 동안 '월 납입액'을 납입하고 65세에 은퇴하여 감리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2033년부터 은급기금지원으로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은퇴 연령이 늦춰지면 은급기금 지원도 늦춰진 연수만큼 이연하여 지급한다. 아울러 해당교역자가 '월 납입액'을 기준금액 대비 감액하여 납입한 경우 감액비율에 따라 은급기금 보조금도 감액하여 지급한다. 3. 196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는 본인납입액 및 교회지원액을 통한 신(新)은급제도에 의하여 65세 이후 감리연금 수령시 은급기금지원으로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② 삭제	감리연금제도가 없어짐으로 삭제함

원안(2012년 장정)	개정안	비고
③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공상퇴회자 은급 금 : 목회 중 은퇴 전에 공상으로 인하여 연회에서 자원 퇴회한 교역자의 생활보조금으로서 원로목사와 동일한 금액으로 **이사회가 해마다 정하는 기본액수(기준금)에** 재직기간을 곱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④ 유족은급금 1.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경우는 별세한 원로목사와 재직 중 별세한 교역자 유족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 기준은 은퇴은급금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재혼한 배우자의 경우 목회 내조 만 7년을 기준으로 차등 <-20%> 지급한다. 2.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의 경우는 감리연금 약관에 준한다. ⑤ 장례보조금 1.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경우는 원로목사와 재직 중인 연회원 교역자, 별세한 교역자의 배우자와 원로목사 배우자가 별세할 시에 즉시 지급한다. 2.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의 경우는 감리연금 약관에 준한다.	② 공상은퇴 및 자원은퇴자 은급금 : 목회 중 **정년은퇴 전에 공상으로 인하여 연회에서 공상은퇴한 이나, 자원 은퇴한 교역자에게** 생활보조금으로서 원로목사와 동일한 금액으로 기본액수(기준금)에 재직기간을 곱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개정) ④ 유족은급금 : **교역자의 경우는 별세한 원로목사와 재직 중 별세한 교역자 유족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기준은 은퇴은급 금의 50%에 해당 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 폐지 ⑤ 장례보조금 : **원로목사와 그 배우자 및 재직 중인 교역자와 그 배우자가 별세할 경우 장례보조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개정)	원안 ④의 1호를 유족은급금 정의로 이동하고 다만 이하 부분을 삭제함 2호 감리연금 폐지로 인한 삭제 원안 ⑤의 1호를 장례보조금 정의로 수정 이동함 2호 감리연급제도 폐지로 삭제
【641】 제12조(재직기간) ①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연회원으로 허입하고 허입부담금을 납부한 연도부터 기산한다. ②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641】 제12조(재직기간) ①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연회원으로 허입하고 허입부담금을 납부한 연도부터 기산한다.(개정) ② 교역자의 재직기간 계산은 소속 교회가 납	

원안(2012년 장정)	개정안	비고
재직기간 계산은 소속 교회가 납부한 교회은급부담금의 **총연수(1984년 이후)를** 재직기간으로 계산하되 **나머지 달수가 6개월 이상일 경우는 1년으로 계산한다.** 다만, 재허입한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재허입한 연도부터 계산한다.	부한 교회 은급부담금의 **총 연수를** 재직기간으로 계산하되 **마지막 해에 6개월 이상 재직 한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다.** 다만, 재허입한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재허입한 연도부터 계산한다. (개정)	
③ 정년은퇴나 자원은퇴, **공상으로 인한 자원은퇴 및 퇴회자는** 모두 연회 자격·과정심사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연회에서 **정년은퇴, 자원은퇴, 공상으로 인한 자원퇴회를 하여야 한다.**	③ 정년은퇴나 자원은퇴, **공상은퇴자는** 모두 연회 자격·과정심사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연회에서 **은퇴를 하여야 한다. 다만 65세 이전에 공상으로 인하여 은퇴하는 교역자도 공상은퇴자로 한다. (개정)**	
④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여 20년 이상 연회원으로 재직하고** 65세 이상이 되어 연회에서 자원 은퇴하는 교역자는 정년 은퇴 시까지 **잔여기간 50%를 재직기간에 합산한다.**	④ 65세 이상이 되어 연회에서 자원 은퇴하는 교역자는 정년 은퇴 시까지 **잔여기간은 재직 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⑤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휴직과** 정직 기간 및 교역자 허입부담금과 소속교회가 납부할 교회은급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이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미파, 휴직,** 정직 기간 및 교역자 소속교회가 납부할 교회은급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이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⑥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미파인 경우 그 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휴직으로 간주한다. (「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제91조(연회의 직무) 제3항 제2호)	**⑥ 삭제**	
⑦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불가피한 사정(순교자 및 피랍자 포함)과 공상자 및 국외선교사 관리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송된 선교사는 전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하는 판정은 해당 연회 자격심사위원회 결의와 은급재단이사회의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⑥** 교역자가 불가피한 사정(순교자 및 피랍자 포함)과 공상자 및 국외선교사 관리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송된 선교사는 전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하는 판정은 해당 연회 자격심사위원회 결의와 은급재단이사회의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원안 ⑦⑧⑨⑩⑪⑫⑬⑭⑮ → ⑥⑦⑧⑨⑩⑪⑫⑬⑭로 변경

원안(2012년 장정)	개정안	비고
받아야 한다. ⑧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 중 순교자 및 피랍 교역자는 은퇴 전이라 할지라도 재직기간은 70세 정년은퇴시까지로 목회연한을 계산하여 최대한 예우토록 한다. ⑨ 공상이라 함은 교역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해와 과로로 인한 질환으로 교역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말하며 소속 연회의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자원은퇴 및 퇴회한 때로부터 은급 혜택을 받는다. ⑩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휴직기간과 국외거주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⑪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 중 외국교회로 이명 해 간 회원이 다시 본 교회로 이명 해 올 경우 국외 거주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명 해 온 후(허입, 재허입 포함) 만 5년 내에 은퇴할 경우 그 기간은 은급금의 50%를 지급한다. ⑫ 1983년 이전의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합산한다. 1. 정회원과 준회원의 재직기간은 연회 준회원 또는 정회원으로 허입한 연도부터 계산한다. 2. 협동회원의 재직기간은 연회에서 본처목사로 안수를 받은 연도부터 계산한다. 다만, 협동회원 전도사인 경우는 1975년부터 계산한다.	⑦ 교역자 중 순교자 및 피랍 교역자는 은퇴 전이라 할지라도 재직기간은 70세 정년은퇴 시까지로 목회연한을 계산하여 최대한 예우토록 한다.(개정) ⑧ 공상이라 함은 교역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해와 과로로 인한 질환으로 교역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말하며 소속 연회의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공상은퇴 한 때로부터 은급 혜택을 받는다.(개정) ⑨ 교역자의 휴직기간과 국외거주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지 않는다.(개정) ⑩ 교역자 중 외국교회로 이명 해 간 회원이 다시 본 교회로 이명 해 올 경우 국외 거주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명 해 온 후(허입, 재허입 포함) 만 5년 내에 은퇴할 경우 그 기간은 은급 금에서 제외한다.(개정) ⑪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산정한다.(개정) 1. 좌동 2. 좌동	

원안(2012년 장정)	개정안	비고
3. 재허입교역자는 재허입부터 계산하며 그 이전의 목회연한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좌동	
⑬ 허입부담금의 납부가 지연된 교역자는 지연된 기간만큼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⑫ 좌동	
⑭ 은퇴 후에도 교회를 사임치 않고 계속 목회를 하든지, 감리회 및 교회질서를 어지럽히든지, 또는 교회 재산의 손실을 입히거나, 교회발전에 저해가 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은급재단 목회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은급재단이사회가 의결하여 해당 연회 감독에게 통보하고 사안에 따라 은급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중단한다.	⑬ 좌동	
⑮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 중 교회나 기관에 파송 받은 회원이 목회에 전무하지 않고 이중 직업을 갖거나 사실상 목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급재단 목회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은급재단이사회가 의결하여 해당 연회 감독에게 통보하고 은급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은급금 지급기준 연한을 삭감할 수 있다.	⑭ 교역자 중 교회나 기관에 파송 받은 회원이 목회에 전무하지 않고 이중 직업을 갖거나 사실상 목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급재단 목회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은급재단이사회가 의결하여 해당 연회 감독에게 통보하고 은급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은급 금 지급기준 연한을 삭감할 수 있다.(개정)	
【642】 제13조(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642】 제13조(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①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 범위 및 우선순위	**① 교역자의 유족 범위 및 우선순위**	
1. 고인의 배우자. 다만, 은퇴 후 재혼한 배우자는 제외	1. 좌동	
2. 18세 미만의 자녀	2. 좌동	
3. 60세 이상의 부모. 다만, 부양책임을 질 다른 가족이 없을 경우에 한함	3. 좌동	

원안(2012년 장정)	개정안	비고
②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한다.	**② 폐지**	
【643】 제14조(은급금의 일시불 지급) ①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한다. 1.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은퇴은급금에 재직연한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재직 중 별세한 교역자의 유가족에게는 은퇴은급금을 기준으로 하고, 별세한 원로목사의 유가족에게는 유족은급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은퇴한 교역자 및 그 유족이 국외로 이주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의 신청에 의하여 은퇴은급금 또는 유족 은급금의 20개월 해당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민한 지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②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감리연금 운용약관에 준한다.	【643】 제14조(은급금의 일시불 지급) **①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한다.** 1. 좌동 2. **삭제** **② 폐지**	643단 제14조 (은급금의 일시불 지급) 2호의 삭제는 유령 은급 금 지급 방지를 위하여 은급 금 수령 대리는 배우자와 직계 가족 가운데 동거 가족에게만 지급 한다
【644】 제15조(기본액수(기준금)) 급여액수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으로서 해마다 이사회에서 정한다. ① 은퇴은급금 :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본단위 기준금으로 해마다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공상퇴회자 은급 금 : 모든 교역자의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본단위 기준 금으로 해마다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장례보조금	【644】 제15조(은급금의 기준) **은급금 급여액수의 기준은 매년 25,000원으로 한다.**(개정) ① 은퇴은급금 : 교역자의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본단위 기준 금으로 40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② 공상은퇴자 은급 금 : 모든 교역자의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본단위 기준금으로 은퇴교역자와 같은 예우로 지급한다.(개정) ③ 장례보조금 : 교역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	

원안(2012년 장정)	개정안	비고
1.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에 대하여 지급하며 해마다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2.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에 대하여 지급하며 감리연금 약관에 준한다.	급하며 해마다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개정) 1. 이동 2. 폐지	원안 ③의 1호를 ③ 장례보조금의 정의로 이동 원안 ③의 2호는 감리연금 폐지로 삭제
	부 칙 (2013. 11. 15) 【00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00】 제2조(경과조치) 애향숙 재단 부동산 자산(1,518.000㎡=약46만평)을 감리회에 편입시킨 이는 감리회 정회원 40년간의 은급비와 동일한 은급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편입을 할 이의 선별은 총회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신설)	[645] ③ 【646】 제17조(수납방법) 준회원 허입자의 허입부담금은 당해 12월 31일까지납부해야 한다.

7.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정관

원안	개정안	비고
제 정 1980.11.13 (사회 제507-1호)	제 정 1980.11.13 (사회 제507-1호)	➲ **정관 개정에 따라 제·개정 목록 당연 신설함.**
개 정 1차 1984. 9.21 (부청 1485-1218)	개 정 1차 1984. 9.21 (부청 1485-1218)	
개 정 2차 1986. 6.26 (보사아동 507-13)	개 정 2차 1986. 6.26 (보사아동 507-13)	
개 정 3차 1986. 7. 8 (부청 86-1)	개 정 3차 1986. 7. 8 (부청 86-1)	
개 정 4차 1987.10.19 (보허 507-17)	개 정 4차 1987.10.19 (보허 507-17)	
개 정 5차 1990. 7.16 (보허 507-23)	개 정 5차 1990. 7.16 (보허 507-23)	
개 정 6차 1994. 2.22 (보허 507-33)	개 정 6차 1994. 2.22 (보허 507-33)	
개 정 7차 1995. 2.15 (서허 95-6)	개 정 7차 1995. 2.15 (서허 95-6)	
개 정 8차 1996. 4.30 (보인 507-38)	개 정 8차 1996. 4.30 (보인 507-38)	
개 정 9차 2001.11.19 (복지지원 65115-525)	개 정 9차 2001.11.19 (복지지원 65115-525)	
개 정 10차 2003. 7.15 (보인 507-44)	개 정 10차 2003. 7.15 (보인 507-44)	
개 정 11차 2003. 9.19 (사회 65140-2757)	개 정 11차 2003. 9.19 (사회 65140-2757)	
개 정 12차 2004. 8.19 (사회 10914)	개 정 12차 2004. 8.19 (사회 10914)	
개 정 13차 2005. 7.14 (사회 11868)	개 정 13차 2005. 7.14 (사회 11868)	
	개 정 14차 2006. 5. 1 (사회복지과-12038)	2005년이후 입법의회 승인사항?
	개 정 15차 2007. 7. 9 (사회과-14649)	
	2007. 7. 4 (주민생활계획과-5921)	
	개 정 16차 2009. 6.11 (주민복지과-16842)	
	개 정 17차 2009.10.26 (사회복지과-10194)	
	개 정 18차 2010. 6.21 (사회복지과-16978)	
	개 정 19차 2011. 7.28 (사회복지과-17482)	
	개 정 20차 2011. 8.18 (사회복지과-19365)	
	개 정 21차 2011.12.06 (사회복지과-28228)	
	개 정 22차 2012. 4. 2 (사회복지과-8436)	
	개 정 23차 2012.10.25 (복지지원과-8131)	
	개 정 24차 2013. 1. 2 (복지지원과-141)(신설)	

원안	개정안	비고
제 1 장 총 칙 【654】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미국 감리교 여선교회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어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함으로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654】 제1조(목적) ① 이 법인은 미국 감리교 여선교회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함으로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의 정관 및 제반 규정 사항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위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배할 경우 그 사항은 효력이 없다.**(신설)	➲ **본 법인의 감리교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개정함.**
【656】 제3조(사무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번지의 27에 둔다.	【656】 제3조(사무소) ①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길 29**에 둔다.(개정) **②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분사무소를 둔다.(신설)** **1.인천분사무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24번길 10** **2.대전분사무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333번길 29** **3.충남분사무소 : 충청남도 공주시 영명학당1길 13** **4.부산분사무소 :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229번길 2가 40** **5.광주분사무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52번길 20** **6.전남분사무소 :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주산길 45-8** **7.강원분사무소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2151번길 30**	➲ **사업기관 확대 및 감리교회와의 협력을 위한 분사무소 설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주소 변경(도로명 주소)에 의하여 개정함.**
【657】 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사업 ② 사회복지사업 및 지원 사업 1. 영유아 보육사업 2. 아동복지사업 3. 청소년복지사업 4. 여성복지사업	【657】 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좌동 ② 좌동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정관 예시에 근거한 내용 반영 및 해외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개정함.**

원안	개정안	비고
5. 노인복지사업 6. 장애인복지사업 7. 정신장애인 재활사업 8.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9. 재가복지사업 10. 지역복지사업 11. 기타 사회복지사업 ③ 기타 이 법인의 목적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	5. 좌동 6. 좌동 7. 좌동 8. 좌동 9. 좌동 10. 좌동 **11. 의료복지사업**(신설) **12. 해외 사회복지사업 및 지원사업**(신설) 13. 좌동 ③ 그 밖에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개정)	11→13
제 2 장 자산 및 회계 【659】 제6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고자 하거나 기타 처분코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제5조(자산의 구분) 제2항 제1호의 재산을 처분할 시에는 재단법인 미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유지재단의 동의를 받되 처분으로 얻어지는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 중 각 사회복지관으로 지정된 재산의 경우 해당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산 및 회계 【659】 제6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고자 하거나 기타 처분코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실행부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본재산이 현금인 경우 용도변경이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아닌 방식으로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이 보장되지 않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① 제5조 2항 1호의 재산을 처분할 시에는 재단법인 미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유지재단의 동의를 받되, 처분으로 얻어지는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 중 각 사회복지관으로 지정된 재산의 경우 해당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하여 개정함.**
【660】 제7조(경비)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660】 제7조(경비)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	

원안	개정안	비고
	다.	
제8조(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이 속하는 **법인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8조(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이 속하는 **법인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하여 개정함.**
【662】 제9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662】 제9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한다.	
【663】 제10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63】 제10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하여 개정함.**
【664】 제11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대표이사가 작성하고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664】 제11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하여 대표이사가 작성하고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개정)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하여 개정함.**
제 3 장 임 원 【666】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를 13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대표이사 포함) ② 감사 2인 ③ 제1항의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666】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 법인의 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11명으로 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에서 선출한 4명, 복지관대표 2명, 선교사대표 1명과** 사회 복지 사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을 외부추천 이사로 선임한다.(개정) ② **감사를 2인으로 한다.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한다.**(개정) **③ 삭제**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당연적용 및 상임이사 직제 폐지에 따라 개정함.**

원안	개정안	비고
【667】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667】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② 좌동	
【668】 제15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감리교인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도 또한 같다.	【668】 제15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감리교인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단, 외부추천이사의 추천과 선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다.**(개정)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출한다.**(신설) ③ 보선에 의해 취임하는 임원도 **제1항에 의해 선임한다.**(개정)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하여 개정함.** **② 제16조(대표이사의 선출방법)를 삭제하고 ②항으로 이동함**
【669】 **제16조(대표이사의 선출방법)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669】 **제16조(대표이사의 선출방법) (삭제)**	➲ **제15조 ②항으로 통합·변경함에 따라 삭제함.**
	【669】 **제16조(임원의 선임의 제한)**(신설) **① 이 법인의 이사는 상호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신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하여 개정함.**
【671】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	【671】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좌동 ② 좌동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당연 적용 및 상임이사 직제 폐지에 따라 개정함.**

원안	개정안	비고
의 결정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대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전 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3. 전 1,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③ (삭제)** **③ 좌동** 1. 좌동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개정) 3. **전 1,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개정)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개정) 5. 좌동	
	【000】 제19조(임원의 보충) 이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신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하여 신설함.
	【000】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이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신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하여 신설함.

원안	개정안	비고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000】 제21조(임원의 해임명령) 이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신설) 1.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2. 그 밖에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하여 신설함.
제 4 장 이사회 【672】 제19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에는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각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정책개발위원회 2. **재정위원회**	제 4 장 이사회 【672】 제22조(이사회의 구성) ① 좌동 ② 좌동 1. 좌동 2. **재정·수익사업관리위원회**(개정)	➲ 상위 조 신설에 따라 제22조부터 제37조까지 조 번호 변경 및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함에 따라 개정함.

원안	개정안	비고
3. **수익사업관리위원회** ③ 그 외에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발전모금위원회**(개정) ③ 좌동	
【673】 제2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⑤ **이 법인이 운영하는 각 사회복지관장 및 시설장, 기획사무국장, 수익사업체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⑥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673】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법인의 사무총장, 법인 부서의 장 및 이 법인이 운영하는 각 사업기관의 장 임면에 관한 사항**(개정) ⑥ 좌동 ⑦ 좌동	➲ **사무총장 직제를 도입함에 따라 개정함.**
【674】 제21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명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는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674】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좌동 ②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는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개정)	➲ **이사회 소집일을 조항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위해 개정함.**
【675】 제22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75】 **제25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원안이 1개의 항 밖에 없으므로 원안의 ①을 조문으로 이동

원안	개정안	비고
【676】 제23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676】 **제26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좌동 ① 임원 **위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개정) ② 좌동	
【677】 제24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모든 회의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참석 이사의 날인을 받아 기획사무국에 **비치한다.**	【677】 **제27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모든 회의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참석 이사의 날인을 받아 기획사무국에 **비치하고,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한다.**(개정)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하여 개정함.**
제 5 장 조직 및 직원 【678】 제25조(법인 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사무국을 두고 기획사무국에는 국장을 두되 그 하부조직과 분장업무는 규정으로 한다**. ② 기획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③ 기획사무국장의 임기는 5년이다.	제 5 장 조직 및 직원 【678】 **제28조**(법인 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두되 그 하부조직과 분장업무는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② **법인의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한다.**(개정) ③ **법인의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 **사무총장 직제를 도입함에 따라 신설함.**
【679】 제26조(사회복지관 조직) ① 이 법인이 운영하는 각 사회복지관에는 관장을 두어 사회복지관을 대표케 하고 통할하게 하되 그 하부조직과 분장업무는 각 사회복지관 규정으로 정한다. ② 이 법인에 속한 사회복지관은 각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③ 관장은 각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④ 관장의 임기는 5년이다.	【679】 **제29조**(사회복지관 조직)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각 사업기관의 장을 둔다.**(개정) **② 사업기관의 운영을 돕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조직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③ 관장 및 시설장은 해당 사업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임명한다.**(개정) **④ 사업기관의 장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통칭하고 사업기관의 장 임기 개정에 따라 개정함.**

원안	개정안	비고
	(개정)	
제 6 장 수익사업 【680】 제27조(수익사업의 운영) ① 이 법인은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기타 부대사업 ② 수익사업의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분기별로 **수익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수익사업 【680】 **제30조**(수익사업의 운영) ① 좌동 ② 수익사업의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분기별로 **재정·수익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개정)	**➲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함.**
【681】 제28조(수익사업체 조직) ①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빌딩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사무소에는 소장을 두되 그 하부 조직과 분장업무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관리사무소 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③ 관리사무소 소장의 임기는 5년이다.	【681】 **제31조**(수익사업체 조직) ① 좌동 ② **관리사무소장의 임기 및 선임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③ (삭제)**	**➲ 관리사무소장 임기 변경에 따라 개정함.**
제 7 장 정관 변경 및 해산 【682】 제29조(정관 변경) 이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정관 변경 및 해산 【682】 **제32조**(정관변경) 이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의 의결을 거쳐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입법의회가 열리지 못할 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실행부 위원회의 인준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683】 제30조(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83】 **제33조**(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전원의 찬성과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실행부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684】 제3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684】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원안	개정안	비고
그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좌 동	
제 8 장 공고방법 【685】 제32조(공고의 방법)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정기간행물 또는 게시판에 게재한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8 장 공고방법 【685】 제35조(공고의 방법) 좌 동	
제 9 장 보 칙 【686】 제33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686】 제36조(운영규정) 좌동	
【687】 제34조(법률적용)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을 준용한다.	【687】 제37조(법률적용)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개정)	
부 칙 (2001. 10. 31) 【68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68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31) 【68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68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6.21)** **【0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3.23)** **【0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0.16)** **【0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 정관 개정에 따라 부칙 목록 당연 개정함.** 2005년이후 입법의회 승인사항인지?

원안	개정안	비고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5.28) 【0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6.29) 【0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8.16) 【0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0.6) 【0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4.2) 【0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0.25) 【0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2) 【0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8.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정관

원안	개정안	비고
제1장 총칙 **[690]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기독교정신과 감리회 이념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업과 국외구호사업, **사회**봉사사업 및 장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인류복지와 지역과 개인의 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690]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기독교정신과 감리회 이념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업과 국외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및 장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인류복지와 지역과 개인의 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692]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64-8 감리회관에 둔다. ② 이 법인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주소지에 분사무소(지부)를 둔다.	**[692]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64-8 감리회관에 둔다. ② 이 법인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도, 시군구별 분사무소를 둔다.**(개정) **13. 대구·경북분사무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71-2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신설) **14. 경남분사무소 : 경남 함양군 안의면 대대리 779번지(함양장애인보호작업장)** (신설)	
[693] 제4조(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복지사업 2. 아동복지사업 3. 청소년복지사업 4. **부녀**복지사업 5. 장애인복지사업 6. **국내외 구호사업** 7. **사회**봉사사업 8. 장학사업 9. 기타 사회복지사업 10. 수익사업 11. 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 12. **농어촌**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13. 방문요양서비스시설의 설치 운영	**[693] 제4조(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복지사업 2. 아동복지사업 3. 청소년복지사업 4. **여성**복지사업 (개정) 5. 장애인복지사업 6. **국내 구호사업** (개정) 7. **자원**봉사사업 (개정) 8. 장학사업 9. 기타 사회복지사업 10. 수익사업 11. 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 12.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13. 방문요양서비스시설의 설치 운영	- '부녀'라는 용어는 '성폭력피해자/가정폭력피해자/모자보호 자립지원/미혼모 보호 등'에 이르는 다양한 '여성'관련 사업에 적용되므로, '여성복지'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 국내외구호사업은 국내 및 국외구호사업의 규모와 전문적 특수성이 차별화되면서 별도의 사업 영역으로 구분함 - 사회복지기관의 지역성과 지역 안전망 구축 네트워크의 중심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이 중요

원안	개정안	비고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사업 15. 기부식품 제공사업 16.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사업 15. 기부식품 제공사업 16.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17. 해외구호사업** (신설) **18. 지역사회복지사업** (신설) **19. 협동조합사업등 사회경제지원사업 (신설)** **2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운영** (신설) **21. 이주외국인과 그 가족에 관한 복지사업** (신설) **22.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저소득층 자활사업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업)** (신설) **23. 노숙인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 (신설) **24. 재산출연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신설) ② 좌동	한 바, 지역사회복지 영역을 신설 -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업' 등 사회경제지원사업 신설
제3장 임원 **[704]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대표이사) 1인 ② **이사 23인** ③ 감사 2인	**제3장 임원** **[704]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좌동 ② 이사 **10인 (사업기관 대표 1명, 외부추천 이사 3명 포함)** (개정) ③ 좌동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제②항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7조제2항 각 호(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원안	개정안	비고
[705] 제16조(임원의 선임 방법) 모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며 이사는 다음에 의하여 선임한다. ① 기독교대한감리회 **각 연회에서 목사 1인, 평신도 1인, 다만 선교연회는 목사나 평신도 중 1인 (21인)** ②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1인 ③ 복지시설의 대표 2인 ④ 재단사무국 **총무는** 직무상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705] 제16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방법)** 모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며 이사는 다음에 의하여 선임한다. ①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한 감리회 대표 6인.** (개정) ② **이사장 1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위원장이 직권상 이사장이 된다.**(개정) ③ **법인 소속 복지시설협의회** 대표 1인 (개정) ④ **외부추천이사 3인** (신설) ⑤ **사회평신도국 국장은** 직무상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보고, 질의에 대한 설명)**만 보유한다. (개정) **⑥ 이사장은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의거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신설) **⑦ 이사장은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신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경제적 손해 및 명예 훼손을 끼칠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해임 추가** ④이 신설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제②항 의거 외부추천이사 3인을 포함하여야 함. 원안 ④이 ⑤ ⑤ 법인 설립 당시 재단사무국 산하였으나 현재는 사회평신도국 산하이며 장정개정시 입법의회에서 본부 조직과 같은 맥락으로 처리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의거 임원의 해임 규정을 추가함. (본 정관 제23조 의결사항 ④항-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 관련이 있음.)
[712] 제23조(의결사항) 이 법인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12] 제23조(의결사항)** 이 법인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좌동	

원안	개정안	비고
②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좌동	
③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좌동	
④ 임원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④ 좌동	
⑤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기채, 교환에 관한 사항	⑤ 좌동	
⑥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⑥ 좌동	
⑦ 법인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⑦ 좌동	
⑧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 임면에 관한 사항	⑧ 좌동	
⑨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⑨ 좌동	
	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시설 및 수탁기관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⑩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⑪ 좌동	원안 ⑩ → ⑪로
⑪ 이 법인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⑫ 좌동	원안 ⑪ → ⑫로
[713] 제24조(이사회 소집)	**[713] 제24조(이사회 소집)**	- 소속 사회복지시설의 증가에 따른 안건 처리를 위하여 정기 이사회 소집 횟수를 증회함이 타당함.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① 좌동	
② 정기 이사회는 **연2회, 상반기는 3월 이내에, 하반기는 9월 이내에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로 연4회 소집한다.** (개정)	
③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좌동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좌동	
⑤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좌동	
[716] 제27조(이사회 회의록)	**[716] 제27조(이사회 회의록)**	의사록 → 회의록으로 변경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임원**	

원안	개정안	비고
서기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전원이 날인하되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하여야 한다.**(개정)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인은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의한다.**(신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②,④,⑤항[본조신설 2012.1.26]에 의거하여 변경 및 신설함
[720] 제31조(각 시설의 조직) ① 이 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에 장을 두어 각 시설을 대표케하고 통할하되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시설의 장은 **각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법인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720] 제31조(각 시설의 조직)** ① 좌동 ② 시설의 장은 **제33조 1항에 규정한 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개정)**	- 운영위원회에서는 시설의 장을 선임할 수 없음 (사회복지사업법상)
[722] 제33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이 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조직, 기능,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722] 제33조(관리위원회 설치)** ① 이 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의 **운영주체는 법인의 위임을 받아 인사, 재정, 시설등을 효율적으로 심의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를 둔다.(개정)** ② **관리위원회의** 조직, 기능,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개정)	운영위원회→관리위원회로 변경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에 의하여 각 시설 운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운영주체교회의 기획위원회 및 별도 운영조직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명칭의 변경이 불가피함.
[724] 제35조(법인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면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24] 제35조(법인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면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민법에 의하면 교단 총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으나, 감리회의 특성상 교회법에 의거하여 교단 총회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예) 태화복지재단 사례, 연세대학교 사례의 방지차원 및 교회재산보호차원

원안	개정안	비고
제 9장 보칙 **[727] 제3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비송사건 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 9장 보칙** **[727] 제3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비송사건 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개정)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제1항의 4호 참조.

9. 사회복지재단 기독교대한감리회 원로원 운영관리 규정

원안	개정안	비고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750】 제2조(관리권) 원로원의 운영관리는 복지재단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원로원장이 관장한다.	【750】 제2조(관리권) 원로원의 운영관리는 **사회**복지재단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사회 평신도국 국장**이 관장한다.(개정)	원로장이란 직책이 없음
제 2 장 입주 및 퇴원	**제 2 장 입주 및 퇴원**	
【752】 제4조(입주자격) 원로원에 입주할 이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원 교역자로 10년 이상 목회하고 교역자은급시행규정에 의하여 은급금을 받는 원로목사 부부 ②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이로서 다음 순위에 따른다. 1. 무의무탁한 경우 2. 자녀들이 있으나 자녀들도 주택이 없는 경우 3. 자녀들 중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동거하기 어려운 경우	【752】 제4조(입주자격) 원로원에 입주할 이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원 교역자로 **20년** 이상 목회하고 교역자은급시행규정에 의하여 은급금을 받는 원로목사 부부(개정) ② 좌동 1. 무의탁**자**(개정)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신설) 3.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3급이상)**(신설) **4. 자녀들이 있으나 자녀들도 주택이 없는 경우**(개정) 5. 좌동	10년->20년 무자녀 우선 2호, 3호 추가 (구체화) 2호에서 4호로 이동
【754】 제6조(입주순위) ① 입주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교역연한이 오래된 이 (30점) 교역연한 계산에 있어서 휴직, 미파, 정직기간은 교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54】 제6조(입주**평가방법**) ① 입주**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은퇴 후**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이(20점)(개정) 2. **실제** 교역연한이 오래된 이 (20점) (휴직, 미파, 정직기간 **제외**)(개정)	

원안	개정안	비고
2.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이 (25점) 그 기간은 은퇴 후를 기준한다. 3. 본인과 자녀 외에 기타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도 주택이 없는 이 (25점) 4. 주택을 소유할 경제력이 없는 이 (20점) 5. 같은 조건인 경우에는 연령이 많은 자를 우선한다. ② 입주순위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복지재단에서** 별도로 정한다.	3.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3급이상)이거나 자녀가 없는 이** (20점)(개정) 4. 자녀**가 무주택자인** 경우(20점)(개정) 5. **입주자의 모든 통장 잔고증명액 및 은급 및 연금수령액이 제일 적은 자**(20점)(개정) **6. 같은 조건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3급이상, 나이가 많은 이를 우선한다.** ② 입주순위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재단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755】 제7조(입주절차) ① 원로원에 입주하고자 하는 이는 해당 연회 감독의 추천을 받아 원로원에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결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③ 입주자로 결정된 이는 소정의 계약서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입주기간 만료시 재입주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입주자는 원로원 입주자 수칙을 준수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다.	【755】 제7조(입주절차) ① 원로원에 입주하고자 하는 이는 **사회 평신도국**에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입주자는 입주 보증금을 법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보증금은 사회복지재단이사회에서 2년마다 금액을 정한다.(신설)**	해당연회 감독추천은 입주평가 근거가 아님 입주보증금 신설, 퇴원시 원금 반환함.
【756】 제8조(입주자 수칙) ① 입주자는 입주자로서의 품위와 원로원의 명예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는 어떤 경우라도 자녀나 친지와 함께 동거할 수 없다.	【756】 제8조(입주자 수칙) ① 좌동 1. 좌동	

원안	개정안	비고
2. 입주자는 부부 중 1인이 사망할 경우 **6개월** 내에 독신자 주택으로 이사하여야 한다. 3. 입주자는 거주하는 주택에 부과되는 모든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입주자는 주거 시설에 대하여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사용 도중 본인의 과실로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지고 보수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입주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의로 건물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할 수 없다. ② 입주자가 전 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공과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과실로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 또는 대체를 하지 아니하고 퇴원할 경우에는 **보증인이 변상해야 한다.**	2. 입주자는 부부 중 1인이 사망할 경우 **3개월** 내에 독신자 주택으로 이사하여야 한다. (개정) 3. 좌동 4. 좌동 5. 좌동 ② 입주자가 전 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공과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과실로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 또는 대체를 하지 아니하고 퇴원할 경우에는 **입주보증금에서 우선 변제하고 지급한다.**(개정)	6개월->3개월 새입주자 신속제공 퇴원시 입주보증금에서 변제처리
【757】 제9조(퇴원) ① 입주자가 전 조의 각 항을 위반하거나 제5조(입주기간)에 의한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퇴원하여야 한다.	【757】 제9조(퇴원) ① 좌동 ② **퇴원시에는 입주보증금 원금을 반환한다.(신설)**	수익금 이자는 관리비로 사용
제 3 장 운영 및 관리 【758】 제10조(관리비) 원로원의 건물 유지에 따른 수리비나 공동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복지재단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 및 관리** 【758】 제10조(관리비) 원로원의 건물 유지에 따른 수리비나 공동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회복지재단 예산이나, 기부금 혹은 입주보증금의 이자 수익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예산 외 외부지원이나 입주보증금의 이자로 사용 가능
【761】 제13조(예배 및 헌금집행) 원내의 공식예배는 복지재	【761】 제13조(예배 및 헌금집행) 원내의 공식예배는 복지	친목회에서 직접 사용 가능토록 개정

원안	개정안	비고
단의 승인을 받아 친목회가 주관한다. 예배에서 모아진 헌금은 선교, 봉사에 사용할 수 있으며 **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아 **사무국이** 집행한다.	재단의 승인을 받아 친목회가 주관한다. 예배에서 모아진 헌금은 선교, 봉사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아 **사회 평신도국에서** 집행한다.(개정)	
【762】 제14조(위문)입주자에 대한 위문은 **사무국**이 관리한다.	**【762】 제14조(위문)**입주자에 대한 위문은 **사회평신도국**이 관리한다.	
	부 칙 (2013. 11. 15) **【766】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 전에 입주한 이는 입주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주 보증금의 이자수익은 원로원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하며, 사회평신도국에서 관리한다.(신설)** **【767】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입법의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신설)	

1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정관

원안	개정안	비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정관 [804]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인 이내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정관** [804]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 14명(이사장 포함)** ② 좌동 **② 삭제**	서울시교육청 지적에 따라 “이내” 삭제 및 이사장 포함을 삽입 **제1항을 조 규정으로 이동하고 각 호를 항으로 변경** **제2항은 위 제1항 포함하고 삭제함**

제6편 교역자 은급법

원안	개정안	비고
제 6 편 교역자은급법	제 6 편 교역자 은급법	
【85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5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신(新)은급제도'라 함은 기존의 은급제도가 저금리, 고령화로 인하여 기금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은퇴은급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은퇴은급금 제도를 적용하고,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에 대해서는 감리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교회지원액'과 '본인납입액'을 납부한 후 1958년 7월 1일 이후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는 기존의 은퇴은급금에 해당하는 감리연금 및 은퇴시기에 따라 매월 20만원의 은급기금지원을 추가로 받는 것과 196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에 대해서는 감리연금 및 매월 20만원의** 은급기금지원을 지급받는 것을 요지로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① **은급제도라 함은 '교회 은급부담금', '준회원 허입부담금'과 '교역자 은급부담금' 을 납부한 후 은퇴 이후에 은급 금을 지급받는 것을 요지로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개정)	(균형구조정리)
② '교역자'라 함은 연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협동회원을 말한다.	② 좌동	
③ '은퇴'라 함은 연회원 교역자로서 70세**(3월말 기준)**가 된 후에 해당 연회에서 은퇴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5세 이상이 된 이의 자원은퇴, 30년 이상 재직한 이의 자원은퇴, 임기를 마친 감독회장의 은퇴, 20년 이상 재직한 이의 공상은퇴 등을 포함한다.	③ 좌동	4월 연회후 기준
④ '유족'이라 함은 교역자의 별세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부모 및 직계자녀(미성년자)를 말한다.	④ 좌동	

원안	개정안	비고
⑤ '허입부담금'이라 함은 허입예정자가 연회 허입시 해당연도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⑤ 좌동	
⑥ '교역자은급부담금'이라 함은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감리회 소속교역자가 2004년부터 3년마다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⑥ '교역자은급부담금'이라 함은 모든 감리회 소속교역자가 2014년부터 매년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납입하는 것을 말하며, 최저금액은 60만원으로 한다.(개정)	**허입시 생활비 최저60만원의 보증을 받는 것을 기준한 것임.**
⑦ '교회은급부담금'이라 함은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에서 전년도 경상수입 결산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역자은급재단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⑦ '교회 은급부담금'이라 함은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에서 전년도 경상수입 결산 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역자 은급재단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하며, 최저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개정)	**부담금 0.5% 상향조정** **교회 부담금 최저한도를 결산의 10% 책정 시 미자립교회 기준으로 제시함.**
⑧ '본인납입액'이라 함은 1958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교역자가 '감리연금'에 가입한 후 납부하는 월 납입액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기존의 '교역자은급부담금'은 폐지된다.	⑧ 폐지	
⑨ '교회지원액'이라 함은 1958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교역자가 감리연금에 가입한 후 납부하는 월 납입액 중 그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가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기존의 '퇴직적립금'은 폐지된다.	⑨ 폐지	
⑩ '월 납입액'이라 함은 신(新)은급제도에 따라 교역자 및 교회가 매월 각 납부하여야 하는 교회지원액과 본인납입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그 기준금액은 20만원으로 하되, 세부내용은 교역자은급 시행규정에서 정한다.	⑩ 폐지	
⑪ '은급기금보조금'이라 함은 1958년 7월 1일 이후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65세 이후에 은퇴하여 감리연금 수령시 은퇴은급금 기준액과 차	⑪ 폐지	

원안	개정안	비고
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존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853】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을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개체교회와 선교기관에서 시무하는 연회원 교역자에게 적용한다. ② 전임으로 목회하지 않는 자를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두게 한 교회의 담임자는 1회 적발 시마다 은퇴 후 은급 금을 10%씩 감하여 지급하고 해당교회 소속 교역자와 평신도는 모든 의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853】 제3조(적용범위) ① 좌동 ② 좌동. **③ 총회 또는 연회 교역자 특별조사처리위원회에서 조사한 불성실 교역자에게는 그 기간 동안의 은급 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④ 교회 은급부담금을 교회 실제 결산 액 대로 성실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다음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다.(지방회, 연회, 총회)**(신설)	
【854】 제4조(기금의 조성의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3조(적용범위) 제1항의 교역자와 개체교회는 아래의 금원을 은급재단 또는 은급재단이 지정하는 곳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허입예정자는 연회 허입 시에 당해 연도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허입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자 생활비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는 2004년부터 3년마다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교역자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자 생활비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854】 제4조(기금의 조성과 조성의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3조(적용범위) 제1항의 교역자와 개체교회는 아래의 금원을 은급재단 또는 은급재단이 지정하는 곳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좌동 **② 삭제**	

원안	개정안	비고
③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는 연회원 허입시에 매월 '본인납입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는 매월 '교회지원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교회지원액'은 위 교역자가 감리연금 가입시 매월 납부하기로 확정한 '월 납입액'의 2분의 1 이상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신(新)은급제도 시행에 있어 미자립교회 등 재정이 어려운 교역자 및 소속 개체교회는 감리연금 납입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교역자은급 시행규정에서 정한다.	⑤ 삭제	
⑥ 신(新)은급제도 시행 이후 서리교역자는 허입예정자와 동일하게 신(新)은급제도를 적용한다.	⑥ 삭제	
⑦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개체교회는 매년 은급부담금을 은급재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좌동	원안의 ⑦ → ②로
	③ 본부 부담금 중 매년 20%를 은급기금으로 은급재단에 지급한다.(신설)	③, ④ 신설
	④ 은급재단에 기금 또는 자산을 증여할 수 있으며 증여자는 목적을 명시하여 은급규정의 제도 안에서 운용한다. 다만 증여자의 예우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신설)	
제 2 장 은급재단이사회	**제 2 장 은급재단이사회**	
【855】 제5조(은급재단이사회의 설치) ①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은급사업의 효율적인 운	【855】 제5조(은급재단이사회의 설치) 이 법에 규정하는 은급사업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감리회 교역	원안 ①을 조의 정의로 이동

원안	개정안	비고
용과 관리를 위하여 감리회 교역자 은급재단이사회를 둔다.	**자 은급재단이사회를 둔다.** (개정)	
【856】 제6조(은급재단이사회의 조직) 은급재단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직권상 이사 : 감독회장 ② 선출직 이사 :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각 1명	【856】 제6조(은급재단이사회의 조직) 은급재단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삭제 **① 선출직 이사 : 각 연회 및 호남선교연회에서 교역자 또는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 대표 1명. 다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4명(교역자 2명, 평신도 2명)은 교체하지 않으며 그 순번은 감독회의에서 정한다.**(개정) **② 전문직 이사 : 전문가로서 감독회의에서 선출한 감리회 집사이상 자 3명** (신설) **③ 지명 이사 : 감독회의에서 선출하여 지명한 교역자 1명**(신설)	항 이동
【857】 제7조(은급재단이사회의 직무) 은급재단이사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은급사업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② 신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및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승인 ③ 교역자은급법안의 개정초안의 심의 ④ 교역자은급법 시행에 관한 시행규정 또는 규칙제정 초안 및 개정초안 심의 ⑤ 임원선출 ⑥ 기금운용 방법의 채택	【857】 제7조(은급재단이사회의 직무) 은급재단이사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교역자은급법안의 개정초안의 심의 **및 개정안 건의**(개정) ④ 교역자은급법 시행에 관한 시행규정 또는 규칙제정 초안 및 개정초안 심의 **및 개정안 건의**(개정) ⑤ 좌동 ⑥ 기금운용 방법의 채택 및 **자문단체의 협력 제안 심의** (개정)	

원안	개정안	비고
⑦ 직원의 임면에 관한 인준 ⑧ 그 밖에 교역자은급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⑦ **은급이사장의 추천에 의한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개정) ⑧ 좌동	
【859】 제9조(이사의 임기) 은급재단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직권상 이사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선출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859】 제9조(이사의 임기) 은급재단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① 폐지** **② 폐지**	
【860】 제10조(이사회 임원) 은급재단이사회의 임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이사장 1인 : **감독회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은** 은급재단이사회를 대표하고 은급재단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서기 1인 : 서기는 최초로 모인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이사회의 회의록과 모든 기록을 작성 보관한다.	【860】 제10조(이사회 임원) 은급재단이사회의 임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이사장 1인 : **이사장은** 은급재단이사회를 대표하고 은급재단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② 좌동	
제3장 은급기금 운용 【862】 제12조(기금 운용 방법) 은급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항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① 기금은 반드시 이사회에서 의결한 금융기관에 예금한다. ② 기금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금은 전액 은퇴은급금 또는 유족은급금으로만 사용한다.	**제3장 은급기금 운용** 【862】 제12조(기금 운용 방법) 은급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항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① 기금은 반드시 이사회에서 의결한 금융기관과 **수익발생이 예상되는 채권 및 부동산 등을 1회당 10% 이하 내에서 재단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자문회사의 자문을 받아 이사회 만장일치로 운용한다. 다만 기금을 기증한 분의 목적 기금일 경우는 목적대로 운영한다.** (개정) ② 좌동	수익발생을 위하여 필요한 운용을 하도록 한다.
【863】 제13조(은급부의 설치) 교역자은급사업의 관리와	【863】 제13조(은급재단의 설치) 교역자은급사업의 관리	

원안	개정안	비고
발전을 위해 사무국 안에 은급부를 둔다. ① 은급부에 부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② 부장은 사무국 총무 추천으로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③ **은급부 부장 및 직원은 취임과 동시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와 발전을 위해 은급재단 안에 직원을 둔다. ① **직원은 공개 채용한다.**(개정) ② **은급재단 직원은 취임과 동시에 재정보증보험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③ 삭제**	
제4장 은급금의 급여	**제4장 은급금의 급여**	
【866】 제16조(재직기간의 계산방법) 교역자의 재직기간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의한다. ①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재직기간의 계산은 연회 회원으로 허입하고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납부한 해부터 기산하며 회원이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회 미납마다 은퇴 후 은급금을 10%씩 감하여 지급한다. 협동회원은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은 해로부터 기산하며 협동회원 전도사의 경우에는 1975년부터 기산한다. 재허입 회원은 재허입부터 기산하며 이전의 재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휴직하거나 정직한 기간 및 교회은급부담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여 20년 이상 연회 회원으로 재직하고 소속 연회에서 65세(3월 말일 기준) 이상이 되어 자원은퇴한 교역자는 정년은퇴까지의 잔여기간 50%를 재직기간에 합산한다.** ④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여 30년 이상** 연회원으로 재직하고 연회에서 자원은퇴하는 교역자는	【866】 제16조(재직기간의 계산방법) 교역자의 재직기간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의한다. ① **교역자의** 재직기간의 계산은 연회 회원으로 허입하고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납부한 해부터 기산하며 회원이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회 미납마다 은퇴 후 은급 금을 10%씩 감하여 지급한다. 협동회원은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은 해로부터 기산하며 협동회원 전도사의 경우에는 1975년부터 기산한다. 재허입 회원은 재허입부터 기산하며 이전의 재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② 교역자가** 미파 또는 휴직하거나 정직한 기간 및 교회은급부담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③ 자원은퇴한 교역자의 정년은퇴까지의 잔여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 **30년 이상** 연회원으로 재직하고 연회에서 자원은퇴하는 교역자는 재직기간만큼 은급금을 받되 **은퇴하**	

원안	개정안	비고
재직기간만큼 은급금 혜택을 받되 65세부터 지급한다. ⑤ 20년 이상 재직한 이는 연회에서 공상은퇴할 수 있다. 단, **196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는 감리연금 약관에 준한다.** ⑥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 중 감리회에서 부부 목사(담임, 부담임, 소속)로 재직하고 은퇴하여 부부가 동시에 은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부 중 1인에게 동일한 재직연한 5년 이상은 30%, 10년 이상은 10%를 지급한다. ⑦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 중 은퇴은급금과 유족은급 금을 동시에 지급받게 될 경우는 수혜자의 선택에 따라 한 가지만 지급한다. ⑧ **감독회장으로 임기를 마치고 은퇴하였을 경우 정년은퇴까지의 잔여기간 50%를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은급 금을 지급한다.**	**는 해부터 지급한다.** (개정) **⑤ 20년 이상 재직하고 연회에서 공상은퇴한 교역자에게는 재직기간만큼 은급금을 공상은퇴 후부터 지급한다.**(개정) **⑥ 교역자** 중 감리회에서 부부 목사(담임, 부담임, 소속)로 재직하고 은퇴하여 부부가 동시에 은급 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부 중 1인에게 동일한 재직연한 5년 이상은 30%, 10년 이상은 10%를 지급한다.(개정) **⑦ 교역자** 중 은퇴은급금과 유족은급 금을 동시에 지급받게 될 경우는 수혜자의 선택에 따라 한 가지만 지급한다.(개정) **⑧ 삭제**	
【867】 제17조(유족의 범위 및 유족은급금 수령 우선순위) 유족은급금을 수령하는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을 수령하는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다만, 은퇴 후 재혼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2. 18세 미만의 자녀 3. 60세 이상의 부모(다만, 부양할 책임이 있는 친족이 없을 경우에 한 한다.) ②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한다.**	【867】 제17조(유족의 범위 및 유족은급금 수령 우선순위) 유족 은급 금을 수령하는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삭제**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② 삭제**	호를 항으로 조정

원안	개정안	비고
【868】 제18조(유족은급금의 일시지급) 유족은급금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한다.	【868】 제18조(유족은급금의 일시지급) 유족은급금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삭제**	
1.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은퇴은급금에 재직연한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① 좌동	호를 항으로 조정
2. 은퇴한 교역자 및 그 유족이 국외로 이주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의 신청에 의하여 은퇴은급금 또는 유족은급금의 20개월 해당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좌동	
②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감리연금 운용약관에 준한다.	**② 삭제**	
제5장 수납과 지급방법	**제5장 수납과 지급방법**	
【869】 제19조(납입방법) 위 제4조(기금의 조성의무)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허입부담금', '교역자은급부담금', '본인납입액', '교회지원액' 및 '교회은급부담금'은** 다음 방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한다.	【869】 제19조(납입방법) 위 제4조(기금의 조성의무)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준회원 허입부담금', '교역자은급부담금' 및 '교회은급부담금'은** 다음 방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한다.	
① 허입예정자는 연회 허입 시 은급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허입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연회준회원 허입예정자는 연회 준회원 허입시 은급재단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②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는 2004년부터 매 3년마다 1회 납부하는 교역자은급부담금을 2년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교역자는 매년 1회 납부하는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매년 년 말까지 은급재단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③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는 본인납입액을 교역자가 연회에 입회한 달의 말일 이내로 은급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	**③ 삭제**	

원안	개정안	비고
며 그 이후부터 본인납입액을 매월 말일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은급부담금은 각 개체교회에서 1년에 1회, 일시금으로 납부하거나 월액으로 분할하여 은급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가 교역 중인 감리회에 소속된 모든 개체교회는 교회지원액을 매월 말일 이내에 은급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도 시행 이후 서리교역자는 허입예정자와 동일하게 상기 제1~5항을 적용한다.	③ 교회 은급부담금은 각 개체교회에서 매년 일시금으로 납부하거나 월액으로 분할하여 은급재단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⑤ 삭제 ⑥ 삭제	원안의 ④항을 ③항으로 조정
【871】 제21조(지급) ① 은퇴은급금, 감리연금 및 유족은급금의 지급은 본인 또는 유족을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수령자를 확정한 후 수령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령자가 국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수령 대리인을 정할 수 있다. ② 은급금의 지급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정에서 정한다.	【871】 제21조(지급) ① 은퇴 은급 금 및 유족 은급 금의 지급은 본인 또는 유족을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수령자를 확정한 후 수령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다. (개정) ② 좌동	감리연금 문구 삭제하며 대리 수령 시 기간 안에 문제가 발생 시 지출된 기금 회수 불가능하므로 다만 이하 수령 대리인 삭제
	부 칙 (2013. . .) 【8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85】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률의 시행 후 【856】 제6조 제1항의 선출직 이사 중 2분의 1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이후로는 2년 임기로 하여 이사회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다만, 2014	_

원안	개정안	비고
	년 10월 총회까지 기존 이사의 임기는 유지된다. ② 2012년 교리와 장정 [852] 제2조 제6항에 해당지 않아 2004년부터 매 3년마다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납부해야하는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교역자는 은급재단에서 산출한 교역자은급부담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2018년까지 은급재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2012년 교리와 장정 [852]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감리연금에 가입한 이는 감리연금의 납입과 수령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에 맡긴다. ④ 2012년 교리와 장정 [852]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감리연금에 가입한 이에 대한 은급지원금은 은급재단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한다.	2012년 교리와 장정 [852]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감리연금에 가입한 이에 대하여는 은급재단 이사회에 위임하여 결정한다.

제7편 재판법

원안	개정안	비고
제1장 일반 재판법 제1절 총 칙	제1장 일반 재판법 제1절 총 칙	
【886】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886】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였을 때**	①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는 행위**(개정)	
② 계교로써 교인, 교직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	② 계교로써 교인, 교직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는 행위**(개정)	
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교회재판**의 최종심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는 행위**.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개정)	
④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	④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는 행위**(개정)	
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	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는 행위**(개정)	
⑥ 익명이나 실명으로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⑥ 익명이나 실명으로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개정)	
⑦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⑦ 좌동	
⑧ 음주, 흡연, 마약법 위반과 도박 **등을 하였을 때**	⑧ 음주, 흡연, 마약법 위반과 도박 **등의 행위**(개정)	
⑨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⑨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개정)	
⑩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⑩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개정)	
⑪ 타인을 **상해하였을 때**	⑪ 타인을 **상해한 행위**(개정)	

원안	개정안	비고
⑫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하였을 때** ⑬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관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⑭ 그 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 ⑮ **감독,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⑯ **감리회가 소집하는** 지방회, 연회, 총회 소집이나 진행을 방해하거나, 선거의 투표나 개표를 방해하는 행위	⑫ **감리회의 각급 기관이나 교회에 제출하는 문서나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개정) ⑬ 부적절한 결혼 또는 성관계(동성간의 관계 포함)를 **하는 행위**(개정) ⑭ 좌동 ⑮ 감독,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의 최종심을** 받기 전에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개정) ⑯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 소집이나 진행을 방해하거나, 선거의 투표나 개표를 방해하는 행위(개정)	[889] 근신, 견책, 정직, 감리회 삽입 최종심 판결을 받기 전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지 목하도록 하기위함
[889】 제6조(벌칙의 효력) 벌칙의 효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견책은 재판위원회가 피고소인, 피고발인을 적절하게 훈계하고 경고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근신은 **교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성례에 참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③ 정직은 **그 직**이 해당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④ 면직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⑤ 출교는 **교회**에서 추방함을 말한다.	[889】 제6조(벌칙의 효력) 벌칙의 효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좌동 ② 근신은 **감리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성례에 참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개정) ③ 정직은 **감리회의 직임**이 해당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감리회의 직임**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개정) ④ 면직은 **감리회의 직임**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감리회의 직임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개정) ⑤ 출교는 **감리회**에서 추방함을 말한다.(개정)	
【890】 제7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① **교회 임원 또는 교인에 대한 재판 : 1심은 구**	【890】 제7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① **교인 및 교역자에 대한 재판 : 1심은 연회 재**	① 구역과 지방 재판위원회 폐지

원안	개정안	비고
역회 재판위원회, 2심은 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②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에 대한 재판 : 1심은 지방회 재판위원회, 2심은 연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③ 연회 회원인 교역자 및 연회에 관련된 사항의 장로에 대한 재판 : 1심은 연회 재판위원회, 2심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④ 감독과 감독회장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 교역자와 장로에 대한 재판 : 1심은 총회 재판위원회, 2심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⑤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판위원회, 2심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개정) ② 삭제 ③ 삭제 ② 감독과 감독회장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 교역자와 평신도에 대한 재판 : 1심은 총회 재판위원회, 2심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개정) ③ 좌동 ④ 심사나 재판 중에 교역자나 평신도가 이명하는 경우에도 해당 심사위원회나 재판위원회는 심사나 재판의 종결 후 이명해간 연회나 지방의 행정책임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연회나 지방의 행정책임자는 그 결과를 집행하여야 한다.(신설)	②③ 원안 삭제 ④ → ②, 장로 → 평신도 ⑤ → ③ ④ 신설
제 2 절 고소·고발 및 심사회부 【892】 제9조(고소·고발) 고소·고발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마태복음 18 : 15~17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9항, 제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장로 또	제 2 절 고소·고발 및 심사회부 【892】 제9조(고소·고발) 고소·고발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다만, 마태복음 18 : 15~17의 말씀대로 권고한 사실 자체가 기록된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개정) ② 좌동	

원안	개정안	비고
는 교역자가 고발할 수 있다. ③ 고소인, 고발인은 고소·**고발장과 범행설명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소인, 고발인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인이 승소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되 이를 3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 회원권을 상실한다. 다만,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고소·고발 비용은 선거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⑤ 고소가 합의에 따라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쌍방이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 고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⑥ 의회의 행정책임자가 범과 전반에 대하여 직무상 고소·고발이 필요한 때에는 당회, 구역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고소·고발하고 해당 의회가 기탁금을 부담한다.	③ 고소인, 고발인은 고소·**고발장에 증거를 첨부하여 1심을 관할하는 의회의 행정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④ 고소인, 고발인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인이 승소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되 이를 3개월 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고 3개월이 도과되면 즉시 1심 재판위원회를 관할하는 행정책임자는 재판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정직을 명한다.**(개정) ⑤ 좌동 ⑥ 좌동	
제 3 절 심 사 【897】 제1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구성한다. ① 구역 심사위원회는 구역회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 심사위원회는 지방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연회 심사위원회는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④ 총회 심사위원회 및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각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	제 3 절 심 사 【897】 제1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구성한다. **① 삭제** **② 삭제** ① 좌동 ② 총회 심사위원회 및 총회 특별 심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선교**	①, ② 삭제 ➔ 구역, 지방 심사, 재판위원회 폐기 원안의 ③ → ① 원안의 ④ → ② 심사에서 기소가 되면 정직이 되므로 기

원안	개정안	비고
성한다. 단, 특별심사위원회 평신도 위원은 가급적 법조인으로 한다. ⑤ **지방회,** 연회, 총회의 심사위원은 해당 의회에서 10명을 선출하여 5명을 한 반으로 편성하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해당 심사위원회가 심사하게 한다. ⑥ 각급 심사위원회는 그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하되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연회 이상의** 심사위원은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한 법조인 2명으로 한다.** (개정) ③ 연회, 총회의 심사위원은 해당 의회에서 10명을 선출하여 5명을 한 반으로 편성하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해당 심사위원회가 심사하게 한다.(개정) ④ 좌동 ⑤ 심사위원은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소의 신중성과 법 이론에 적합한가를 심사하여야 함. 원안의 ⑤ → ③ 원안의 ⑥ → ④ 원안의 ⑦ → ⑤
【899】 제16조(심사의 구분) 심사의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심사대상이 교인 및 교회 임원인 경우에는 구역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② **심사대상이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인 경우에는 지방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③ **심사대상이 교역자인 경우에는 연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④ **심사대상이 감독과 감독회장인 경우에는 총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⑤ 교역자(연회원과 감리사) 및 연회에 관련된 사항의 **장로에** 대한 1심 심사는 연회 심사위원회, 2심 심사는 총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⑥ 감독과 감독회장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 교역자와 **장로에** 대한 1심 심사는 총회 심사위원회에서, 2심 심사는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899】 제16조(심사의 구분) 심사의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회심사위원회는 연회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할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② 총회심사위원회는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할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③ 총회특별심사위원회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할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④ 삭제** ④ 교역자(연회원과 감리사) 및 연회에 관련된 사항의 **평신도**에 대한 1심 심사는 연회 심사위원회, 2심 심사는 총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⑤ 감독과 감독회장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 교역자와 **평신도에** 대한 1심 심사는 총회 심사위원회에서, 2심 심사는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총회와 관련한 장로의 1심심사의 관할처에 관한 규정 원안의 ⑤⑥⑦ → ④⑤⑥

원안	개정안	비고
⑦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인 경우에는 총회 특별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⑥ 좌동	
【902】 제19조(심사기간)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902】 제19조(심사기간)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하여 지연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②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심사가 시작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1차에 한 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의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하여 지연된 기간은 심사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③ **심사 중 심사위원의 임기가 종료 되거나 심사위원이 교체될 경우는 그 기간은 제외한다.**(신설)	**또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하여 지연된** 삽입
【904】 제21조(기소)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자의 혐의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면 재판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기소한다. ① 기소 결정은 확실한 증거와 충분한 심사를 통해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기소 결정을 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소장과 함께 심사기록 및 증거물을 심사위원 임명권자를 거쳐 재판위원회에 송달하고 기소장 부본을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904】 제21조(기소)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자의 혐의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면 재판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기소한다. ① 좌동 ② 심사위원회는 기소 결정을 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소장과 함께 심사기록 및 증거물을 심사위원 임명권자를 거쳐 재판위원회에 송달하고 **재판위원회는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소장 부본을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재판위원회는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를 삽입

원안	개정안	비고
③ 행정책임자는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9항, 제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 제8항과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을 위반한 범과로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하고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책임자는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9항, 제13항, 제4조(교역자에 적용되는 범과) **제4항, 제5항,** 제7항, 제8항과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을 위반한 범과로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하고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08】 제25조(불기소자에 대한 재심사) **심사위원 임명권자가 분명한 이유를 들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고소인, 고발인이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1차에 한하여 재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여야 한다.	【908】 제25조(불기소자에 대한 재심사) 고소인, 고발인이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1차에 한하여 재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여야 한다.(개정)	[198] 제15항과 상치되며, 감독의 심사재판 개입을 막고 심사위원회의 독립성 유지를 위함.
제 4 절 재 판	제 4 절 재 판	
【912】 제29조(재판위원회의 구분) 재판위원회의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구역회에 구역회 재판위원회 ② 지방회에 지방회 재판위원회 ③ 연회에 연회 재판위원회 ④ 총회에 총회 재판위원회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를 둔다.	【912】 제29조(재판위원회의 구분) 재판위원회의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삭제** **② 삭제** ① 좌동 ② 좌동	①, ② 삭제 ➔ 구역회, 지방회 재판위원회 폐지 원안의 ③ → ①로 원안의 ④ → ②로
【913】 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구역회 재판위원회는 구역회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회 재판위원회는 지방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913】 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삭제** **② 삭제**	①, ② 삭제, 구역회, 지방회 재판위원회 폐지

원안	개정안	비고
③ 연회 재판위원회는 연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 2명으로 구성한다.	① 좌동	원안의 ③ → ①로
④ 총회 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좌동	원안의 ④ → ②로
⑤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과 법조인 3명으로 구성한다. 단, 평신도는 가급적 법조인으로 한다.	③ 좌동	원안의 ⑤ → ③로
⑥ **지방회 재판위원은 5명을 한 반으로 하고 제척·기피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5명 중에서 대치한다.**	⑥ 삭제	원안의 ⑥ 삭제
⑦ 연회 재판위원은 6명(법전문인 1명 포함)을 한 반으로 하고 제척·기피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6명 중에서 대치한다.	④ 좌동	원안의 ⑦⑧⑨⑩⑪ → ④⑤⑥⑦⑧로
⑧ 총회 재판위원은 7명(법조인 1명 포함)을 한 반으로 하고 제척·기피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7명 중에서 대치한다.	⑤ 좌동	
⑨ 각급 재판위원회는 그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정·부서기를 각각 1명씩 선출한다.	⑥ 좌동	
⑩ 연회 이상의 재판위원은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⑦ 좌동	
⑪ 감독 및 감독회장은 연회원, 총회원이 아닌 법전문인 또는 법조인을 연회 재판위원, 총회 재판위원, 총회 특별재판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⑧ 좌동	
【916】 제33조(재판 관할) 재판은 다음 각 항과 같이 관할한다.	【916】 제33조(재판 관할) 재판은 다음 각 항과 같이 관할한다.	

원안	개정안	비고
① 교인 또는 교회임원에 대한 1심 재판은 구역회 재판위원회, 2심 재판은 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① 교인 및 교역자에 대한 1심 재판은 연회 재판위원회, 2심 재판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개정)	
②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에 대한 1심 재판은 지방회 재판위원회, 2심 재판은 연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② 삭제**	②③ 삭제 ➔ 구역회, 지방회 재판위원회 폐지
③ **교역자(연회원과 감리사) 및 연회에 관련된 사항의 장로에 대한 1심 재판은 연회 재판위원회, 2심 재판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③ 삭제**	
④ 감독과 감독회장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 교역자와 **장로에** 대한 1심 재판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2심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② 감독과 감독회장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 교역자와 **평신도에** 대한 1심 재판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2심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원안 ④ → ②로 변경
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③ 좌동	원안 ⑤ → ③으로 변경
【917】 제34조(재판) 재판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재판은 법정 위원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재판위원회 위원장이 불참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재판을 개최한다. 지명하지 않을 때는 출석 재판위원 중에서 임시 재판위원장을 선출하여 재판을 개최한다. ③ 재판에는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위원회 서기가 입회하여야 한다. ④ 재판은 당해 심사기록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 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지연된 기간은 재판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917】 제34조(재판) 재판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좌동 ② 재판위원회 위원장이 불참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재판을 개최한다. 지명하지 않을 때는 출석 재판위원 중에서 임시 재판위원장을 선출하여 재판을 개최한다. ③ 좌동 ④ 재판은 당해 심사기록을 송부 **받고 심리가 개시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 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지연된 기간은 재판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원안	개정안	비고
	⑤ **재판 중 재판위원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재판위원이 교체된 경우 그 기간은 재외된다.** (신설)	
⑤ 재판위원회가 재판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재판위원회 위원들은 제척되며 재구성된 재판위원회는 그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⑥ 좌동	⑤ → ⑥ 으로
⑥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장하고, 1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지연된 기간은 재판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좌동	⑦ → ⑥ 으로
【918】 제35조(변호인) 변호인의 선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918】 제35조(변호인) 변호인의 선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기소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교회헌법이나 규칙에 익숙한 이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① 좌동	
②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재판위원장이 피고소인, 피고발인과 의논하여 교역자와 교인 중에서 변호인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좌동	
③ 선임된 변호인의 출석 없이는 재판을 개시할 수 없다. 다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좌동	
④ 변호인은 소정의 여비 외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인은 예외로 한다.	④ 좌동	
⑤ 총회 재판위원회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관여하는 변호인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이여야 한다.**	⑤ 총회 재판위원회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관여하는 변호인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이나, 교리와 장정 이나 규칙에 익숙한 교역자 또는 장로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변호인 선임에 건 추가
【924】 제41조(재판의 절차) 재판의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	【924】 제41조(재판의 절차) 재판의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	

원안	개정안	비고
다. ① 재판위원장의 재판 개회 선언 ② 심사위원장의 기소장 낭독과 기소이유 설명 ③ **사실심리 : 피고소인, 피고발인에 대한 신문과 고소인, 고발인의 진술** ④ **변호인의 변론** ⑤ 증인 채택(원고측, 피고측으로 구분하여) ⑥ 변호인의 최후 변론 ⑦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최후 진술 ⑧ 판결	다. ① 좌동 **② 피고소인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고지, 다만 행정재판은 제외한다.** (신설) **③ 인정신문**(신설) **④** 좌동 **⑤ 피고소인, 피고발인 모두 진술**(개정) **⑥ 증거조시(원고측, 피고측)** (개정) ⑦ 좌동 ⑧ 좌동 ⑨ 좌동	원안의 ② → ④로 원안의 ③④ → ⑤로 통합 원안의 ⑤ → ⑥로 원안의 ⑥ → ⑦로 원안의 ⑦ → ⑧로 원안의 ⑧ → ⑨로
【931】 제48조(판결) 판결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고소·고발 기간이 도과된 사건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재판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면 재판위원회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과 명예훼손의 피해는 보상해야 한다.** ③ 재판위원회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범과가 있다고 입증될 때에는 벌칙을 선고한다. ④ 재판위원회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범과가 없	【931】 제48조(판결) 판결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좌동 ② 재판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면 재판위원회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좌동 ④ 좌동 ⑤ 재판위원회의 유·무죄 판결은 **법조인 또는 법**	다만 이하는 삭제 교회법으로는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

원안	개정안	비고
다고 입증될 때에는 무죄를 선고한다. ⑤ 재판위원회의 유·무죄의 판결은 **재판 위원회 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결한다. 다만, 판결을 위한 최후 재판시에 정수가 되지 아니하면 1차에 한해 연기하고 2차에도 정수가 되지 아니하면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유죄의 판결을 내린다.** ⑥ 재판비용의 부담은 벌칙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재판위원회는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 쌍방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 ⑦ 제6항의 벌칙 및 비용분담을 선고 받은 자는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 회원권이 정지된다.	**전문인이 참석한 재판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결하고, 의견 대립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판결문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⑥ 좌동 ⑦ 좌동	
【939】 제56조(상소의 제기) 상소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① 고소인, 고발인이나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판결 통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1심 재판위원회 소속 행정책임자에게 상소장과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시에는 상소인이 재판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피상소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3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 회원권을 정지한다.**	【939】 제56조(상소의 제기) 상소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① 좌동 ② 상소 시에는 상소 인이 재판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 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피상소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3개월 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피상소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고 3개월이 도과되면 즉시 상소심 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책임자는 재판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정직을 명한다.(개정)** **③ 상소 시에는 1심 재판비용이 완납되어야 상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신설)	
【942】 제59조(상소심의 판결) 상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상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1심 판결을 취소	【942】 제59조(상소심의 판결) 상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좌동	

원안	개정안	비고
하고 다시 선고한다. ② 상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각한다. ③ 1심 재판에 하자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1심 재판위원회에 파기 환송한다. ④ 파기 환송을 받은 1심 재판위원회는 파기 환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결을 한다.** 다만, 1심 재판위원회가 기소장의 형식 하자를 간과하고 판결하였을 때는 상소심 재판위원회는 1심 심사위원회에 그 하자의 보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하여 자판(自判)한다. ⑤ **상소심 재판위원회에서 재판위원회 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상소가 이유 있다는 찬성을 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한다.**	② 좌동 ③ 좌동 ④ 파기 환송을 받은 1심 재판위원회는 파기 환송**되어 재판위원회에서 심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결한다.** 다만, 1심 재판위원회가 기소장의 형식 하자를 간과하고 판결하였을 때는 상소심 재판위원회는 1심 심사위원회에 그 하자의 보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하여 자판(自判)한다. (개정) ⑤ **상소를 인용하는 판결은 재판위원회 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법조인 또는 법전문인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개정)	
【974】 제14조(**조정신청기간**) ① 행정재판사항의 조정신청은 각급 의회의 위법한 의결, 각급 의회의 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때와 작위 의무가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974】 제14조(**청구기간**) **행정재판이나 행정조정신청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조정신청기간 → 청구기간 【974】 제14조가 1개항 밖에 없으므로 조문으로 이동
【977】 제17조(소송비용의 예납 등) ① 원고는 비용기탁금을 관할 행정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에 예납하여야 한다. ② 각 의회나 각 의회의 장 사이의 비용기탁금은 **원고 의회가** 관할 행정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에 예납하여야 한다.	【977】 제17조(소송비용의 예납 등) ① 좌동 ② 각 의회나 각 의회의 장 사이의 비용기탁금은 **원고가** 관할 행정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에 예납하여야 한다.(개정)	
【992】 제32조(판결) ① 행정재판위원회는 소장 등 소송기록을 송부 받	【992】 제32조(판결) ① 행정재판위원회는 소장 등 소송기록을 송부 받	

원안	개정안	비고
은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지연된 기간은 재판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행정재판위원회는 심리를 종결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의결,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고,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명하고, 의회나 의회의 장 사이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확인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재판위원 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재판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원고, 피고 쌍방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 ⑤ 재판비용 부담자가 3개월 안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⑥ 판결은 당사자나 그 밖의 의회 및 의회의 장을 기속(羈束)한다.	**고 심리가 개시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사정 에 의해 지연된 기간은 재판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② 좌동 ③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재판위원 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법조인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④ **행정조정 비용과** 재판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원고, 피고 쌍방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개정) ⑤ 좌동 ⑥ 좌동	심리가 개시된 날을 삽입 법조인이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993】 제33조(**직무집행정지**) 행정재판의 청구가 있은 후 이미 의결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행정재판위원회의 직권으로 의결 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993】 제33조(**집행정지**) **① 행정재판의 청구가 있은 후 이미 의결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행정재판위원회의 직권으로 의결 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정의를 ①으로

원안	개정안	비고
	②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 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재판이 제기된 경우는 총회특별 재판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안의 선고시 까지 당선취임자의 직무를 정지 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직전 감독이나 감독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직무 집행 정지 → 정지 가처분 총회재판위원회의 결의로 직무를 본안 판결 시 까지 직무를 정지 시키는 것
【1006】 제46조(상소심의 판결) 상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상소의 제기가 상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상소권이 없는 자가 한 상소에 대하여는 상소를 각하한다. ② 상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1심 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고 새로 판결한다. ③ 상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소를 기각한다. ④ 1심 재판에 하자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심 판결을 파기하여 1심 행정재판위원회에 환송한다. ⑤ 이 경우 1심 행정재판위원회는 파기 환송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⑥ 상소심재판위원회에서 재판위원회 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상소가 이유 있다는 찬성을 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한다.	【1006】 제46조(상소심의 판결) 상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상소심재판위원회에서 **법조인이 참석한** 재판위원회 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상소가 이유 있다는 찬성을 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한다.(개정)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원안	개정안	비고
【1017】 제3조(감독, 감독회장 선거) 감독, 감독회장 선거는 정기총회 3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선거일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다만, 미주특별연회의 감독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관할 하에 그 연회 선관위에서 주관한다. ① 감독 선거와 감독회장 선거는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동수 득표일 때에는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②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통해 총 투표자의 과반수를 득표해야 당선된다. 다만, 당선자가 없으면 재선거한다.** ③ 감독 당선자는 해당 연회 선관위가 공포하고, 감독회장 당선자는 선관위가 공포한다. ④ **감독 선거나 감독회장의 선거가** 무효이거나 **취임 전 당선**이 무효일 때에는 재선거한다. ⑤ **감독이나 감독회장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할 경우 재선거한다.	【1017】 제3조(감독・감독회장 선거) 감독・감독회장 선거는 정기총회 3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선거일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다만, 미주특별연회의 감독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관할 하에 그 연회 선관위에서 주관한다. ① 좌동 ② **후보자가 1인이거나 다른 후보가 중도에 사퇴하여 단일 후보가 된 때에는 투표를 생략하고 당선을 선포한다.**(개정) ③ 좌동 ④ **감독・감독회장의** 선거가 무효이거나 당선이 무효일 때에는 재선거한다.(개정) ⑤ **감독・감독회장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할 경우 재선거한다.(개정)	②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고자 함
【1019】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각 연회는 교역자 2명과 평신도 2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한다. 다만, 선교연회는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으로 구성한다. 미주특별연회는 별도로 구성하되 2배수의 범위에서 증원할 수 있다. ② 감독회장은 **전직 감독 중 1명과 평신도 중 법조인 1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한다.**	【1019】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좌동 ② 감독회장은 **감독회의와 협의하여 전직 감독 중 1명과 평신도 중 법조인 2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한다. 다만 법조인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이로서**	법조인 1인으로는 법 적용에 있어 독단적인 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개정.

원안	개정안	비고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회부터 총회까지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된 후 본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감독 및 감독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와_그 교회의 교역자나 평신도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⑦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거사무를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리회의 권사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	
【1025】 제11조(의결 정족수) ② 선관위가 후보자의 자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1025】 제3조 (의결 정족수) ② 선관위가 후보자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자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등록거부와 등록 취소할 경우 의결정족수 와 동일
【1027】 제13조(피선거권) ① 감독 후보자는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5장 제9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제1항과 제2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감독회장 후보자는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8장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제1항과 제2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5장 제9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제2항과 제8장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제2항	【1027】 제13조(피선거권) ① 좌동 ② 좌동 ③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5장 제9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제2항과 제8장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제2항	

원안	개정안	비고
단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제5편 교회 경제법이 **정한 대로(종류, 기일, 금액) 성실하게** 완납해야 한다.	단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제5편 교회 경제법이 **정한 대로 각종 부담금을 정한 기일 내에** 완납해야 한다.(개정)	
④ 감독,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 등록 2개월 이내에 감리사가 소집한 소속 구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감독,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 등록 2개월 이내에 감리사가 소집한 소속 구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⑤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재단 편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는 감독, 감독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⑤ 좌동	
⑥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 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⑥ 후보자가 정회원 허입 후에 감리회 재판 법에서 근신 이상이나 사회 재판 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다만 등록일 기준으로 감리회의 재판법에 의한 처벌이 종료된 후 10년 경과 후 또는 교회의 직무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사회재판으로 형이 실효된 후 10년이 경과 한 이는 제외한다.**(개정)	
⑦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담임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⑦ 좌동	
⑧ 감독 및 감독회장은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로서 총회에서 총회까지로 한다.	⑧ 좌동	
⑨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는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⑨ 좌동	
⑩ 건강진단서 소견상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⑩ 좌동	
	⑪ 현직 감독이나 감리사가 선거 당해 연도 이전에 임기를 마치지 않은 이는 감독·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신설)	
【1028】 제14조(선거권)	【1028】 제14조(선거권)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는 일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선거권을 부여한다.
① 연회 감독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다만,	① 연회 감독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하되 각종	

원안	개정안	비고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	부담금을 전년도 12월 말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 **다만, 법적으로 유지재단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 불가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②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각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다만,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	② 좌동	
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	③ 좌동	
④ 선거인 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후 타 연회로 인사 이동한 이는 전 소속 연회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④ 좌동	
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연회에 출석한 장로를 임명된 년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년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30%까지는 장로로 임명된 년수에 상관없이 여성장로로 할 수 있다.	⑤ 좌동	
⑥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후에는 선거권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⑥ 좌동	
제 4 장 후보자의 등록	제 4 장 후보자의 등록	
【1031】 제17조(후보자의 등록) ① 감독, 감독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이는 등록기간 내에 선관위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소정양식) 2통	【1031】 제17조(후보자의 등록) 감독·감독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이는 등록기간 내에 선관위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좌동	【1031】 제17조는 항이 하나이므로 제1항의 내용을 조문으로 이동함.

원안	개정안	비고
2. 이력서 2통	2. 좌동	
3. 명함판 사진 3매	3. 좌동	
4. 경력증명서(소속 연회 감독 발행) 2통	4. 좌동	
5.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2통	5. 좌동	
6. 선거공보 원고(B5용지 4매 이내로 하되 최근 4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통	6. 좌동	
7. 교회 부동산의 유지재단 편입 확인서(유지재단 발행) 2통	7. 좌동	
8.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 완납 확인서 각 2통	8. 좌동	
9. 등록금 납입증명서 사본 2통	9. 좌동	
10. 제7편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실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서 2통(연회 발행)	10. 좌동	
11.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 발행) 2통**	11. **범죄경력조회확인서(실효된 형포함) 2통, 다만 [1027]제13조 ⑥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문 등본, 약식명령 등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공적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1.
12. 구역회의 후보 추천 결의서 2통	12. 좌동,	
13. 건강진단서(대학병원 발행) 2통	13. 좌동	
14. 이단문제와 윤리·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선관위의 심사에 따르겠다는 각서 2통	14. 좌동	
15.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교회 재정 관계서류 일체	15. 좌동	
② 현직 감리사가 입후보할 경우 후보자 등록 개시 3개월 전까지 사퇴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원안	개정안	비고
【1034】 제20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입후보자 자신 **또는 선거운동원이**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034】 제20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입후보자 자신과 **그 배우자가**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1034】 **"또는 선거운동원이" 삭제**
【1036】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다음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① 감독회장, 본부 각국 **총무와** 소속 직원 ② 감독, 선교연회 관리자, 연회 총무와 소속 직원 ③ 감리사 ④ 선거관리위원	【1036】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다음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① 감독회장, 본부 각국 **국장**과 소속 직원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자치단체장. 다만, 교역자 및 평신도 단체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에는 일체의 행사를 할 수 없다.**(신설)	**⑤ 신설**
【1038】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다음 각 항의 선거운동 금지사항은 선거 **당해 연도부터** 적용한다. ①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선관위가 발행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② 후보자나 **그 가족 또는 제3자가** 선거권자에게 금품, 이익 또는 향응,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 ③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권자의 관혼상제시 화환을 증정하거나 선관위가 정하는 한도를 넘는 금액을 부조하는 행위 ④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개체교회, 자치단체,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의 각종 행사에 기부금 제공, 광고	【1038】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다음 각 항의 선거운동 금지사항은 선거 **2년 전 부터** 적용한다. ① 후보자나 **그 배우자 , 제3자가** 선관위가 발행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② 후보자나 **그 배우자 , 제3자가** 선거권 자에게 금전, 선물, 이익 또는 음식과 숙박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 ③ 후보자나 **그 배우자 , 제3자가** 선거권자의 관혼상제 시 화환을 증정하거나 선관위가 정하는 한도를 넘는 금액을 부조하는 행위 ④ 후보자나 **그 배우자 , 제3자가** 개체교회, 자치단체,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의 각종 행사에 기부금 제	【1038】 **당해 연도 → 2년 전부터**

원안	개정안	비고
게재, 화환 증정 등을 하는 행위 ⑤ **후보자가** 설교문, 설교집 및 각종 간행물을 배포하거나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하여 광고하는 행위 ⑥ 유권자가 후보자나 **그 가족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협찬, 화환 증정, 광고 게재, 기타의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⑦ 후보자의 신앙, 신분, 경력, 인격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로 음해, 비방하는 행위 ⑧ 후보자가 총회, 연회, 지방회 행사가 아닌 사적 모임을 **주선하는 행위** ⑨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를 위하여 교회재정을 사용하는 행위 ⑩ 후보 추대, 여론 조사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소속 구역회의 후보 추천은 제외)	공, 광고 게재, 화환 증정 등을 하는 행위 ⑤ 후보자나 **그 배우자 , 제3자가** 설교문, 설교집 및 각종 간행물을 배포하거나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과 전자메일 ,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광고하는 행위 ⑥ 유권자가 후보자나 **그 배우자 , 제3자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협찬, 화환 증정, 광고 게재, 기타의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⑦ 좌동 ⑧ 후보자가 총회, 연회, 지방회 행사가 아닌 사적 모임을 **주선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⑨ 좌동 ⑩ 좌동 **⑪ 후보자간 담합 등 타 후보의 당선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사퇴하거나 사퇴하게 하는 행위.**(신설) **⑫ 선거운동은 후보자 자신과 그 배우자 외에는 할 수 없다.**(신설)	⑧ **주선하는 → 주선하거나 참여**
【1043】 제29조(우편투표) ① 미주특별연회는 감독 선거나 감독회장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우편투표를 실시하려면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선관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③ 우편투표는 선거일 17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되어야 한다.	[1043】 제29조(우편투표) ① 좌동 ② **우편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③ 좌동	
제 7 장 보칙	**제 7 장 보칙**	

원안	개정안	비고
【1048】 제34조(보궐선거) ① 감독회장의 궐위 시에는 가급적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임기를 마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로 후임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인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② 감독의 궐위 시에는 가급적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로 후임 감독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인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보선된 감독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1048】 제34조(보궐선거) **감독·감독회장의 궐위 시에는 직무대행자가 5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2분의 1 미만일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의회법 제99조 및 제119조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개정) ① 삭제 ② 삭제	감독·감독회장의 궐위 시 그 임기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보궐선거하되 보궐선거는 선거권자 전체가 참여하게 함. 감독·감독회장의 선거가 간접선거가 아니라 직접선거이므로 개정이 필요함. [경과조치]
【1049】 제35조(직무대행) ① 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되어 선출되지 못한 경우 가급적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	【1049】 제35조(직무대행) 삭제 ① 삭제	직무대행은 일정기간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며 이미 연회.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법에서는 삭제되어야 함.

원안	개정안	비고
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독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되어 선출되지 못한 경우 가급적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② 삭제**	
【1050】 제36조(재정) ① 선거에 필요한 재정은 **특별회계로 하고 입후보자의 등록금(50%)과 본부 예산(50%)으로 충당한다.** ② 등록금은 선관위가 정하되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의 심사 및 재판비용은 선관위 예산으로 충당한다. ④ 선거무효가 되었을 때에는 본부가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무효의 사유가 후보자에게 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선거무효 사유가 특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 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 ⑤ **선관위는 임기가 만료되면 재정을 정산하여 감독회장에게 보고하고 잔여금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에 기부한다.**	**【1050】 제36조(재정)** ① 선거에 필요한 재정은 **입후보자의 등록금으로 충당하며 등록금은 선관위가 정하되 총회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개정) ② 좌동 ③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의 심사 및 재판비용은 선관위 예산으로 충당한다. **다만, 유죄판결시에는 위반자가, 무죄인 경우에는 고발인이 부담한다.**(개정) ④ 좌동 ⑤ **선관위는 선거가 종료된 후 90일 이내에 재정을 정산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고, 잔여금은 입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반환한다.**(개정)	① 본부예산 충당 - 삭제 전액 후보자 부담. ③나중에 재판에 의하여 재판비용을 부담하는 판결이 나므로 패소자가 부담 고소. 고발의 남발을 억제의 뜻

원안	개정안	비고
【1052】 제38조(벌칙처벌) 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 4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② 후보자가 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 선거일 이전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각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이 선거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④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이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⑤ 후보자가 등록 후 건강상 이유(대학병원 발행 진단서 첨부) 이외에 사퇴하였을 경우 해당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⑥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될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⑦ 총회 개회 전날까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소·고발할 수 있다. ⑧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⑨ 당선자가 취임 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취임을 유보한다.	【1052】 제38조(벌칙처벌) 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4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개정) ② 후보자가 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 선거일 이전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각각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개정) ③ 선거관리위원이 **선거법 제5조 7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개정) ④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이는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개정)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 ⑧ 좌동 ⑨ **당선자가 취임전, 또는 후 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선거법 위반자의 중벌 취임 후 선거법 위반을 구체적으로 적시

원안	개정안	비고
⑩ 감독, 감독회장 선거 무효의 사유가 특정인, 특정 위원회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고의, 중대한 과실로 업무수행을 한 자는 선거무효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행정책임자가 일정기간 직임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⑩ 좌동 **⑪ 후보자에 대하여 각종 매스컴이나 각종 매체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다만, 각종매체란 각종 유인물배포, 공공게시판 게재, 전자 및 문자메일, 광고 등을 말한다.**(신설) **⑫ 선거법 제36조 3항의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때까지 회원권을 정지한다.**(신설) **⑬ 선거법 제22조(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신설)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중벌
	【000】 제00조(선거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처벌)(신설) **①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법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이 사실로 판결될 경우 후보자 등록금 중에서 아래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위반사례를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 내에서 균등 배분한다.**(신설) **1. 금품을 제공 받은 경우 받은 금액의 30배** **2. 금품을 제공 받지 않고 금품제공에 결정적 증거자료를 신고한 경우 500만원. 다만 결정적 증거 자료란 목격자등 관련자의 녹음테이프, 영상자료, 사진, 기타 증거**	

원안	개정안	비고
	물을 말한다. 3. 금품을 제공한 자는 지급된 포상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납부할 때 까지 회원권을 정지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자의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허위 및 담합 등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신고자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회부한다. 위법한 신고자는 지급한 포상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1년 이상 정직과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한다.(신설) ③ 금품을 제공 받은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 의하여 그 사실이 밝혀 질 경우에는 1년 이상 정직과 받은 금액의 과태료 30배를 부과한다.(신설) ④ 선거법 위반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단, 위 사실을 누설(공개또는 보도포함)한 자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1년 이상 정직과 과태료 300만원이상을 부과한다.(신설) ⑤ 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장학재단에 귀속되며, 과태료를 납부할 때까지 회원권을 정지한다.(신설)	
	부칙(2013. 11. 15)(신설) 【000】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신설) 【000】제2조(경과조치) 【1027】제13조 제11항과 [1038]제24조는 2016년부터 시행한다.(신설)	

제9편 연회 및 지방 경계법

원안	개정안	비고
【1085】 제4조(경기연회 경계) 경기연회 경계는 수원권선동, 수원권선서, 수원영통, 수원장안, 수원팔달, 용인동, 용인서, 안양, **안양동,** 군포, 광명, 새광명, 안산, 안산동, 안산남, 안산대부, 사강, 남양, **화성,** 오산, 오산서, 평택, 평택서, 평안, 경기남 **25개 지방**으로 한다.	【1085】 제4조(경기연회 경계) 경기연회 경계는 수원권선동, 수원권선서, 수원영통, 수원장안, 수원팔달, 용인동, 용인서, 안양, **평촌,** 군포, 광명, 새광명, 안산, 안산동, 안산남, **안산서,** 안산대부, 사강, 남양, 화성, **화성동,** 오산, 오산서, 평택, 평택서, 평안, 경기남 **27개** 지방으로 한다.(개정)	안양동 → 평촌 안산서, 화성동 신설 25개 지방 → 27개 지방
【1086】 제5조(중앙연회 경계) 중앙연회 경계는 가평, **광주,** 광주동, 구리, 남양주, 분당, 성남, 성남동, 양주, 양평, 여주동, 여주서, 연천, 의정부, 의정부동, 이천남, 이천북, 이천중앙, 포천, 유럽 **20개 지방**으로 한다.	【1086】 제5조(중앙연회 경계) 중앙연회 경계는 가평, **광주하남,** 광주동, 구리, 남양주, **동두천,** 분당, 성남, 성남동, 양주, 양평, 여주동, 여주서, 연천, 의정부, 의정부동, 이천남, 이천북, 이천중앙, 포천, 유럽 **21개 지방**으로 한다.(개정)	광주 → 광주하남 동두천 신설 20개 지방 → 21개 지방
[1092] 제10조(삼남연회 경계) 삼남연회 경계는 부산동, 부산서, 대구, **마산동, 마산서,** 경북동, 경북북, 한려, 진주, 울진, 울산, 경북서, 제주, 필리핀선교 14개 지방으로 한다.	[1091] 제10조(삼남연회 경계) 삼남연회 경계는 부산동, 부산서, 대구, **창원동, 창원서,** 경북동, 경북북, 한려, 진주, 울진, 울산, 경북서, 제주, 필리핀선교 14개 지방으로 한다.(개정)	마산동, 마산서의 명칭변경
[1093] 제12조(호남선교연회 경계) 호남선교연회 경계는 전주, 전남동, 군산, 익산, **전북,** 광주, 여수8개 지방으로 한다.	[1093] 제12조(호남선교연회 경계) 호남선교연회 경계는 전주, 전남동, 군산, 익산, **전북서남,** 광주, 여수8개 지방으로 한다.(개정)	전북을 전북서남으로 명칭 변경

제10편 과정법

원안	개정안	비고
제 10 편 과정법 제 4 장 교역자 진급과정	제 10 편 과정법 제 4 장 교역자 진급과정	
【1098】 제4조(진급과정) 구역담임 목회자, 수련목회자(기관목회자), 군목, 선교사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급한다.	【1098】 제 4 조(진급과정) **서리 파송 전도사는 각 항의** 과정을 통해 진급한다. **(개정)**	원안 **①에서 ④** 삭제후 신설
① **신학대학원(M.Div, Th.M.)을 졸업하고 개체교회에 서리 담임자로 파송된 이는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	① (삭제)	
② 신학대학원(M.Div, Th.M.)을 졸업하고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여 개체교회 또는 감리회 인정 선교기관에 수련목회자로 파송된 이는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연회 개최 3개월 전까지 임지(입교인 12인 이상의 개체교회 담임, 선교사 또는 감리회 인정 기관)가 확정되면 목사 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 다만, 수련목회자로 정회원이 된 이는 1년을 초과하지 않고는 부담임 목사로 임명될 수 없다.	② (삭제)	
③ **군목으로 입대할 이와 국외선교사로 파송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 안수를 받는다.**	③ (삭제)	
④ **①항, ②항, ③항의 교역자는 파송받은 교회 또는 선교기관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구역회, 지방회의 추천을 받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이 통과되어야 한다.**	④ (삭제)	

원안	개정안	비고
	① 서리 파송 전도사는 파송받은 개체교회 또는 기관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구역회 및 지방회의 추천을 받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이 통과되어야 준회원에 허입한다. (신설)	
	② 개체교회 서리 담임자로 준회원에 허입한 이는 준회원 2년 과정을, 수련전도사로 준회원에 허입한 이는 준회원 3년 과정을 마치고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한다.(신설)	
	③ 국외선교사 후보자로 준회원에 허입한 이는 준회원으로 허입하면서 목사안수를 받고 준회원 2년과정 마치고 정회원에 허입한다.(신설)	
	④ 군종사관후보생으로 준회원에 허입한 이는 준회원으로 허입하면서 목사안수를 받고 준회원 2년과정을 마치고 정회원에 허입한다.(신설)	⑤ 개척 설립한 교회에 대한 책임과 부흥을 위하여 신설
	⑤ 수련전도사 과정을 마치고 교회를 개척 설립하여 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한 이는 2년 동안 구역을 이동할 수 없다.(신설)	원안 ⑤ → ⑥ '수련목회자'→'수련전도사
⑤ 수련목회자는 감독자인 지방 감리사의 책임하에 상담자인 담임목사로부터 목회자로서의 성품과 자질의 육성을, 지도자로부터 학문연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⑥ 수련전도사는 감독자인 지방 감리사의 책임 하에 상담자인 담임목사 또는 기관목사로부터 목회자로서의 성품과 자질의 육성, 학문연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원안 ⑥ → ⑦ '2년 과정을 5년'→'개체교회 ~ 6년 이내에'
⑥ 2년 과정을 5년 이내에 마치지 못한 이는 연회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회시킨다.	⑦ 개체교회 서리 담임자, 국외 선교사 후보자 및 군종사관후보생으로 준회원에 허입한 이로 준회원 2년 과정을 5년 이내에, 수련전도사로 준회원에 허입한 이로 준회원 3년 과정을 6년 이내에 마치지 못한 이는 연회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회시킨다.	⑦⑧⑨→⑧⑨⑩으로 항 이동

원안	개정안	비고
⑦ **수련목회자의** 지도목사(감리사, 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는 수련전도사 파송시 지도서약에 동의하고 서명해야 하며 지도목사 세미나에 1회(평생) 참석하여야 한다. ⑧ **수련목회자의** 상담자(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는 해당 연회에 연 2회(7월, 1월) 지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⑨ 수련목회자의 상담자가 지도목사 세미나에 불참하거나 지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담자가 담임하거나 소속한 교회 및 기관에 수련목회자를 파송하지 않는다.	(개정) ⑧ **수련전도사의** 지도목사(감리사, 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는 수련전도사 파송시 지도서약에 동의하고 서명해야 하며 지도목사 세미나에 1회(평생) 참석하여야 한다. ⑨ **수련전도사의** 상담자(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는 해당 연회에 연 2회(7월, 1월) 지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⑩ **수련전도사의** 상담자가 지도목사 세미나에 불참하거나 지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담자가 담임하거나 소속한 교회 및 기관에 수련목회자를 파송하지 않는다.(개정)	
【1099】제5조(준회원 진급 고시과정)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허입과정 1. 시험 - **성서주해**, **교회성장학**, 예배학, **교회행정학** 2. 논문 - 목회계획 3. 성경통독시험 ② 1년급 과정 1. 시험 - **성서신학(신구약)**, **목회학**, 설교학, **선교 및 전도학** 2. 논문 - 설교 3. 성경통독시험 ③ 2년급 과정 1. 시험 - 기독교윤리학, **교육신학**, **조직신학**, 상담학,	**【1099】** 제 5 조(준회원 진급 고시과정)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허입 과정 1. 시험 - **성서신학(신구약)**, **웨슬리 생애**, 예배학, **목회학** (개정) 2. 논문 - 목회계획 3. 성경통독시험 ② 1년급 과정 1. 시험 - **성서주해**, 설교학, **감리교회사, 웨슬리 신학**(개정) 2. 논문 - 설교 3. 성경통독시험 ③ 2년급 과정 1. 시험 - 기독교교육학, 조직신학, 상담학, **교리와 장정**(개정)	1. ‘성서주해’→‘성서신학’, 웨슬리 생애 추가, ‘교회성장학’→3년급으로 ‘교회행정학’→‘목회학’ 1. ‘성서신학’→‘성서주해’, 웨슬리 신학 추가, ‘목회학’→‘감리교회사’, ‘전도 및 선교학’→3년급으로 1. ‘기독교윤리학’→3년급으로, ‘교육신학’→‘기독교교육학’, ‘교리와 장정’추

원안	개정안	비고
2. 논문 - 교회행정 3. 성경통독시험	2. 논문 - 교회행정 3. 성경통독시험 **④ 3년급 과정(수련전도사)** (신설) **1. 시험 - 교회성장학, 선교 및 전도학, 기독교 윤리학** (신설) **2. 논문 - 교회와 지역사회** (신설) **3. 성경통독시험** (신설)	가 ④ 수련전도사를 위한 3년급 과정 신설
【1100】 제 6 조(수련목회자 과정) 수련목회자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수련목회자는 수련목회자 영성수련회에 참석하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련목회자는** 임지를 옮길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시무한 이가 이동할 경우 해당 연회 내에서만 연회 과정고시·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해당 연회 내에서만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100】** 제 6 조(수련**전도사** 과정) 수련**전도사**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① **수련전도사는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선발고시에 합격하고, 목회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② **수련목회자는** 임지를 옮길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시무한 이가 이동할 경우 해당 연회 내에서만 연회 과정고시·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해당 연회 내에서만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개정)	영성수련회→목회훈련과정 수련목회자 → 수련전도사
제 6 장 정회원 연수과정 【1104】제10조(연회 정회원 연수과정) 정회원 연수과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제1과정 : 교회부흥 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예배, 설교, 전도, **선교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한다. ② 제2과정 : 교회성숙 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기독교교육, 기독교윤리, 교회사, 목회상담, **교회행정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한다.	**제 6 장 정회원 연수과정** 【1104】제10조(연회 정회원 연수과정) 정회원 연수과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제1과정 : 교회부흥 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예배, 설교, 전도, **선교, 성서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한다.(개정) ② 제2과정 : 교회성숙 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기독교교육, 기독교윤리, 교회사, 목회상담, **교회행정, 현대신학**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한다.(개정)	과정을 주제로 변경해달라는 청원이 있어 논의가 요청됨

원안	개정안	비고
③ 제3과정 : 목회자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현대 신학, 성서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한다. ④ 제4과정 : 은퇴와 후계자 선택준비로 노인, 인간 관계, 사회복지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한다.	③ 제3과정 : **감리회가 실시하는 목회자 영성훈련 과정을 이수한다**.(개정) ④ 제4과정 : 좌동	
	【0000】 제 7 조(협동회원 과정)(신설) **① 허입과정(시험) : 성경통독(신설)** **② 안수과정(시험) : 목회학, 설교학, 감리교회사(신설)**	[1101] 제7조에 협동회원 과정 신설

제11편 각종 특별법 및 임시조치법

1. 호남선교연회 특별법

원안	개정안	비고
39. 호남선교연회 특별법	1. 호남선교연회 특별법	
제2조(선교연회 본부의 설치) 선교연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선교연회 본부를 둔다. ① 선교연회 본부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 본부”로 호칭한다. **② 선교연회 본부는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3길 40 2층에 둔다.**	**제2조(선교연회 본부의 설치)** 선교연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선교연회 본부를 둔다. ① **좌동** ② **선교연회 본부는 선교연회 의결에 따라 선교연회가 관할하는 지역 중에서 행정상 편리한 곳에 둔다.(개정)**	**② 주소명기 삭제**
제5조(선교연회 관리자의 자격) 선교연회 관리자의 자격은 연회 정회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하고 해당 연회에서 5년 이상 시무한 50세 이상이 된 이로 한다.	**제5조(선교연회 관리자의 자격)** 선교연회 관리자의 자격은 연회 정회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하고, **정회원 연수과정 3회를 이수하고,** 해당 연회에서 5년 이상 시무한 50세 이상이 된 이로 한다.(개정)	
제7조(선교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선교연회는 감독회장, 관리자, 서기, 감리사, 평신도 대표**로 실행부위원회를 구성한다. 선교·교육·사회평신도위원장, 남·여 선교회연합회장, 청장년선교회연합회장, 교회학교연합회장,** 감사는 발언권만 갖는다.	**제7조(선교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선교연회는 **관리감독**, 관리자, 서기, 감리사, 평신도 대표, **선교·교육·사회평신도위원장, 남·여·청장년선교회, 청년회, 교회학교연합회, 장로회연합회장으로 실행부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감사는 발언권만 갖는다.(개정)	
제8조(선교연회의 직무) ① 선교연회의 직무는 연회직무에 준한다. ② 선교연회는 매년 1회 모이고 감독회장이 주관한다. ③ 선교연회 관리자는 그 사업을 감독회장에	**제8조(선교연회의 직무)**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원안	개정안	비고
게 보고한다. ④ 선교연회는 총회대표 중에서 **총회 실행부위원을 제외한** 감리회본부 각국·원 위원 및 재단이사와 각 위원회 위원 1명을 교역자 또는 평신도 중에서 선출하여 파송한다. **다만 심사·재판·조정에 관련된 위원은 제외한다.** ⑤ 선교연회는 선교의 편의를 위하여 장정에 준하여 별도의 내규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④ 선교연회는 총회대표 중에서 감리회본부 각국·원 위원 및 재단이사와 각 위원회 위원 1명을 교역자 또는 평신도 중에서 선출하여 파송한다.(개정) **⑤ 좌동**	④ **"총회 실행부위원을 제외한", "다만 심사·재판·조정에 관련된 위원은 제외한다."→삭제**
	부 칙 (2013. 11. 15)(신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신설)	

다음의 임시조치법을 현행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에서 신설된 11편으로 이동하며 아래의 순서와 같이 배치함.

2. 서부선교연회 연회 및 지방회 조직과 운영 임시조치법

3. 미자립교회의 자립을 위한 발전기금 마련 임시 특별조치법

4. 미주특별연회 정상화를 위한 임시조치법

5. 재단법인 애향숙 인수에 관한 특별법(신설)

원안	개정안	비고
	제1조 (법인 인수)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재단법인 애향숙을 인수한다.(신설) 제2조 (인수 방법) (신설) ① 인수방법은 2013년 12월 4일로 임기 만료되는 재단법인 애향숙의 현 임원을 감리회 임원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인수한다.(신설) ② 교체임원은 애향숙 재단편입 준비 소위원회가 2013년 10월 16일 총회실행부 위원회에 천거하여 결의된 임원이 취임한다.(신설) 제3조 (정관 변경) 감리회는 재단법인 애향숙을 인수한 후 지체없이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신설) ① 변경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골자로 한다. (신설) 1. 재단법인 애향숙 정관(이하 '정관) 제1조(명칭)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으로 한다. 2. 정관 제2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세종로 광화문 빌딩)'로 한다. 3. 정관 제4조(사업) 제3호의 '대한예수교 오순절 성결회 운영 및 교회설립 운영' 규정을 삭제한다. 4. 정관 제7조 (임원의 종류와 성수) 이사수를 이사장 포함 13명으로 한다.	

원안	개정안	비고
	5. 정관 제8조(임원의 선임) 이사장은 삼남연회 감독이 당연직으로 하고 이사는 각 연회와 호남선교연회에서 교역자 또는 평신도중 각 1명씩 추천된 이와 애향숙 설립자의 직계비속 중 1인으로 하고 감사는 본부 감사 중 감사위원회에서 배정한 감사 2인으로 한다. 6. 정관 제11조(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관리) 재단법인 애향숙 정관이 2013년판 교리와 장정 편찬 이전에 변경되면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변경된 정관을 규정하여 편찬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목회대학원 통합을 위한 임시조치법

원안	개정안	비고
	제1조 (각 신학대학교 교역자 수급 관련 대학원 통합) 이 법의 목적은 감리회의 미래를 위하여 교역자 수급을 조절하고, 3개 신학대학(감신, 목원, 협성)의 화합과 일치를 위하여 감리회에 속하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목회대학원을 통합하기 위함이다. ① 목회대학원 통합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추진한다. ② 이 법은 목회대학원을 통합(감신, 목원, 협성)하고 실행할 때까지 유효하며, 2016년 12월까지 이를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 한다. 부칙(2013.1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 이 법은 목회신학대학원 통합 설립 후 당해연도에 폐기한다.	

6. 감리회 3개 신학대학원 발전기금 지원에 대한 임시조치법

원안	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법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신학대학,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이하 “3개 신학대학”이라 한다)를 교회가 대학발전 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전기금 부담기간) 3개 신학대학의 발전기금 부담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3년간)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부담액) 3개 신학대학 발전기금은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가 전년도 경상수입 결산 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다만 미자립 교회는 제외한다. 제4조(발전기금의 사용) 발전기금은 매년 3개 신학대학에 균등하게 지원한다. 제5조(회원권 제한) 신학대학 발전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교회는 연회회원권을 제한 한다. 부칙(2013.1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 이 법은 2017년 4월 30일에 폐기한다.	

7. 영남선교대회 후속조치로 교회설립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

원안	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법은 영남선교대회 후속조치로 삼남연회 안에 교회개척 및 설립기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전기금 부담기간) 삼남연회 내 교회설립기금 부담기간은 2014년 1년에 한 한다. 제3조(기금부담액) 교회설립기금은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가 2013년 경상수입 결산 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발전기금 사용) 설립기금은 전액 삼남연회 내에 교회설립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한다. 부칙(2013.10.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 이 법은 2015년 4월 30일에 폐기한다.	

제12편 예문(예배서)

원안	개정안	비고
【1115】제3조(예문과 예배복의 제정) 총회 예문연구위원회에서 연구 제정한 안을 장정개정위원회가 입법의회에 상정하고 **인을** 받아 시행한다.	【1115】제3조(예문과 예배복의 제정) 총회 예문연구위원회에서 연구 제정한 안을 장정개정위원회가 입법의회에 상정하고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개정)	※ 탈자삽입

제13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 감리회 기독교타임즈사 정관(개정)

원안	개정안	비고
1. 감리회 기독교타임즈사 정관(개정) 제1장 총 칙	1. 감리회 기독교타임즈사 정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사는 주간 「기독교타임즈」라 부른다.(이하 '본사'라 한다.)	제1조(명칭) 본사는 주간 **기독교타임즈사**라 부른다.(이하 '본사'라 한다.)(개정)	
제2조(소속) 본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한다.)에 속하며, **총회 산하 별정기구로 존재한다.**{관련근거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133조(감독회장의 직무) 제20항}	제2조(소속) 본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한다.)에 속하며, **총회 본부 기구로 존재한다.** [관련근거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234단 제133조(감독회장의 직무) 제20항 및 **000단000조(기독교타임즈사의 조직)에 있다**](개정)	
제3조(위치) 본사는 감리회 **본부 또는 감리회 본부가 허락한 장소에 둔다.**	제3조(위치) 본사는 감리회 **본부가 위치한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에 둔다.**(개정)	
제4조(목적) 본사는 감리교회의 신학과 전통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수행하는 주간신문 「기독교타임즈」와 매체를 발행한다. 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의 도구로서 감리교회가 구현하고자 하는 국내외에서의 선교, 교육, 봉사활동의 홍보 ② 한국 기독교의 성장과 성숙, 일치운동에 기여 ③ 기독교 문화 창달과 민족의 화합을 통한 통일운동 추구 ④ 기독교 언론지로서의 창조적, 예언자적 사명 수행	제4조(목적) 본사의 **설립목적은** 감리회의 신학과 전통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주간신문 기독교타임즈와 매체를 발행한다.(개정)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제2장 조 직	**제2장 조 직**	
제6조(조직) 본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6조(조직) 본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원안	개정안	비고
① **발행인 겸 사장 : 본사의 법적 대표자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이 맡는다.** ② 이사회 : 본사의 의결기구로서 **임무와 권한은 별도로 정한다.(제3장)** ③ 임직원 : 본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임직원을 둔다.** **1. 임원 - 주필, 국장** **다만, 주필과 편집국장은 사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다.** 2. 직원 - 직원은 취재 및 편집을 담당하는 기자와 광고 및 판매와 일반업무를 담당하는 일반 직원으로 구분한다. ④ 논설위원 : 비상근직으로 감리교회의 신학과 전통에 입각한 사설 등을 집필하는 일을 맡는다. ⑤ 지사장 및 지국장(별정직)	① **이사장 겸 발행인 : 본사의 대표자는 기독교대함감리회 감독회장이 맡는다.**(개정) ② 이사회 : 본사의 의결기구로서 **조직과 직무는 각각 제14조와 제16조에 규정한다.**(개정) ③ 임직원 : 본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임직원을 두며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1. **사장(대표이사) - 본사(주필, 편집장)업무 전반의 기획, 지휘, 감독 및 결재와 인사관리**(개정) 2.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감사 :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감사 중 2명을 선임한다.**(신설)	
제7조(임원) 임원의 선출방법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발행인 : 감리교회의 감독회장이 재임 중 당연직으로 맡되, 본지의 발행과 본사의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임원(주필, 국장)을 추천하고 직원을 임명하며 사장의 직무를 담당한다.** **② 주필 : 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발행인이 임명한다. 본지의 편집방향을 설정하고 논설위원회를 관리하며 필요시 편집국장을 겸한다.** **③ 편집국장 : 편집 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신학적**	제7조(임원)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① 이사장 겸 발행인 :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재임 중 당연직 이사장 겸 발행인이 된다.**(개정) ② 삭제 ③ 삭제	

원안	개정안	비고
소양과 언론 이해 등을 측정하기 위한 공개적인 선발과정을 거쳐 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발행인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편집국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사가 발행하는 매체에 관한 사항 2. 기자의 업무지도 및 관리 3. 자료 보존 업무 4. 기타 신문 제작과 관련한 사항 일체 ④ 총무국(부)장 : 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발행인이 임명한다. 총무국(부)장은 본사의 영업과 일반사무 전반을 책임진다. ⑤ 광고(특판)국(부)장 : 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발행인이 임명한다. 광고국(부)장은 본보에 게재할 광고의 수주 및 대금 수납업무 전반을 책임진다.	④ 삭제 ⑤ 삭제 ② 사장(대표이사)(신설) 1. 이사회에서 공개채용 하여 감독회장이 임명한다.(신설) 2.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취임 시 이사회가 정한 내용에 따라 취임 계약을 맺고 공증 한 후 취임 한다. (신설) 3. 기독교타임즈의 발행과 직원인사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신설) 4. 매년 영업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5. 기독교타임즈사의 재무재표를 공인회계사의 감	

원안	개정안	비고
	사를 받아 공고 하여야 한다.(신설) **6. 이사회 평가에서 신임을 얻지 못할 경우 계약에 의한 일정한 실적이 없을 경우는 사임하여야 한다.**(신설) **7. 사장 궐위 시 이사장은 후임 사장을 2개월 내 공개채용하고 그 기간 동안은 직무대행을 임명하여 운영한다.**(신설) **8. 취임 시 이사회가 정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제8조(감사) 본사는 2명의 감사를 두어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게 한다. ① 2명의 감사는 **감리회 본부** 감사위원회가 선임한다. **단,** 선임된 감사 중 공인된 회계사가 없을 경우 이사회는 별도의 외부 **감사를 위촉하여** 재정을 감사하도록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감리교회의** 정기총회를 기준 삼아 2년으로 하며, 외부감사는 감사 실시시기에 맞추어 **위촉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갖는다. ④ 감사는 연 2회 정기적으로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단기간 내에 열리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감사) 본사는 2명의 감사를 두어 **제반업무와 재무를** 감사하게 한다.(개정) ① 2명의 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감사위원회가 선임한다. **다만,** 선임된 감사 중 공인된 회계사가 없을 경우 이사회는 별도의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재정을 감사하도록 한다.(개정) ② 감사의 임기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정기총회를 기준 삼아 2년으로 하며, 외부 감사는 감사 실시시기에 맞추어 **이사회가 위촉한다.**(개정)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가지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④ 감사는 연 2회 정기적으로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단기간 내에 열리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제9조(논설위원) 주필의 제청을 받아 발행인이 6명 이내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논설위원) **① 사장과 발행인이 협의하여 6명의 위원을 제청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위촉한다.**(신설) **②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신설)	

원안	개정안	비고
제10조(기자) 취재와 편집업무를 담당할 기자를 약간 명 둔다. 기자는 공채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다만, 연회마다 원활한 취재를 위하여 주재기자를 두되 지사장이 겸임한다.)** ①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이 ② 감리교회의 세례교인 ③ 취재, 편집, 제작 등 해당업무와 관련한 자질을 갖춘 이	제10조(기자) 취재와 편집업무를 담당할 기자를 약간 명 둔다. 기자는 공채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다만, 연회마다 원활한 취재를 위하여 주재기자를 두되 지사장이 겸임한다.**(개정)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제11조(사원) 일반사무 및 광고업무를 담당할 유급사원을 약간 명 둔다. 사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①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이** **② 감리교인** **③ 해당업무와 관련한 자질을 갖춘 이** **④ 채용 당시 연령이 만30세 미만인 이**	제11조**(직원) 직원은 공개 채용한다.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본사 내규 인사규정에 준한다.**(개정)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13조(별정직) 임원 중 다음의 직책은 별정직으로 하여 본사의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발행인 및 편집인 ② 사장(다만, 비상근직에 한함) ③ 주필 ④ 논설위원	제13조(별정직) 임원 중 다음의 직책은 별정직으로 하여 본사의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이사장 및 발행인**(개정) **② 논설위원**(개정) **③ 지사장 및 지국장**(신설)	
제 3 장 이사회 제14조(구성 및 임무) 이사회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회는 22명 이내로 구성하되 선출방법은 각 연회 추천 2명(교역자, 평신도 각 1명), 감독회의 추천 1명(출판국위원장), 사장 추천 1명으로 한다.	**제 3 장 이사회** 제14조(조직)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이사회는 23명으로 조직하되 선출방법은 각 연회에서 교역자, 평신도 각 1명과 호남선교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또는 평신도 중 1명으로 조직하며, 감독회장과 사장은 직권상 이사가 된다.**	

원안	개정안	비고
② 사장과 주필은 직권상 이사가 되며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이사회는 본사의 사업 및 예산 결산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책임을 진다.** **⑤ 이사회는 이사장과 기록이사, 재무이사를 각 1명씩 선출한다.** **1. 이 사 장 : 본사 운영 전반에 관한 결의과정을 주재하며 감독 회장이 맡는다.** **2. 기록이사 : 이사회의 기록을 담당한다.** **3. 재정이사 : 본사의 재정운용실태를 파악, 대책안을 마련하며, 예산 결산안을 이사회에 상정한다.**	**②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감독회장이 된다.**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직권상 이사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제15조(회의) ① 정기 이사회 :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모이며, 그 시기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이사회 : 사장의 요청이나 이사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5조(회의) ① 정기 이사회 :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회 안건은 7일 이내에 이사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② 좌동	
제16조(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사의 업무와 관련한 제반 사항의 심의, 의결 ②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안 심의, 의결 ③ 사장선임 제청 및 임원 인준 ④ 본 정관 제7조, 제9조에 명시된 인사처리 ⑤ 본사의 내규 제정 및 개정	제16조**(직무)** 이사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좌동 **② 본사 정책 수립 및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안 심의와 의결**(개정) **③ 사장 선출 및 직원 채용**(개정) **④ 본 정관 제7조에 명시된 인사처리** ⑤ 좌동	

원안	개정안	비고
⑥ 후원회 및 기타 업무추진에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또는 폐기 ⑦ 기타, 감리회의 총회가 요청한 사항과 사장의 제안사항 처리	⑥ 좌동 ⑦ 좌동 **⑧ 본사 재산 출연, 기여금, 당기 순이익 및 손실금 처리사항, 인사규정에 따른 임직원 생활비 책정**(신설) **⑨ 이사회는 매년 본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영실적에 따라 사장과 맺은 취임 계약서에 의하여 사장을 면직을 시킬 수 있다. 다만, 사장을 면직할 경우에는 이사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신설)	
제4장 재 정 없음	**제4장 재 정** **제17조(재정) 본사의 재산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예속되며 재정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한다.**(신설)	
제17조(수입) 본사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① 구독료 ② 광고 수입 ③ 후원금(교회, 단체, 개인) ④ 특별사업을 위한 모금 다만, 교회 내 모금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⑤ 기타 수입	**제18조**(수입) 본사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좌동**	
제18조(지출) 이사회가 인준한 예산서에 입각하여 **사규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감리회 본부의 지원금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요청한**	제19조(지출) 이사회가 인준한 예산서에 입각하여 **내규에** 따라 집행한다.(개정)	

원안	개정안	비고
다.		
제19조(예산, 결산의 인준) 본사의 예산 및 결산은 회계연도 말에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서면 보고하여 인준을 얻어야 하며, 또한 집행내역은 매년 각 **연회 또는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20조**(예산, 결산의 인준) 본사의 예산 및 결산은 **감리회 회계연도와 동일한** 회계연도 말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서면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집행내역은 매년 각 **연회와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개정)	
제20조(후원회 운용) 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후원회를 별도로 조직 운영할 수 있으며, 후원회는 이사회가 조직, 관리한다.	**제21조**(후원회 운용) 좌동	
제21조(잉여금 처리) 본사의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발생할 시는 그 전액을 선교사업비로 유지재단(본부 회계)에 전입하여 사용토록 한다.**	**제22조**(잉여금 처리) 본사의 회계연도 말에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고유 목적에 우선 사용하며 기타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개정)	
제 5 장 신문발행	**제 5 장 신문발행**	
제22조(발행일) 본보의 발행은 매주 (토)요일로 한다.	**제23조**(발행일) 좌동	
제23조(규모) 본보는 주간 20면 대판 발행을 기준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면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다만, 연회별로 지면을 할애토록 한다.	**제24조**(규모) 좌동	
제24조(방향) 본보의 편집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역사와 전통에 입각하여 감리교회의 기본 홍보정책에 따라 설정한다.	**제25조**(방향) 좌동	
제 6 장 내규 제정 및 정관개정	**제 6 장 내규 제정 및 정관개정**	
제25조(내규의 제정) 본 정관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내규로 정하며, 정관이나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교계 신문사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의 관행에 따른다.	**제26조**(내규의 제정) 좌동	
제26조(정관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가 초안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7조(정관개정) 본 정관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에서 개정한다.**(개정)	제2편 헌법 [94] 제29조에 규정에 따라 개정(헌법사항임)
제27조(효력발생) 본 정관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	**제28조(효력발생) 삭제**	

원안	개정안	비고
준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3. 11. 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개정 전에 선출된 이사와 임원은 그 직의 임기를 마칠 때 까지로 한다.	

감리회 출판사 정관

원안	개정안	비고
	감리회출판사 정관 (신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사는 감리회출판사라 부른다.(이하 '본사'라 한다.)	전체신설
	제2조(소속) 본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한다.)에 속하며, 총회 본부 기구로 존재한다. [관련근거는 기독교대한감리회「교리와 장정」제3편 조직과 행정법 234단 제133조(감독회장의 직무) 제20항 및 249단148조(기독교타임즈사의 조직)에 있다]	
	제3조(위치) 본사는 감리회 본부가 위치한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번지 내에 둔다.	
	제4조(목적) 본사의 목적은 감리회 신학과 전통에 입각하여 발행하는 도서 및 각종 도서의 출판 · 보급 · 유통으로 한다,	
	제5조(사업) 본사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감리회의 신학과 신앙 전통을 담은 도서의 발행과 보급 ② 웨슬리의 영성과 교리를 담은 교재의 개발과 발행 ③ 「강단과 목회」발행 및 개체교회 강단을 지원하는 자료의 발행과 보급 ④ 「기독교세계」 및 정기간행물의 발행과 보급	

원안	개정안	비고
	⑤ 감리회 본부의 각종 도서 출판과 보급 ⑥ 미디어자료 개발과 전자책(e-book)의 출판과 보급 ⑦ 도서의 발행과 보급에 대한 정책수립 및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⑧ 각종 출판물의 보급을 위한 사업전개 ⑨ 기타 도서출판 및 자료보급	
	제2장 조 직 **제6조(조직과 업무)** 본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이사장 겸 발행인 : 본사의 대표자는 감독회장이 맡는다. ② 이사회 : 본사의 의결기구로서 13조 15조에 규정한다. ③ 사장(대표이사) - 본사 업무 전반의 기획, 지휘, 감독 및 결재와 인사관리 ④ 직원 : 본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약간명의 직원을 두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분담하여 시행한다. 1. 출판 - 출판물의 기획과 편집 및 제작, 행정 및 회계업무 2. 기관지 발행 - 정기간행물 기획과 편집, 행정과 관리 3. 영업 - 광고수주, 판촉 및 영업, 서점관리, 독자관리, 유통관리, 창고입출고관리, 쇼핑몰관리 4. 편집 - 단행본, 교재, 전자책, 정기간행물의 기획과 편집 및 제작	
	제7조(임원)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 및 직무는 다음과 같	

원안	개정안	비고
	다. ① 이사장 겸 발행인 :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재임 중 당연직 이사장 겸 발행인이 된다. ② 사장(대표이사) 1. 이사회에서 공개 채용 하여 감독회장이 임명한다. 2.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취임 시 이사회가 정한 내용에 따라 취임 계약을 맺고 공증 한 후 취임 한다. 3. 사장은 본사의 도서 발행과 직원인사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매년 영업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5. 본사의 재무재표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공고 하여야 한다. 6. 이사회 평가에서 신임을 얻지 못할 경우 또는 계약에 따른 일정한 실적이 없을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 7. 사장 궐위 시 이사장은 후임 사장을 2개월 내 공개 채용하고 그 기간 동안은 직무대행을 임명하여 운영한다. 8. 취임 시 이사회가 정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공개모집하여 채용한다. 사장은 본사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본사 내규 인사규정에 준한다.	
	제9조(감사) 본사는 2명의 감사를 두어 제반업무와 재무를 감사하게 한다.	

원안	개정안	비고
	① 2명의 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감사위원회가 선임한다. 다만, 선임된 감사 중 공인된 회계사가 없을 경우 이사회는 별도의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재정을 감사하도록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정기총회를 기준 삼아 2년으로 하며, 외부 감사는 감사 실시시기에 맞추어 이사회가 위촉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가지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연 2회 정기적으로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단기간 내에 열리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출판위원) 비상근 직으로 감리회의 신학과 전통에 입각한 출판의 방향과 기획 및 원고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위촉한다. ① 사장과 발행인이 협의하여 5명 이내로 선임한다. ② 본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제반경비는 본사 이사회에서 제정한 내규에 의한다.	
	제11조(편집위원) 비상근 직으로 감리회의 신학과 전통에 입각한 정기 간행물의 기획과 편집방향과 「기독교세계」, 「강단과목회」, 「하늘양식」 편집위원기획 및 독자확대를 위하여 위촉한다. ① 사장과 발행인이 협의하여 5명 이내로 선임한다. ② 본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위촉하며, 임기는 1년	

원안	개정안	비고
	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제반경비는 본사 이사회에서 제정한 내규에 의한다.	
	제12조(별정직) 임원 중 다음의 직책은 별정직으로 하여 본사의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이사장 및 발행인 ② 출판위원 ③ 편집위원	
	제3장 이사회 **제13조(조직)**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이사회는 23명으로 조직하되 선출방법은 각 연회에서 교역자, 평신도 각 1명과 호남선교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또는 평신도 중 1명으로 조직하며, 감독회장과 사장은 직권상 이사가 된다. ②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감독회장이 된다.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직권상 이사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의) ① 정기 이사회 :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회 안건은 7일 이내에 이사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시 이사회 : 사장의 요청이나 이사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직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사의 업무와 관련한 제반 사항의 심의, 의결 ② 출판정책 수립 및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안	

원안	개정안	비고
	심의와 의결 ③ 사장 선출 및 직원 채용 ④ 본 정관 제7조에 명시된 인사처리 ⑤ 본사의 내규 제정 및 개정 ⑥ 본사 재산 출연, 기여금, 당기 순이익 및 손실금 처리사항, 임직원 생활비 책정 ⑦ 기타, 감리회의 총회가 요청한 사항과 사장의 제안사항 처리 ⑧ 이사회는 매년 본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영실적에 따라 사장과 맺은 취임 계약서에 의하여 사장을 면직을 시킬 수 있다. 다만, 사장을 면직할 경우에는 이사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장 재 정 **제16조(재정)** 본사의 재산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예속되며 재정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제17조(수입) 본사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① 서적판매 및 구독료 ② 광고 수입 ③ 후원금(교회, 단체, 개인) ④ 기타 수입	
	제18조(지출) 이사회가 인준한 예산서에 입각하여 내규에 따라 집행한다.	
	제19조(예산, 결산의 인준) 본사의 예산 및 결산은 감리회 회계연도와 동일한 회계연도 말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안	개정안	비고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서면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집행내역은 매년 각 연회와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20조(후원회 운용) 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후원회를 별도로 조직 운영할 수 있으며, 후원회는 이사회가 조직, 관리한다.	
	제21조(잉여금 처리) 본사의 회계연도 말에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고유 목적에 우선 사용하며 기타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5장 내규 제정 및 정관개정 **제22조(내규의 제정)** 본 정관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내규로 정하며, 정관이나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의 관행과 일반 출판사의 관행에 준하며 실정법에 의한다.	
	제23조(정관개정) 본 정관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에서 개정한다.	
	부 칙 (2013. 11. 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전에 선출된 감리회 출판국 위원과 위원장은 그 직의 임기를 마칠 때 까지 각각 감리회출판사 이사와 이사장이 된다.	

5. 교회학교 규정

원안	개정안	비고
5. 교회학교 규정 제1장 목적과 조직	5. 교회학교 규정 제1장 목적과 조직	
제2조(교회학교의 조직) ① 영아부 1세~3세 ② 유치부 4세~5세 ③ **유년부 6세~7세** **④ 초등부 8세~9세** ⑤ **소년부 10세~11세** ⑥ 중등부 12세~14세 ⑦ 고등부 15세~17세 ⑧ **청년부 18세~30세** ⑨ **청장년부 31세~45세** **⑩ 장년부 46세~64세** ⑪ 노년부 65세 이상 다만, 개체교회의 실정에 따라서 부를 병합할 수 있다.	제2조(교회학교의 조직) **(개정)** ① 영아부 1세~3세 ② 유치부 4세~5세 ③ **초등부 6세~11세** ④ 중등부 12세~14세 ⑤ 고등부 15세~17세 ⑥ **대학부 18세-30세** ⑦ **청년부 18세~34세** **⑧청장년부 35세~47세** ⑨ **장년부 48세~64세** ⑩ 노년부 65세 이상 다만, 개체교회의 실정에 따라서 부를 병합할 수 있다. **(개정)**	③ ⑤ 삭제 ④→③ ⑥→④ ⑦→⑤ ⑥대학부(신설) ⑧→⑦ ⑨→⑧ ⑩→⑨ 이동 초등부에 유년부, 소년부를 병합 하여 명칭통일로 국가의 초등교육과 동일하게 운영하기 위함
제7조 **본 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 회**의 일체 회무를 **통관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가 그 임무를 대리한다. 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사무를 **장리한다.** ④ 협동총무는 총무를 도와 사무를 협조한다. ⑤ 서기는 본 회의 의결사항을 기록하며 보관하고 일반문서와 통신 사무를 **장리한다**. ⑥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 사무를 **장리한다.** ⑦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장리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이 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① 회장은 **이 회의** 일체 회무를 **통괄**한다. (개정) ② 좌동 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사무를 **주관**한다.(개정) ④ 좌동 ⑤ 서기는 본 회의 의결사항을 기록하며 보관하고 일반문서와 통신 사무를 **주관**한다. (개정) ⑥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 사무를 **주관**한다. (개정) ⑦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주관**한	본회 - 이 회 통관 - 통괄 장리 - 주관

원안	개정안	비고
. ⑧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사무 일체를 감사한다.	다. (개정) ⑧ 좌동	
제 4 장 회 의 제11조 **본 회**의 의회는 총회, 임원회, 위원회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1조 **이 회의** 의회는 총회, 임원회, 위원회로 한다.(개정)	

7. 장·단기 발전위원회 규정

원안	개정안	비고
7. 장·단기발전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2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①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이 협의한 전문위원 18명** ② **본부 각국 임원**	7. 장·단기발전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2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① 감독회장이 지명한 4명**(개정) **② 각 연회에 및 호남선교연회에서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 위원 1명**(신설) **③ 본부 각 국 국장 및 행정기획실장**(개정)	②이 ③ 으로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연회에서 선출한 위원 중 4명(교역자 2명, 평신도 2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한 2명은 교체하지 아니하되 그 순서는 감독회의에서 정한다.**(개정)	
제5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교회 일관된 정책수립**과 장·단기 방향연구** ② 감리교회의 제도발전 연구 및 방향설정 ③ 감리교회 여론수렴 작업 ④ 연구보고서 발간	제5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교회 일관된 정책수립 **및 연차별 사업 평가**(개정) ② 좌동 ③ 감리교회 **장·단기 발전 연구모임 개최 및** 여론수렴 작업(개정) ④ 좌동	
제7조(분과위원회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교회정책분과위원회 : 감리교회의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② 제도개선분과위원회 : 감리교회의 여론 수렴과 제도개선을 통한 발전방향을 연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교회정책분과위원회 : 감리교회의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며,** 정책방향을 제시한다.(개정) ② 좌동	

8.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 규정

원안	개정안	비고
8.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 규정 **제 2 장 조 직**	**8.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 규정** **제 2 장 조 직**	
제6조(분과위원회) 본 위원회는 각 항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① 교역자수급계획분과위원회 : 효율적인 교역자 수급계획을 수립한다. ② 고시분과위원회 : 교역자수급 및 고시 시행에 따른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③ 교역자진급과정연구분과위원회 : 효율적인 교역자 진급과정을 연구한다.	제 6 조(분과위원회) 본 위원회는 각 항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목회훈련과정분과위원회 : 수련전도사의 목회훈련과정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④ 신설
	제 5 장 목회훈련과정 **(신설)** **제00조 수련전도사 선발고시 합격자는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목회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신설
	제00조 수련전도사 선발고시 합격자는 당해 연도에 목회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한 이를 지방 감리사가 수련전도사로 파송한다. (신설) **① 목회훈련과정을 마친 이에게 수료증을 발급한다. (신설)** **② 목회훈련과정을 위하여 해당 부서에 실무자를 둔다. (신설)**	신설

17. 학원선교회 규칙

원안	개정안	비고
17. **감리교회 계통학교 선교육성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계통학교 선교육성회**라 한다.(이하 '본 회'라 한다.)	17. **학원선교회 규칙** (개정) 제 1장 총 칙 제1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학원선교회**'라 한다.(이하 '본 회'라 한다.)	명칭변경
제3조 **본 회는 감리교회 계통학교의 선교를 위한 기금조성과 학원선교 활동을 지원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및 개체 교회와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회는 **학원선교를 활성화 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인류에 봉사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배양하기 위하여 계통학교 지원, 학원선교사 제도의 활성화, 학원선교정책 수립을 통한 활발한 학원선교활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학원선교회의 목적을 분명히 한것임
제2장 조 직 제4조 본 회**는 감리회 본부 및 각 연회 실행위원, 연회 총무, 본부 교육국 위원, 교육국 총무, 담당 감사와 감리교회 계통학교 법인이사 및 감사, 교장, 교목과 학원선교에 관심이 깊은 자로 조직한다.**	**제2장 조 직** 제4조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목회자로 한다** (개정) 제5조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의 권리를 가지며 회칙준수, 결의사항 이행,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신설)	감리회 목회자로 회원의 자격을 규정하여 학원선교회 회원이 되는 기회를 모든 검리회 목회자에게 부여한다.
제3장 임 원 제5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약간 명 ③ 총무 1명 ④ 협동총무 약간 명	**제3장 임 원** 제6조 좌동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제5조 → 제6조 로

원안	개정안	비고
⑤ 서기 1명 ⑥ 회계 **2명(정, 부 각 1명)** ⑦ 감사 2명 ⑧ **각 위원회 위원장** 다만, 직권상 감리회 본부 교육국 총무와 교장회 회장은 부회장이 되고 담당부장과 교목회장은 협동총무가 된다.	⑤ 좌동 ⑥ 회계 **1명**(개정) ⑦ 감사 2명 ⑧ **간사 1명** (개정) 다만, 직권상 감리회 본부 교육국 총무와 교장회 회장은 부회장이 되고 담당부장과 교목회장은 협동총무가 된다.	간사를 두어 학원선교회 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임원들을 도와 사역의 실질적인 효율화를 기한다.를
	제7조 본 회는 본회의 운영과 사업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과 실행위원을 둘 수 있다.(신규)	회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제7조 본 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 회의 일체 회무를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가** 그 임무를 대리한다. 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사무를 장리한다.** ④ 협동총무는 총무를 도와 사무를 협조한다. ⑤ 서기는 본 회의 의결사항을 기록하며 보관**하고 일반문서와 통신 사무를 장리한다**. ⑥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 사무를 장리한다. ⑦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장리한다. ⑧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사무 일체를 감사한다.	제8조 본 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좌동 ②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그 임무를 대리한다.(개정) ③ 총무는 **모든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운영 시행한다.** (개정) ④ 좌동 ⑤ 서기는 본 회의 의결사항을 기록하며 보관 **정리**한다. (개정) ⑥ 좌동 ⑦ 좌동 ⑧ **간사는 본 회의 일체 사무 처리를 도와 임원을 보좌한다.**(신규)	제7조 → 제8조 로 부회장의 역할만 강조 총무의 역할을 폭 넓데 적용 간사의 역할
제8조 본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거**하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9조 본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제8조 → 제9조 로 임원의 임기를 4년에서 1년으로 줄임
제9조 본 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단,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본 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단,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기	제9조 →제10조 로

원안	개정안	비고
	간으로 한다.(개정)	
제4장 회 의 제11조 본 회의 의회는 **총회,** 임원회, **위원회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1조 본 회의 의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를 둔다.(개정)	
제12조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① 정기 총회는 매년 **5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2. 사업계획보고** **3. 예산 및 결산보고** **4. 규칙개정**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① 정기 총회는 매년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 **규칙개정 건의** **2. 사업보고** **3. 감사보고 및 결산보고**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5. 임원선출** **6. 기타 중요한 사항**	학원선교 현장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새 학기 시작하는 3월에 맞게 우선순위 정리 와 미비된 순서 보완
제13조 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임원회는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을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며 일반회무를 협의 처리 한다.** (개정)	제13조 →제14조 로 통합 정리
제5장 재 정 제15조 본 회의 재정은 **회비, 특별헌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5장 재 정 제15조 본 회의 재정은 **회원교회의 선교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원안	개정안	비고
제16조 본 회의연도는 5월에 시작하여 익년 4월로 끝난다.	.제16조 회원교회의 선교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신규)	
	제17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2월 1일부터 익년 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6조 제17조 로 회계연도 변경
제6장 부 칙	부 칙	부칙은 제6장을 삭제하고
제17조 본 회의 시행세칙이 필요한 때 임원회에서 제정할 수 있다.	제1조 본 회의 시행세칙이 필요한 때 임원회에서 제정할 수 있다. (개정)	본안 제17조 → 제1조 로
제18조 본 회의 규칙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3분의 2의 찬성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조 본 회의 규칙 개정 은 총회에서 재적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정된 안을 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본안 제18조 → 제2조 로
제19조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의회의 관례에 준한다.	제3조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 및 통상 회의와 관례에 준한다. (개정) 제4조 본 규칙은 입법회의에서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규)	본안 제19조 → 제3조 로

19-21. 교회학교 연합회 규칙

원안	개정안	비고
19. 교회학교 지방연합회 규칙 **제 1 장 이름과 목적** 제1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지방연합회라 한다.	**19. 교회학교 지방연합회 규칙** **제 1 장 이름과 목적** 제1조 **(명칭)** 좌동	
제2조 이 회는 지방 안 각 교회 교회학교와 연락하여 지방 교회학교 사업을 지도 원조하며 연합사업을 계획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적) 이 회는 지방회 소속 각 교회의 교회학교로 하여금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발전과 기독교교육을 위한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교회학교 연합회 동일목적
제3조 이 회의 사무소는 연합회장이 소속한 교회 안에 둔다.	제3조 **(사무소)** 좌동	
제 2 장 조 직 제4조 이 회는 지방회 관할에 있는 각 교회학교들로 조직한다.	**제 2 장 조 직** 제4조 **(조직)** 좌동	
제 3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5조 이 회의 회원은 각 **교회 교회학교에서 선출한** 4명씩의 대의원으로 한다.	**제 3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5조 **(회원)** 이 회의 회원은 각 **교회의 교회학교 대표** 4명의 대의원으로 한다.(개정)	선출을 대표 대표선출은 개체교회 제량으로
제6조 이 회의 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이 회의 규칙**에 복종하여** 회원에게 부담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6조 **(권리와 의무)** 이 회의 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이 회의 규칙**을 준수하며** 회원에게 부담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개정)	복종대신 준수로
제 4 장 임 원 제7조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각부 부장 1명	**제 4 장 임 원** 제7조 **(임원)** 좌동	
제8조(임원의 의무)	제8조(임원의 의무)	

원안	개정안	비고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회무 일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 이를 대리한다. 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 사무를 **장리한다.** ④ 서기는 **회 안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장리한다.** ⑤ 회계는 **이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⑥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무 일체를 **장리한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 사무를 **주관**한다. (개정) ④ 서기는 이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주관**한다. (개정) ⑤ 회계는 이 회의 **재무일체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개정) ⑥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무 일체를 **주관**한다.(개정)	장리를 주관 금전출납을 재무일체로
제 5 장 임기 및 부서	**제 5 장 임기 및 부서**	
제9조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정하고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선정을 선출로
제10조 이 회는 지방 감리사와 교육부 총무를 포함한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10조 **(고문)** 좌동	
제11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및 보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제12조 이 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영아부 ② 유치부 **③ 유년부** ④ 초등부 ⑤ 중등부 ⑥ 고등부 ⑦ 청년부 ⑧ 청장년부 ⑨ 장년부 다만, 실정에 따라 부를 병합할 수 있다.	12조 **(부서)**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영아부 ② 유치부 ③ **초등부** ④ 중등부 ⑤ 고등부 ⑥ **대학부(신설)** ⑦ 청년부 ⑧ 청장년부 ⑨ 장년부 ⑩ **노년부(신설)** 다만, 실정에 따라 부를 병합할 수 있다.	③유년부를 삭제하고 초등부에 유년부를 병합 국가 교육체계와 같게 ③ 삭제 ④→③ ⑤→④ ⑥→⑤ ⑥ 신설 ⑩ 노년부(신설)
제 6 장 회 의	**제 6 장 의 회**	

원안	개정안	비고
제13조 이 회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회를 둔다. ①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원 개선,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심의, 기타 사무를 의결한다.** ② 임원회 : 임원회는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 **(의회)** 이 회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회를 둔다. (개정) ① 정기총회 : 매년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사업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 사업계획, 예산안 심의, 기타 사무를 의결하고, 2년마다 임원을 선출한다**(개정). ② 좌동	매년총회에서 사업보고, 감사보고 받도록 하며 임원선출은 2년마다 한다.
제 7 장 재 정 제14조 이 회의 재정은 각 교회 교회학교 부담금과 지방회 **보조와 의연금으로 한다.**	**제 7 장 재 정** 제14조 **(재정)** 이 회의 재정은 각 교회의 교회학교 부담금, 지방회 **지원금, 찬조금, 헌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보조, 의연금을 지원금과 찬조금, 헌금으로 표현변경
제 8 장 부 칙 제15조 본 규칙의 **개정은 감리회 본부 교육국 총무가 교육국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규칙개정 및 시행)** 본 규칙의 **개정 건의안은 총회에서 출석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개정)	제 8 장 삭제 교육국경유를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경유로 변경
20. 교회학교 연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이름과 목적 및 사업** 제1조 이 회의 이름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연회연합회라 한다.	**20. 교회학교 연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이름과 목적 및 사업** 제1조 **(명칭)** 좌동	
제2조 이 회의 본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본부 안에 둔다.	제2조 **(사무소)** 좌동	
제3조 이 회의 목적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교회학교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제3조 **(목적) 이 회의 목적은 지방회연합회가 연합하여 감리회 교회학교 발전과 기독교 교육을 위한 계획 및 실행을 하는데 있다.**(개정)	목적 동일

원안	개정안	비고
제4조 이 회는 연회 관할하에 두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① 감리회 본부 교육국,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각 지방 연합회, 교회학교의 모든 기구와 협력하여** 교회학교 지도자를 **훈련한다.** ② 본 연회에 속한 모든 교회학교 학생의 신앙적 성장을 지도한다. ③ 지방 연합회를 지도하며 상호 친선과 연락을 도모한다. ④ **각 지방 교회학교 연합회를 지도한다.**	제4조 **(사업)** 좌동 ① 감리회 본부 교육국,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교회학교 각 지방연합회와 협력하여** 교회학교 지도자를 **훈련하고 지도한다.**(개정) ② 좌동 ③ 좌동 ④ **국내, 외의 교회학교 연합 사업에 협력한다.**(개정)	교회학교 모든 기구 삭제 각 지방 교회학교 연합회를 지도대신 국내, 외 교회학교 연합 사업에 협력으로 ④삭제 후 → ④ 신설
제5조 **이 회는 교육국,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및 연회 본부의 지도를 받는다.**	제5조 **(지도) 이 회는 감리회 본부 교육국,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및 연회 교육 위원회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개정)	감리회 본부, 교육위원회 삽입
제 2 장 조 직 제6조 이 회는 본 연회의 각 지방 교회학교 연합회로서 조직한다.	**제 2 장 조 직** 제6조 **(조직)** 좌동	
제 3 장 임원의 직무 및 부서 제7조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 1명, **부회장(남녀 각 1명)**, 총무 1명, **서기 2명(정, 부)**, 회계 1명, **감사 1명**, 각부 부장 1명, **고문 약간명**	**제 3 장 임원의 직무 및 부서** 제7조 **(임원의 구성)** 좌동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총무 1명, **부총무 1명, 협동총무(지방연합회 총무)**, **서기 1명, 부서기 1명**, 회계 1명, **부회계 1명,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차장 2명**, **특별위원장, 부위원장, 운영위원, 각 약간명, 역대회장. 다만 원로인 경우는 선거권이 없다.**(개정)	부서증설 및 명칭부여
제8조(임원의 직무 및 지방 교육부 총무와의 관계)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회무 일체를 통할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① 좌동	

원안	개정안	비고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개정)	
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 사무를 장리한다.**	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행정업무를 주관**한다.(개정)	
	④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신설)	④ ⑤ ⑦ ⑨ ⑫ ⑬ ⑭ ⑮ ⑯신설 ④→⑥ 으로 ⑤→⑧ ⑥→⑩ ⑦→⑪로 이동
	⑤ **협동총무는 총무와 부총무를 도와 주어진 업무를 주관한다.**(신설)	
④ 서기는 본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장리한다.**	⑥ 서기는 본 회의 기록과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주관한다.(개정)**	장리-주관 으로 표기
	⑦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신설)	신설부서 역할명시
⑤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⑧ 회계는 본회의 재무 일체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개정)	감사역할 강화
	⑨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신설)	
⑥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⑩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지적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게한다.** (개정)	
⑦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업 일체를 **장리한다.**	⑪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업 일체를 **주관**한다.(개정)	
	⑫ **각부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 유고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신설)	
	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에서 부여된 특별사업을 주관한다.**(신설)	
	⑭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임원회 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신설)	

원안	개정안	비고
	⑮ 운영위원은 본 회의 사업을 기획 및 운영하며 의견을 개진한다.(신설) ⑯ 역대회장은 본 회의 지도적 위치에서 경륜과 경험을 통한 자문에 응한다.(신설)	
제9조 고문은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제9조(고문, 지도, 자문위원)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은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개정)	총회인준사항
제10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로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원회비가 총회 일개월전에 까지 완납되어야 총회 회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방연합회 회장은 총회 시 현직 지방연합회장이 총회원이 된다. (개정)	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 와 총회 대표권 명시
제11조 임원은 총회에서 선정하되 각 지방 연합회에서 1명씩 전형위원을 선택하여 총회에서 전형 보고케 한다. 다만, 회장은 감독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총회가 정한다.(개정)	선출방법은 총회에서 정하도록
제12조 이 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영아부 ② 유치부 ③ 유년부 ④ 초등부 ⑤ 중등부 ⑥ 고등부 ⑦ 청년부 ⑧ 청장년부 ⑨ 장년부	제12조 (부서) 이 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영아부 ② 유치부 ③ 초등부 ④ 중등부 ⑤ 고등부 ⑥ 대학부(신설) ⑦ 청년부 ⑧ 청장년부 ⑨ 장년부 ⑩ 노년부(신설)	③ 삭제 ④→③ ⑤→④ ⑥→⑤ 이동 ⑥ 대학부(신설) ⑩ 노년부(신설)
제13조 각 부는 약간 명의 부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 (부원) 좌동	
제 4 장 의 회 제14조 이 회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회를 둔다. ① 총회 ② 임원회 ③ 부회	**제 4 장 의 회** 제14조 (의회) 좌동	
제15조 총회는 각 지방 연합회 대표 4명으로 구성한다.	제15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개정) ① 정기총회는 매년 년마다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원안	개정안	비고
	다만 임원개선은 2년마다 실시한다.(개정) ②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칙개정 건의안 승인 2. 사업보고 3. 감사보고 4. 결산 보고 및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5. 임원의 선출 6. 기타 중요한 사항 7.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인준 ④ 총회는 이 회의 임원과 각 지방 연합회에서 선정한 1명의 총회 대표 와 각 지방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총회 내용 구체적으로 보완
제16조 총회는 2년마다 회장이 소집하되, 3개 지방 대표 이상의 연서로 특별총회 소집을 요청할 때는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해야 한다.	제16조 (권리와 의무) 총회 의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이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총회 의원에게 부담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신설)	제16조 원안은 제15조에 반영됨
제17조 대표는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이 회의 규칙에 복종하며 대표에게 부담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17조 (임원회 구성과 운영) 이 회의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운영한다.(개정) ①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신설) ② 재석 임원으로 개회하며 재석 과반수로 결의한다.(신설) ③ 총회에서 위임한 사업 및 일반회무를 협의하여 해당부서에 회부한다.(신설)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제18조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특별부회 및 위원회) 특별 부회 및 특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부장 및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임된 회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한다.(신설)	

원안	개정안	비고
제19조 **부회는** 필요에 따라 부장이 소집한다.	**제19조 (결의) 이 회의 규칙 개정 건의안은 총회에서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외의 의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신설)	제20조를 제19조로 이동
제20조 각 회의 성원은 재적의 과반수로 한다. 단, 고문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5장 재 정** **제20조 (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비, 사업 수입금, 지방연합회 부담금, 연회지원금, 찬조금, 헌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삭제
제5장 재 정 제21조 이 회의 재정은 회비, 사업 수입금, 지방연합회 부담금, **특별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5장 재 정** 제20조 (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비, 사업 수입금, 지방연합회 부담금, **연회지원금, 찬조금, 헌금**으로 충당한다.(개정)	특별찬조금을 연회지원금 찬조금, 헌금으로 변경
제22조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 (회비) 회비 및 각 연합회 부담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개정)	
제6장 부 칙 제23조 본 규칙의 개정은 총회 재석 3분의 2의 가표를 얻어 **연회와 교육국을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서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부칙)** 본 규칙의 개정은 총회 재석 3분의 2의 가표를 얻어 **전국연합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서 시행한다. (개정)	제6장 삭제 교육국 경유에서 전국연합회 경유로 변경
21.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규칙 **제1장 이름과 목적 및 사업** 제1조 이 회의 이름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라 한다.	21.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규칙 **제1장 이름과 목적 및 사업** 제1조 **(명칭)** 좌동	
제2조 이 회의 본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 안에 둔다.	제2조 **(사무국)** 좌동	

원안	개정안	비고
제3조 이 회의 목적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회학교 발전과 교사훈련 및 기독교교육을 위한 연구와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목적) 이 회의 목적은 지방연합회, 연회연합회가 연합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회학교 발전과 기독교교육을 위한 연구와 실천을 하는데 있다.**(개정)	목적 동일 교사훈련 삭제
제4조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① 감리회 본부 교육국과 연회연합회와 협력하여 교회학교 지도자를 훈련한다. ② 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학교 학생의 신앙성장을 돕는다. ③ 각 연회연합회와 지방연합회를 지도하며 상호친선을 도모한다. ④ 국내외의 교회학교 연합사업에 협력한다.	제4조 **(사업)** 좌동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제5조 이 회는 감리회 본부 교육국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	제5조 **(지도와 지원)** 좌동	
제 2 장 조 직 제6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로 조직하며 연회에는 연회연합회를, 지방에는 지방연합회를 둔다.	**제 2 장 조 직** 제6조 **(조직)** 좌동	
제 3 장 임원의 직무 및 부서 제7조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 1인, 본부 **부회장 10명 이내**(각 연회 연합회장은 당연직 부회장), 총무 1명, **협동총무 약간 명**, 서기 1명, 부서기 2명, 회계 1명, 부회계 2명,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차장 2명, 특별위원장 **약간 명, 부위원장 약간 명**, **자문위원 약간 명, 기획위원 약간 명, 고문 및 증경회장 약간 명**	**제 3 장 임원의 직무 및 부서** 제7조 **(임원의 구성)**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 1인, 본부 부회장 **약간명 (각 연회 연합회장은 당연직 부회장),** 총무 1명, **부총무 2명, 협동총무 (연회연합회 총무),** 서기 1명, 부서기 2명, 회계 1명, 부회계 2명,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차장 2명, 특별위원장 , **특별 부위원장, 운영위원** 각 약간 명, **역대회장**, **다만 임원의 정수는 300명을 넘을 수 없으며**	임원수의 변경과 총 정수를 확정

원안	개정안	비고
	원로는 선거권이 없다.(개정)	
제8조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제8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회무 일체를 **통할**한다.	① 좌동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	② 좌동	
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③ 좌동	
	④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신설)	④ 신설
④ 협동총무는 총무를 도와 주어진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⑤ 협동총무는 총무를 도와 주어진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④→⑤
⑤ 서기는 본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⑥ 서기는 본 회의 **기록과**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개정)	⑤→⑥ 서기 → 기록전담
⑥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⑦ 좌동	⑥→⑦
⑦ 회계는 본 회의 **금전 출납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⑧ 회계는 본 회의 **재무일체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개정)	⑦→⑧ 금전출납 → 재무일체로
⑧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⑨ 좌동	⑧→⑨ 이동
⑨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⑨ **삭제**	⑨ 감사 직무는 제23조로 이동
⑩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업 일체를 총괄한다.	⑩ 좌동	
⑪ 각부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 유고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	⑪ 좌동	
⑫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 회에서** 부여된 특별사업을 **처리**한다.	⑫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회에서** 부여된 특별사업을 처리한다.(개정)	
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유고	⑬ 좌동	

원안	개정안	비고
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 ⑭ **기획위원은** 본 회의 사업을 기획하며 의견을 개진한다. ⑮ **고문 및 증경회장, 자문위원은 본 회의** 지도적 위치에서 경륜과 경험을 통한 자문에 응한다.	⑭ **운영위원은** 이 회의 사업을 기획 및 운영하며 의견을 개진한다.(개정) ⑮ **역대회장은 이 회의** 지도적 위치에서 경륜과 경험을 통한 자문에 응한다. (개정)	기획위원 →운영위원 증경회장 →역대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은 제9조에서 역할
제9조 고문 및 **증경회장,** 자문위원은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제9조 **(고문, 지도, 자문위원)** 고문 및 **지도위원,** 자문위원은 임원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개정)	증경회장 삭제, 지도위원, 자문위원 신설
제10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와 자격)**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로**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원회비가 총회 일개월전까지 완납되어야 총회 회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방연합회 회장은 총회 시 현직 지방연합회장이 총회원이 된다.** (개정)	임원과 총대의 자격 보완
제11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총회가 정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좌동	
제12조 이 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영아부 ② 유치부 **③ 유년부** ④ 초등부 **⑤ 소년부** ⑥ 중등부 ⑦ 고등부 ⑧ 대학부 ⑨ 청년부 ⑩ 청장년부 ⑪ 장년부 ⑫ 노년부	제12조 **(부서)** 이 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영아부 ② 유치부 **③ 초등부 ④ 중등부 ⑤ 고등부 _ ⑥ 대학부** ⑦ 청년부 ⑧ 청장년부 ⑨ 장년부 ⑩ 노년부	유년부, 소년부는 초등부에 병합
제13조 각 부 및 위원회는 약간 명의 부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 **(부 및 위원회 구성)** 좌동	
제 4 장 의 회	**제 4 장 의 회**	
제14조 이 회의 의회는 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부회 및 위원회로 한다.	제14조 **(의회)** 이 회의 의회는 총회, 임원회, 부회 및 위원회로 한다. (개정)	임시총회는 총회 내에 있기에 삭제
제15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 2년마다 1월 중에** 회장이 소집	제15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마다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	

원안	개정안	비고
한다. ②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칙개정 건의안 승인 2. 사업보고 및 계획의 승인 3. 감사보고 4. **결산 및 예산의 승인** 5. 임원선출 6. 기타 중요한 사항 ④ 총회는 이 회의 임원과 각 연회연합회에서 선정한 2명의 대의원과 각 지방연합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연합회 회장이 임원일 경우는 대의원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다. **다만, 임원선출은 2년마다 한다.**(개정) ② 좌동 ③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칙개정 건의안 승인 2. 사업보고 3. 감사보고 4. 결산보고 **및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개정) 5. 임원선출 6.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인준**(신설) 7. 기타 주요한 사항 ④ 총회는 이 회의 임원과 각 연회연합회에서 선정한 2명의 대의원과 각 지방연합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③ 4에서 사업계획 추가 6.고문, 지도, 자문위원 인준절차 명시 6→ 7로 이동 ④ 다만 이하 삭제
제16조 총회는 2년마다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 **삭제**(개정)	제15조 제1항에 있음
제17조 **대의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이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대의원에게 부담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16조 **(총회의원 권리와 의무) 총회 의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이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총회 의원에게 부담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개정)	대의원-총회의원 제17조를 제16조로 변경
제18조 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소집하며 일반회무를 처리하고 사업계획을 협의, 해당부서에 회부한다.**	제17조 **(임원회 구성과 운영)**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운영한다.** **① 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신설) **② 재석 임원으로 개회하며 재석 과반수로 결의한다.**(신설) **③ 총회에서 위임한 사업 및 일반회무 협의하여 해당부서에 회부한다.**(신설)	제18조-제17조로

원안	개정안	비고
제19조 부회 및 특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부장 및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임된 회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18조 **(부회 및 특별위원회)** 좌동	제19조-제18조로
제20조 이 회의 규칙 개정 건의안은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외의 의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 **(결의)** 이 회의 규칙 개정 건의안은 총회에서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그 외의 의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개정)	제20조→제19조 의결를 결의로
제5장 재 정	**제5장 재 정**	
제21조 **이 회**의 재정은 회비, 각 연합회 의무부담금, 사업수익금, 감리회 본부 **보조금,** 헌금 **및 특별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0조 **(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비, 각 연합회 부담금, 사업수입금, 감리회 본부 **지원금, 찬조금,** 헌금으로 충당한다.(개정)	제21조→제20조 보조금을 지원금, 찬조금으로
제22조 회비 및 각 연합회 **의무부담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 **(회비 및 부담금)** 회비 및 각 연합회 **부담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개정)	제22조→제21조 의무대신 부담금으로
제6장 부 칙 제23조 감사는 연 1회 **이 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지적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게한다.**(개정)	**제6장 삭제** 제23조→제22조 감사조항은 행정 및 회계등 모든 업무감사로 하며 시정하도록 임무부여
제24조 회계연도는 총회 5일 전부터 다음해 총회 5일 전으로 한다.	제23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감리회 회계연도와 동일하다. 다만 회계연도 이후부터 총회 전까지는 감사 후 첫번 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제24조→제23조 회계연도 통일
제25조 다음 각 항의 사항과 본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세칙에 대하여는 임원회 결의에 의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① 총회선거에 관한 사항 ② **연회연합회 및 지방연합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 **(운영세칙제정 및 개정)** 다음 각 항의 사항과 본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세칙에 대하여는 임원회 결의에 의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① 좌동 ② 좌동	 ②항 삭제 후 항 변경 ③→② 으로 변경

원안	개정안	비고
④ 기타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좌동 **제25조(통상관례) 이 회의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감리회 장정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신설)	④→③ 으로 변경 통상관례 신설
제 6 장 부 칙 **제26조**(부칙) ① 이 회의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이 회의 결의와 감리회 장정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② 이 회의 규칙개정은 감리회 교육국을 경유하여 입법의회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의 규칙개정은 **제27차 입법총회(2007. 10. 26)인준을** 받아 시행 한다.(신설) ① 삭제. **부 칙** **2013. 11. 0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신설)**	제6장 표시 삭제 제26조→제1조 ① → 제25조로 이동 ② 는 시행일 정의로 변경 누락부분 삽입 후 부칙 신설

22-25. 청년회 규칙

원안	개정안	비고
22. 교회 청년회 규칙 제2장 조직과 회원 제4조 이 회는 연령별로 다음 세 부회를 두어 각각 개별적인 활동을 하게 한다. ① 중등부회 12세~14세 ② 고등부회 15세~17세 ③ 청년부회 18세~30세 다만, 교회 형편에 따라 중등부회와 고등부회, 고등부회와 청년부회를 합할 수도 있다.	22. 교회 청년회 규칙 제2장 조직과 회원 제4조 좌동 ① 좌동 ② 좌동 ③ 청년부회 **18세~34세**(개정) 다만, 교회 형편에 따라 중등부회와 고등부회, 고등부회와 청년부회를 합할 수도 있다.(개정)	
제9장 재 정 제18조 이 회의 재정은 회비, 헌금, 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장 재 정 제18조 이 회의 재정은 **교회 지원금과** 회비, 헌금, 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개정)	교회 지원금 삽입
23. 청년회 지방연합회 규칙 제8장 재 정 제17조 이 회 각 부회 연합회의 재정은 각 교회 청년회 각 부회 **의무금과** 지방의 **보조와** 특별 의연금으로 하되 예산 및 결산은 총회에서 한다. 다만, 각 교회 청년회 각 부회 **의무금은** 각 개체회비의 1/10로 한다.	23. 청년회 지방연합회 규칙 제8장 재 정 제17조 이 회 각 부회 연합회의 재정은 각 교회 청년회 각 부회 **부담금과** 지방의 **보조금과** 특별 의연금으로 하되 예산 및 결산은 총회에서 한다. 다만, 각 교회 청년회 각 부회 **부담금은** 각 개체회비의 1/10로 한다.(개정)	의무금 → 부담금 보조→ 보조금 의원금 → 지원금
24. 청년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7장 재 정 제16조 이 회의 재정은 각 지방 연합회의 부담금과 **회비**	24. 청년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7장 재 정 제16조 이 회의 재정은 각 지방 연합회의 부담금과 **연회**	연회 보조금

원안	개정안	비고
및 특별 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보조금,** 특별 의연금 **및 회비로 충당한다.**(개정)	
제17조 이 회의 예산 결산 및 각 지방 연합회의 부담금과 회비는 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제17조 이 회의 예산 결산 및 각 지방 연합회의 부담금과 회비는 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부담금은 각 지방 연합회비의 1/10에 준한다.**(개정)	
25. 청년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 7장 재 정 제16조 이 회의 재정은 각 연회 연합회의 **의무금과 교육국의 보조** 및 특별의연금 **등으로써** 충당한다.	25. 청년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 7 장 재 정 제16조 이 회의 재정은 각 연회 연합회의 **부담금과 감리회 교육국의 보조금 및 청년주일헌금,** 특별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개정)	의무금→ 부담금
제17조 이 회의 예산 결산 및 각 연회 연합회의 **의무금**은 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다만, **의무금**은 각 연회 연합회비의 1/10에 준한다.	제17조 이 회의 예산 결산 및 각 연회 연합회의 **부담금**은 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부담금**은 각 연회 연합회비의 1/10에 준한다.(개정)	

26-29. 청장년선교회 연합회 규칙

원안	개정안	비고
26. 교회 청장년선교회 규칙 제2장 조직과 회원 **제4조(조직)** 이 회는 본 교회에 소속된 **만 30세부터 만 45세 이하의 청장년(남)**으로 조직한다.	26. 교회 청장년선교회 규칙 제2장 조직과 회원 **제4조(조직)** 이 회는 본 교회에 소속된 **35세부터 47세 이하의** 청장년(남)으로 조직한다. **단, 35세 미만인 자라도 기혼자는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기존 '만30세부터 만 45세'를 '만35세부터 만47세'로 상향조정
27. 청장년선교회 지방연합회 규칙 제2장 조직과 회원 **제5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지방 내에 속한 **만 30세부터 만 45세 이하의 각 교회** 청장년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27. 청장년선교회 지방연합회 규칙 제2장 조직과 회원 **제5조(조직)** 이 회는 ○○지방 내에 속한 **35세부터 47세 이하의 각 교회** 청장년선교회의 대표 및 지방연합회 임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개체교회 청장년 대표 및 지방연회임원으로 조직한다.
28.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2장 조직과 회원 **제6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연회 속한 **만 30세부터 만 45세 이하의 각 교회** 청장년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단, 만 30세 미만인 자라도 기혼자는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8.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2장 조직과 회원 **제6조(조직)** 이 회는 ○○연회 속한 **35세부터 47세 이하의 각 교회** 청장년선교회 지방연합회 대표 및 연회연합회 임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지방연합회 대표 및 임원으로 조직한다.
29.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2장 조직과 회원 **제5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만 30세부터 만 45세 이하로서 개교회의** 모든 청장년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단, 만 30세 미만인 자라도 기혼자는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9.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2장 조직과 회원 **제5조(조직)** 이 회는 **35세부터 47세 이하로서 개체교회의** 모든 청장년선교회 회원으로 하며 지방연합회, 연회연합회 및 전국임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31-33. 남선교회연합회 규칙

원안	개정안	비고
31. 남선교회 지방연합회 규칙 제2장 조직과 회원 **제7조(회원 및 대의원)** ① 회원 :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OO지방회** 남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OO지방회에 소속된 만46세 이상 만70세까지의** 남성 성도를 회원으로 한다.(단 만70세 이상의 회원은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 대의원 : 본 회의 대의원은 본 회 임원과 개교회 대표로 한다. ③ 대의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각 교회의 남선교회의 회원수가 30명 미만일 때는 2명 2. 각 교회의 남선교회의 회원수가 30명을 초과할 때는 매 20명마다 1명씩 추가한다.	31. 남선교회 지방연합회 규칙 제2장 조직과 회원 **제7조(회원 및 임원)** ① 회원: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된 48세 이상 70세까지의** 남성 성도를 회원으로 한다(단, 70세 이상의 회원은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② 좌동 ② 좌동	청장년선교회와 협의결과 만46세→만48세로 청장년회원의 연령 상향 조정
32. 남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2장 조직과 회원 **제7조(회원 및 대의원)** ① 회원 :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OO연회** 남선교회 회원으로한다.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OO연회에** 소속된 **만46세 이상 만**70세까지의 남성 성도를 회원으로 한다. 단 만70세 이상의 회원은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 대의원 : 본 회 대의원은 본 회 임원과 지방연합회 현회장 및 대표 1인으로한다. 단. 지방연합회현회장이 본 회 임원인 경우 임원명부에 명기된 부회장 순서에	32. 남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2장 조직과 회원 **제7조(회원 및 임원)** ① 회원 :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된 **48세 이상** 70세 까지의 남성 성도를 회원으로 한다 (단 70세 이상의 회원은 특별회원으로 한다.) (개정) **② 좌동**	청장년선교회와 협의결과 만46세→48세로 청장년회원의 연령 상향 조정

원안	개정안	비고
따라 대의원이 된다.		
33.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2장 조직과 회원 **제7조**(회원 및 대의원) ①회원: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된 만 **46세** 이상 **만** 70세까지의 남성 성도를 회원으로 한다.(단, **만** 70세 이상의 회원은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대의원:본 회 대의원은 본 회 **임원과 지방연합회 현 회장**으로 한다. 단, 지방연합회 현 회장이 본 회 임원인 경우 임원명부에 명기된 부회장 순서에 따라 대의원이 된다.	33.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2장 조직과 회원 **제7조**(회원 및 대의원) ① 회원 : 본회 회원은 **감리회** 남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본회 회원은 **감리회**에 소속된 **48세** 이상 70세까지의 남성 성도를 회원으로 한다(단, 70세 이상의 회원은 특별회원으로 한다) (개정) **②** :본 회 대의원은 본 회 **임원구성 당시 지방연합회 회장**으로 한다. 단, 지방연합회 현 회장이 본 회 임원인 경우 임원명부에 명기된 부회장 순서에 따라 대의원이 된다.(개정)	청장년선교회와협의결과 만46세-48세로 청장년회원의 연령 상향조정 대의원 명칭 삭제
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회원은_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① 의무 : 본 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② 권리 : 본 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진다. 단, 본 회 회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회원은**_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① 좌동 ② 권리 : 본 회 회원은_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진다. 단, **70세 이상된 이는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으며 본 회 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도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회원→ 임원으로 임원 자격제한 폐지로 인한 임원 자격제한의 필요
제3장 임원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조직한다.**	제3장 임원조직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조직한다.**	100명 증가로 현실적 인원 필요

원안	개정안	비고
⑬_임원의 총수를 **600명** 이내로 한다.	⑬ 임원의 총수를 **700명** 이내로 한다.	
제10조(고문) 본 회는 본 회 운영의 지도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10조(고문) ① 본회는 운영의 도움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은 본회 역대회장 중에서 추대하며 추대된 고문은 본회 선거권을 가진다.** (신설)	조문을 ①항으로 이동

34-37 여선교회 연합회 규칙

34. 교회 여선교회 규칙

현 행 법	개 정 안	비 고
제 1 장 이름과 목적	제 1 장 총칙	
제 1 조 이 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회 여선교회라 한다. **제 2 조** 이 회는 ○○교회 안에 둔다. **제 3 조** 이 회는 여신도들이 그리스도 정신으로 교회를 도우며 국내외 선교사업과 일반 사회봉사 사업으로 천국운동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이름)**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여선교회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 회는 여성 성도들이 그리스도 정신으로 교회를 도우며 국내외선교와 일반사업에 힘쓰며 지방 여선교회 사업과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사업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현행 제2조 삭제 • 현행 제3조→개정안 제 2조로 수정보완
제 2 장 조직과 회원	제 2 장 조직과 회원	
제 4 조 이 회는 목적에 찬동하는 여신도 3명 이상이 있는 교회는 선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 3 조(조직과 회원)** 여성 성도 3명 이상이 있는 교회는 여선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 4 조(회원의 의무)** 1. 월례회 및 기타 여선교회 집회에 참석한다. 2. 매월 회비를 납부한다. 3. 여선교회 회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신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 현행 제2장 조직과 회원에 개정 • 제4조(회원의 의무) 신설
	제 3 장 의회	
	제 5 조(종류) 본 회 안에는 다음과 같은 의회를 둔다. 1. 임원회 2. 월례회	• 현행 제6장 집회, 제7장 직무→개정안 제3장 '의회'로 명칭 변경하고 내용 보완수

현 행 법	개 정 안	비 고
	3. 부원회 4. 정기총회 5. 임시총회 **제 6 조(임원회)** 임원회의 조직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들(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각부 부장)로 구성하며, 회무의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며 일반회무를 처리한다. **제 7 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11월 중 당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제적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보고 및 계획 2) 예산 결산안 심의 3) 임원 선출 4) 기타 중요한 사항 4. 임시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제 8 조(월례회)** 매월 1회 회장이 소집하며 기도회, 신입회원통과, 사업보고, 회비납부 및 기타사업을 처리한다. **제 9 조(부원회)** 각 부의 필요에 따라 부장이 소집한다.	정
제 3 장 임원 **제 5 조** 이회의 임원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서기 2명(정, 부), 회계 2명(정, 부),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제 6 조** 이회의 직무	제 4 장 임원 **제 10 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2명(정, 부), 회계 2명(정, 부), 각부 부장 1명, 감사 2명으로 하되 임	• 현행 제3장→개정안 제4장으로 이동 수정보완(개정안 제 10조 2항 신설, 제11조

현 행 법	개 정 안	비 고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일체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도우며 회장이 결석할 때 그 임무를 대리한다. ③ 서기는 이 회의 일체의 문서와 통신 사무를 장리한다. ④ 회계는 이 회의 금전출납을 장리한다. ⑤ 각부 부장은 그 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⑥ 감사는 회계 장부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⑦ 교회 담임자는 고문이 된다. **제 7 조** 이회의 임원은 이 회 정기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하되 재선될 수 있다. **제 8 조** 이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9 조** 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시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 동안으로 한다. 2. 한 교회에 여선교회 지회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회장 및 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명칭은 '대표'란 말을 사용한다.예)대표회장 **제 11 조(임원의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한다. 2. 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제 12 조(임원의 임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2.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도우며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이 이를 대리한다. 3. 총무 : 총무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무를 맡아 감당하고 회원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사업발전에 힘쓴다. 4. 서기 : 본회의 일반 문서 및 기록 사무를 담당, 정리한다. 5. 회계 : 회계는 본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임원회, 정기총회, 월례회 등에 보고한다. 6. 각부 부장 : 부 회원을 두고 사업 안을 계획 실천한다.	신설, 현행 제6조는 개정안 제12조로 수정) • 현행 제6조 6항,7항→개정안 제6장 감사 및 자문으로 분리 이동 및 수정보완
제 4 장 부서 **제 10 조**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를 두고 직무를 분담하며 각 부에 부원 약간 명을 둔다. ① 선교부 : 회원의 신앙 향상과 국내외 선교사업을 장려	제 5 장 부서 **제 15 조(부서)** 본 회의 목적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현행 제4장 부서→개정안 제5장으로 이동, 전체문구 수정 및 조정

현 행 법	개 정 안	비 고
한다. ② 교육부 : 성경통신과 사업을 힘쓰며 기독교 문화의 보급과 회원의 교양을 지도한다. ③ 생활지도부 : 교회를 도우며 계몽운동, 부업장려, 생활개선, 후생사업 등을 장려한다. ④ 기획부 : 각 부 사업을 기획 검토하고 프로그램을 연구 발전시킨다.	1. 기획부 : 본 회의 모든 행정을 관할하여 사업추진 및 발전에 힘쓴다. 2. 재정부 : 회원의 회비납부를 장려하며 재정조달에 힘쓴다. 3. 선교부 : 회원의 신앙향상과 국내외 선교에 힘쓴다. 4. 교육부 : 본회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 등을 개최한다. 5. 사회사업부 : 안식관 운영과 사랑의 둥지 운영 협조 및 지역봉사에 힘쓴다. 6. 연구부 : 본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쓴다. 7. 청소녀지도부 : 청소녀선교회 회원의 신앙지도와 선교의식개발 및 선교활동 참여에 힘쓴다. 8. 문화부 : 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 제 6 장 감사 및 자문 **제 13 조(자문)** 교회의 담임목사와 여교역자를 자문으로 추대한다. **제 14 조(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2명으로 하고 결산을 감사하며 매년 정기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 7 장 선거 **제 16 조(선거시기)** 선거는 매년 11월 중 당회 전에 실시한다.	• 현행 제10조 3항 ‘생활지도부’ 삭제 • 개정안 제15조 부서에 사회사업부, 연구부, 청소녀지도부, 문화부 신설 • 개정안 제6장 감사 및 자문 조항 신설 • 개정안 제7장 선거 조항 신설

현 행 법	개 정 안	비 고
	제 17 조(입후보자의 자격) 1.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지닌 자로 신앙생활 및 여선교회의 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이라야 한다. 2. 여선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어야 한다. **제 18 조(선거방법)** 1. 추천된 후보를 무기명으로 투표하되 감사 및 임원의 당선은 재석회원 과반수를 얻어야 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재석회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회장선거에 있어 재석회원 2/3의 표를 얻지 못할 경우 3차례까지 투표를 하고 그 후에는 종다수를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대표회장 및 대표임원의 선출은 전체 지회 회장단에서 한다.	
제 5 장 재정 **제 11 조** 이 회의 재정은 회비, 의연금, 헌금으로 충당한다.	제 8 장 재정 **제 19 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월례회비와 사업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단, 지방 부담금은 매 계삭회 시 지방여선교회에 납부한다.	• 현행 제5장 재정→개정안 제8장으로 이동, 수정
제 6 장 집회 **제 12 조** 이 회의 집회 ① 정기 총회 : 매년 당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월례회 : 매월 1차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원회 : 회무의 필요를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현행 제6장 집회, 제7장 직무→개정안 제3장 '의회'로 명칭 변경하고 내용 보완수정

현 행 법	개 정 안	비 고
제 7 장 직무 **제 13 조** 이 회의 각 집회의 직무 ① 정기총회 : 임원개선, 사업보고, 재정보고, 예산통과 및 다른 사무를 처리한다. ② 월례회 : 기도회, 신입회원통과, 사업보고, 회비수납, 임원보선 및 다른 사업을 처리한다. ③ 임원회 : 회무 진행상 필요한 일을 연구 토의한다. ④ 부회 : 각 부 사업을 토의한다. ⑤ 연락 : 본회는 그 지방 여선교회에 소속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연합회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제 9 장 규칙제정 및 개정 **제 20 조(제정 및 개정)** 본회의 규칙제정 및 개정은 여선교회전국연합회 임원회에서 심의 제정 및 개정한다.	• 개정안 제9장 규칙제정 및 개정 신설
제 8 장 부칙 **제 14 조** 필요한 경우 세칙을 만들되 담임목사와 지방 총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5 조** 이 회 부담금은 그 지방 총무를 경유하여 대회 회계에게 보낸다. **제 16 조** 본 회의 규칙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의 가표를 얻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얻은 후에 시행한다.	제 10 장 부칙 **제 21 조**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규칙에 준한다.	• 현행 제8장 부칙→개정안 제10장 부칙으로 이동, 수정보완

35. 여선교회 지방연합회 규칙

현 행 법	개 정 안	비 고
제 1 장 이름과 목적 **제 1 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ㅇㅇ지방 여선교회라 한다. **제 2 조** 이 회는 지방 내 각 교회에 조직된 여선교회를 연합하여 그리스도 정신으로 교회를 도우며 국내외 선교사업과 일반사회 봉사사업으로 천국운동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직 **제 3 조** 이 회는 그 지방 각 교회 안에 있는 여선교회들로 조직한다. 제 3 장 회원 **제 4 조** 지회대표, 회장, 지방임원, 여교역자, 그 지방에 파송 받은 국내외 여선교사로 한다. 단 지방 감리사는 고문이 됨. 제 4 장 임원 **제 5 조** 이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서기 2명(정, 부), 회계 2명(정, 부), 각부 부장 1명, 감사 2명 **제 6 조** 이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이름)** 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지방 연합회라 한다. **제 2 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해당 지방 안에 둔다. **제 3 조(목적)** 본회는 연회여선교회 및 여선교회 전국연합회의 계획에 따라 그 지방 안에 있는 각 교회여선교회를 지도한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제 4 조(조직)** 1. 본회는 지방 안에 있는 개체교회 여선교회들로 조직한다. 2. 각 지방에 지방 여선교회를 두어 지방회장이 이를 지도하도록 한다. **제 5 조(회원)** 본회 회원은 지방 안에 있는 개 교회 여선교회 회원들로 한다.	• 현행 제1조 '기독교대한감리회 ○○지방 여선교회'→'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지방연합회'로 수정(개정안 제1조) • 개정 제2조(소재지) 신설 • 현행 제2조→개정 제3조 '본회는 연회여선교회 및 여선교회 전국연합회의 계획에 따라 그 지방 안에 있는 각 교회여선교회를 지도한다'로 수정 • 현행 제2장과 제3장을 통합→개정 제2장 '조직과 회원'으로 조정 • 현행 제3조→개정 제4조 1항 '본회는 지방안에 있는 개체교회 여선교회들로 조직한다', 2항 '각 지방에 지방 여선교회를 두어 지방회장이 이를 지도하도록 한다'로 보완 수정 • 현행 제4조→개정 제5조 수정 • 현행 제5조→개정 제11조로 이동, '하되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시는 임원회에서

현 행 법	개 정 안	비 고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② 부회장은 모든 사업을 협동하여 발전에 힘쓴다. ③ 서기는 본 회의 회록과 통신을 정리 보관한다. ④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일을 장리한다. ⑤ 각부 부장은 부원회를 두고 사업안을 계획 실천한다. 단, 부원은 부장이 택한다. **제 7 조** 이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선에 한한다. **제 8 조** 이 회 임원은 여선교회 연합회 총회 후 첫 번 회의에서 선거한다.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 9 조** 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이 있다. 제 5 장 의회 **제 10 조** 이 회 회의는 정기총회, 계삭회, 임원회가 있다. ① 정기총회 : 매년 2월에 소집한다. ② 계삭회 : 3, 6, 9, 12월에 계삭회로 모인다. ③ 임원회 :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 3 장 의회 **제 6 조(종류)** 1. 임원회 2. 계삭회 3. 부원회 4. 정기총회 5. 임시총회 **제 7 조(임원회)** 임원회의 조직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들(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각부 부장, 감사)로 구성하며, 1년에 4회 이상 계삭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며 일반회무를 처리한다. 3. 계삭회를 준비한다. **제 8 조(계삭회)** 1년에 4회 1, 4, 7, 10월에 모인다. **제 9 조(부원회)** 1년에 1회 이상 각 부 부원회의를 각부 부장이 소집한다.	보선하여 잔여 임기동안 임원직을 맡는다' 보완삽입(개정안 11조) • 현행 제6조→개정 제4장 제13조로 수정보완, 1항 '회장과 관련, 직무상 지방회 회원이 되며 지방 실행부위원이 되다' 삽입(개정안 제13장 1항) • 현행 제6조 총무 규정 삽입(개정안 제13조 3항) • 현행 제7조 '2선'→ 개정 제4장 제12조 1항.'재선'으로 수정 • 현행 제8조와 제9조 삭제 • 현행 제5장 의회 개정안 제3장 의회로 수정 보완 • 현행 제10조 1항 정기총회 개정안 제10조에 수정 보완(개정안 제10조) • 현행 제10조 2항 '계삭회 3,6,9,12 개최'→'1년에 4회 1,4,7,10'으로 수정(개정안 제8조) • 현행 제10조 3항, 개정안 제7조로 보완 수정

현 행 법	개 정 안	비 고
	제 10 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2년에 1회 전국연합회 총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며 지방 여선교회 임원, 개체교회 여선교회 대표회장과 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총대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보고 및 계획 2) 예산 결산안 심의, 승인 3) 임원 선출 4) 기타 중요한 사항 4. 임시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제 4 장 임원 **제 11 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2명(정, 부), 회계 2명(정, 부), 각부 부장 1명, 감사 2명으로 하되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시는 임원회에서 보선하여 잔여 임기동안 임원직을 맡는다. **제 12 조(임원의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 한다. 2. 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제 13 조(임원의 의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연회 및 전국연합회와 관련한 사업을 처리한다. 또한 회장은 직무상 지방회 회원이 되며 지방 실행부위원이 된다.	• 현행 제7조→개정안 제12조 2항 삽입 • 현행 제12조, 개정안 제13조에 보충하여 수정(개정안 제13조 1항)

현 행 법	개 정 안	비 고
	2.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은 도우며 회장의 유고시 연장자가 회장을 대리한다. 3. 총무 : 총무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무를 맡아 감당하고 개체교회 여선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사업발전에 힘쓴다. 4. 서기 : 본회의 일반 문서 및 기록 사무를 담당 정리한다. 5. 회계 : 회계는 본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임원회, 정기총회, 계삭회 등에 보고한다. 6. 각부 부장 : 부 회원을 두고 사업 안을 계획 실천한다.	
	제 5 장 부서	
제 11 조 이 회의 부서는 연합회 부서에 따라 실천한다. **제 12 조** 회장은 직무상 그 지방 회원이 되며{ 「교리와 장정」 제4편 제4장 제43조(지방회 조직) 제⑤항} 지방실행위원{ 「교리와 장정」 제4편 제4장 제56조(지방실행위원회의 조직) 제④항}이 된다.	**제 14 조(부서)** 본 회의 목적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기획부 : 본 회의 모든 행정을 관할하며 사업추진 및 발전에 힘쓴다. 2. 재정부 : 회원의 회비납부를 장려하며 재정조달에 힘쓴다. 3. 선교부 : 회원의 신앙향상 및 국내외 선교와 여선교회 선교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힘쓴다. 4. 교육부 : 본회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를 개최한다. 5. 사회사업부 : 안식과 운영과 사랑의 둥지 운영 및 협조, 지역봉사에 힘쓴다. 6. 연구부 : 본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쓴다. 7. 청소녀지도부 : 청소녀선교회원의 신앙지도와 선교의식 개발 및 선교활동 참여에 힘쓴다.	• 현행 제11조, 개정안 제5장에 보완 수정

현 행 법	개 정 안	비 고
	8. 문화부 : 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 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	
	제 6 장 감사	• 개정안 제6장 제15조 신설
	제 15 조(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2명으로 하고 매년 결산을 감사하며 매년 마지막 계삭회와 정기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 7 장 선거	• 개정안 제7장 신설
	제 16 조(입후보자의 자격) 1.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지닌 자로 신앙생활 및 여선교회의 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이라야 한다. 2. 회장 입후보자는 감리교회에 10년 이상 출석하고 2년 이상 지방 임원 및 지회 회장으로 봉사한 이로 권사 이상으로 한다. **제 17 조(선거방법)** 추천된 후보를 무기명으로 투표하되 감사 및 임원의 당선은 재석회원 과반수를 얻어야하며 회장은 재석회원 2/3의 표를 얻지 못할 경우 2차례까지 투표하고 그 후에는 종다수를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6 장 재정	제 8 장 재정	• 현행 제6장 제13조→개정안 제8장 제18조로 보완 수정
제 13 조 이 회는 그 지방 여선교회의 부담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한다. 단, ① 대회에서 결정한 부담금 및 사업비는 지방 여선교회	**제 18 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개체교회 여선교회 부담금과 사업운영을 위한 찬조금, 각종 수입금을 한다. 단, 전국연합회 총회에서 결정한 부담금 및 사업비는 매 계삭회가	

현 행 법	개 정 안	비 고
연합회 회계에게 보낸다. ② 이 회 회계 장부는 매년 마지막회시 감사보고한다. 제 7 장 부칙 **제 14 조** 이 회 규칙은 필요에 의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총회인준과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끝나는 즉시 연회연합회에 송금한다. 제 9 장 부칙 **제 19 조(규칙제정 및 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에 준한다.	• 현행 제7장 제14조 부칙→개정 제19조로 수정

36. 여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현 행 법	개 정 안	비 고
제 1 장 총칙 **제 1 조(이름)**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연회라 한다. **제 2 조(소재지)** 본 회 사무소는 ○○연회 안에 둔다. **제 3 조(목적)** 본 회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본 회 안에 있는 각 지방 여선교회가 교회 및 사회봉사와 선교사업에 힘쓰도록 연구하고 도우며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사업에 동참한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제 1 장 총칙 **제 1 조(이름)** 본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연회 연합회라 한다. **제 2 조(소재지)** 본회 사무소는 ○○연회 안에 둔다. **제 3 조(목적)** 본회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본회 안에 있는 각 지방 여선교회가 교회 및 사회봉사와 선교사업에 힘쓰도록 연구하고 도우며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사업에 동참한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 현행 제1조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연회’→‘여선교회 ○○연회 연합회’로 수정

현 행 법	개 정 안	비 고
제 4 조(조직) ① 본 회는 그 연회 안에 있는 각 지방 여선교회들로 조직한다. ② 각 지방에 지방 여선교회를 두어 지방회장이 이를 지도하도록 한다. **제 5 조(회원)** 그 연회 안에 있는 여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제 4 조(조직)** 1. 본회는 그 연회 안에 있는 각 지방 여선교회들로 조직한다. 2. 각 지방에 지방 여선교회를 두어 지방회장이 이를 지도하도록 한다. **제 5 조(회원)** 그 연회 안에 있는 여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제 3 장 임원		• 현행 제3장 임원→제4장 임원로 이동 • 현행 제4장 의회→제3장 의회로 이동
제 6 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서기 2명(정, 부), 회계 2명(정, 부), 각부 부장 1명, 감사 2명으로 한다. **제 7 조(임원의 임기)** ①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한다. ② 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제 8 조(임원의 의무)**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전국연합회와 관련한 사업을 처리한다. ②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도우며 회장의 유고시 연장자가 회장을 대리한다. ③ 총무 : 총무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무를 감당하고 지방 여선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사업발전에 힘쓴다. ④ 서기 : 본 회의 일반문서 및 기록사무를 담당 정리한다. ⑤ 회계 :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		• 현행 제8조 5항 '연회여선교회' 삭제(개정안 제13조 5항)

현 행 법	개 정 안	비 고
고 임원회, 정기총회, 연회 여선교회 등에 보고한다. ⑥ 각부 부장 : 부회원을 두고 사업안을 계획 실천한다. ⑦ 감사 : 매년 결산을 감사하여 매년 실행위원회 및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 현행 제8조 7항 「매년 실행위원회」 삭제(개정안 제13조 7항)
제 4 장 의회	제 3 장 의회	
제 9 조(종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의회를 둔다. ① 임원회 ② 실행위원회 ③ 정기총회 ④ 임시총회	**제 6 조(종류)**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의회를 둔다. 1. 임원회 2. 정기총회 3. 임시총회	• 현행 제9조 ②항 '실행위원회' 삭제(개정안 제6조)
제 10 조(임원회) ① 격월로 정기 임원회를 가진다.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7 조(임원회)** 1. 격월로 정기 임원회를 가진다.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1 조(임원회의 결의사항) ① 총회 및 실행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수행,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 ② 임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준비 ③ 기타 필요한 사항	**제 8 조(임원회의 결의사항)** 1.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수행, 일반회무를 처리한다. 2. 임원회를 제외한 각종회의에 부의할 사항 준비 3. 기타 필요한 사항	• 현행 제11조 ①항 '실행위원회' 삭제(개정안 제8조 1항)
제 12 조(각종 회의 의결) 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중 과반수 참석으로 성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선택권을 가진다. ③ 감사는 발언권을 가지되 의결권은 없다. ④ 회의 종결 후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고 그 진위 여부	**제 9 조(각종회의 의결)** 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중 과반수 참석으로 성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선택권을 가진다. 3. 감사는 발언권을 가지되 의결권은 없다. 4. 회의 종결 후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고 그 진위여부를	

현 행 법	개 정 안	비 고
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 13 조(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의 조직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실행위원회는 연회임원, 지방회장으로 구성하며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및 필요한 안건처리 ③ 사업보고 및 계획, 결산 및 예산안 심의 ④ 기타 필요한 사항	확인 받아야 한다.	• 현행 제13조(실행위원회) 삭제
제 14 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2년에 1회 10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연회임원, 지방회장, 지방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대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승인 2.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3. 임원선출 4. 기타 중요한 사항 ④ 임시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제 10 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 전국 총회 전에 회장이 소집하며 연회임원, 지방회장, 지방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대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3. 정기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승인 2)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3) 임원 선출 4) 기타 중요한 사항 4. 임시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제 4 장 임원 **제 11 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서기 2명(정, 부), 회계 2명(정, 부), 각부 부장 1명, 감사 2명으로 한다. **제 12 조(임원의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 한다.	• 현행 제14조 ①항 '2년에 1회 10월 중에'→'매년 11월 중 전국총회 전에'로 수정 (개정안 제10조 1항)

현 행 법	개 정 안	비 고
	2. 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제 13 조(임원의 임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전국연합회와 관련한 사업을 처리한다. 2.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도우며 회장의 유고시 연장자가 회장을 대리한다. 3. 총무 : 총무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무를 감당하고 지방 여선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사업발전에 힘쓴다. 4. 서기 : 본회의 일반 문서 및 기록 사무를 담당 정리한다. 5. 회계 : 회계는 본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임원회,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6. 각부 부장 : 부 회원을 두고 사업 안을 계획 실천한다. 7. 감사 : 매년 결산을 감사하며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제 5 장 자문 및 감사 자문 : 연회의 감독을 자문으로 추대한다. 감사 :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2명으로 하고 매년 결산을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 현행 제5장 자문 및 감사→제6장으로 이동
제 6 장 부서	제 5 장 부서	• 현행 제6장 부서→제5장으로 이동
제 15 조(부서) 본 회의 목적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	**제 14 조(부서)** 본회의 목적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	• 현행 제6장 제15조→개정안

현 행 법	개 정 안	비 고
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재정부 : 회원은 회비납부를 장려하며 재정조달에 힘쓴다. ② 선교부 : 회원의 신앙향상 및 국내외 선교에 힘쓴다. ③ 교육부 : 본 회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를 개최한다. ④ 사회사업부 : 안식관 운영과 감리교 여선교회 사회복지재단 운영 및 협조, 지역봉사에 힘쓴다. ⑤ 연구부 :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쓴다. ⑥ 청소녀지도부 : 청소녀선교회 회원의 신앙지도와 선교의식개발 및 선교활동 참여에 힘쓴다. ⑦ 문화부 : 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기획부 : 본 회의 모든 행정을 관할하며 사업추진 및 발전을 위하여 힘쓴다. 2. 재정부 : 회원의 회비납부를 장려하며 재정조달에 힘쓴다. 3. 선교부 : 회원의 신앙향상 및 국내외 선교와 여선교회 선교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힘쓴다. 4. 교육부 : 본회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를 개최한다. 5. 사회사업부 : 안식관 운영과 사랑의 둥지 운영 및 협조, 지역봉사에 힘쓴다. 6. 연구부 : 본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쓴다. 7. 청소녀지도부 : 청소녀선교회 회원의 신앙지도와 선교의식개발 및 선교활동 참여에 힘쓴다. 8. 문화부 : 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	제5장 제14조 1항 기획부 삽입 • 현행 제6장 제15조 ②항에 '여선교회 선교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삽입 (개정안 제5장 제14조 3항) • 현행 제15조 4항 '감리교여선교회 사회복지재단'→'사랑의 둥지 운영 및 협조'로 수정 (개정안 제5장 제14조 5항)
제 7 장 선거	제 6 장 자문 및 감사	
	제 15 조(자문 및 감사) 자문 : 연회의 감독을 자문으로 추대한다. 감사 :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2명으로 하고 매년 결산을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 7 장 선거	
제 16 조(임원선거) 본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거하	**제 16 조(임원선거)** 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거하며	

현 행 법	개 정 안	비 고
며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 17 조(입후보자의 자격)** ①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지닌 자로 신앙생활 및 여선교회의 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② 회장 입후보자는 감리교회에 10년 이상 출석한 이로 지방 및 연회에서 4년 이상 임원으로 봉사한 자라야 하며 내규에 준한다. **제 18 조(투표방법)**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 부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은 확정된 신임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회장은 재석대표 2/3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단, 2차 투표시까지 2/3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할 시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② 임원 및 감사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제 8 장 재정 **제 19 조(재정)** 여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 지방에 부담한 지방부담금은 연합회로 보내고 연합회에서는 연회활동을 위해 각 연회에 필요경비를 지급한다. 제 9 장 부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에 준한다.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 17 조(입후보자의 자격)** 1.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지닌 자로 신앙생활 및 여선교회의 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이라야 하며 지방여선교회에서 4년 이상의 임원경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 2. 회장 입후보자는 감리교회에 10년 이상 출석하고 지방 및 연회에서 4년 이상 임원으로 봉사한 이로 전국연합회 공천위원회의 심의 후 통과된 자로 내규에 준한다. **제 18 조(투표방법)**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 부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은 확정된 신 임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회장은 재석대표 2/3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단, 2차 투표시 까지 2/3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할 시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2. 임원 및 감사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제 8 장 재정 **제 19 조(재정)** 여선교회전국연합회에서 지방에 부담한 지방부담금은 연회를 통하여 전국연합회로 보내고 전국연합회에서는 연회 활동을 위해 각 연회에 필요경비를 지급한다. 제 9 장 부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에 준한다.	• 현행 제7장 제17조 ①항에 '지방여선교회에서 4년 이상의 임원경력이 있는' 삽입 (개정 제7장 제17조 1항) • 현행 제17조 2항 '출석한 이로'→출석하고, '봉사한 자라야'→'봉사한 이로 전국연합회 공천위원회의 심의 후 통과된 자로' 수정 (개정 제7장 제17조 2항) • 현행 제8장 제19조 '연합회에 보내고'→'연회를 통하여 전국연합회로 보내고', '연합회에서는'→'전국연합회에서는'으로 수정(개정안 제19조)

37.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현 행 법	개 정 안	비 고
제 1 장 총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이름)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라 한다.	**제 1 조(명칭)** 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라 한다.(개정)	
제 2 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조(소재지)** 본회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안에 둔다.(개정)	• 현행 제2조 서울특별시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개정)로 수정
제 3 조(목적) 본 회는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하여 회원들의 신앙향상, 여성지도력개발, 교회발전 등을 위해 노력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국내외선교, 사회선교, 농어촌선교 및 복지사회 구현에 힘쓴다.	**제 3 조(목적)** (개정) **1. 여선교회 각 연회연합회와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회원들의 신앙향상, 여성지도력개발, 교회발전 등을 위해 노력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국내외선교, 사회선교, 농어촌선교 및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기본정책을 연구, 수립, 실천한다.** **2. 각 연회연합회 활동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전국 각 교회 여선교회의 부흥 발전을 도모한다.** **3. 국내외 각 교회 평신도연합회와 연결하여 교회일치운동과 평신도 연합활동에 참여한다.**	• 현행 제3조 개정안 1, 2, 3 항으로 수정 보완
	제 4 조(소속) 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관할 하에 둔다.	• 개정안 제4조 신설
제 2 장 조직 및 기관	제 2 장 조직 및 기관	
제 4 조(조직 및 기관) ① 본 회의 조직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여선교회로 하며 1) 연회 여선교회 2) 지방 여선교회 3) 개체 여선교회를 둔다. ② 각 연회에 연회 여선교회를 두어 연회 회장이 이를 지	**제 5 조(조직 및 기관)** 1. 좌동	

현 행 법	개 정 안	비 고
도하도록 한다. ③ 연회의 회장은 전국연합회의 부회장이 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복지재단의 이사가 되고 회장은 이사장이 된다.	2. 좌동 3. 연회 연합회 회장은 전국연합회의 부회장이 된다.(개정) 4. **본회 부설기관으로 여선교회관, 은퇴여교역자를 위한 안식관, 100주년 기념 제주도연수원, 선교교회, 사랑의 둥지를 둔다.**(신설)	• 현행 제4조 제3항 '기독교대한감리회 … 이사장이 된다' 삭제 • 개정안 제5조 제4항 신설
	제 3 장 회원과 의무 **제 6 조(회원과 의무)** 1. 회원 : 본회 회원은 제1장 3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여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2. 의무 : 본회 회원은 법으로 규정된 모든 의무(지방, 연회, 전국연합회 부담금)를 이행해야 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모든 회에서 회원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3. 총대 : 총회대표는 전국연합회 임원, 각 연회대표 5명(부회장 2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각 지방회장으로 한다.	• 개정안 제3장 회원과 의무 신설 삽입
제 3 장 의회 **제 5 조(종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의회를 둔다. ① 임원회 ② 실행위원회 ③ 전국대회 ④ 정기총회 ⑤ 임시총회	제 4 장 의회 제 7 조(종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의회를 둔다. 1. 임원회 2. 정기총회 3. 임시총회 4. 전국대회	• 현행 제3장 제5조 2항 '실행위원회' 삭제 • 현행 제3장 의회→제4장 의회로 수정

현 행 법	개 정 안	비 고
제 4 장 각 의회 회원 자격 및 직무	제 5 장 각 의회 회원 자격 및 직무	
제 6 조(임원회) ① 매월 1회 정기임원회를 가진다. ② 임시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임원회)** 1. 매월 1회 정기임원회를 가진다. 2. 임시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 7 조(임원회의 결의사항) ① 총회 및 실행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수행하며 일반회무를 처리한다. ② 임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준비 ③ 여선교회에 관련된 제반 규칙 및 규정 심의 ④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⑤ 기타 필요한 사항	**제 9 조(임원회의 결의사항)** 1.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수행하며 일반회무를 처리한다. 2. 임원회를 제외한 각종회의에 부의할 사항 준비 3. 여선교회에 관련된 제반 규칙 및 규정 심의 4.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 현행 제7조①항 실행위원회 삭제
제 8 조(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① 실행위원회는 임원(연합회, 연회), 지방회장으로 구성하며,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필요시 회장이 임시 실행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및 필요한 안건 처리 ③ 사업보고 및 계획, 결산 및 예산안 심의 ④ 기타 필요한 사항		• 현행 제8조(실행위원회) 삭제
제 9 조(전국대회) ① 참가자격 : 전국대회는 매년 4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여선교회 개체교회 회장 전원, 개체교회 대표(40명 이내인 개체교회 1명, 40명 이상인 개체교회는 40명에 1명), 지방대표, 지방 임원, 연회 임원, 전국연합회 임원, 여교역자 대표, 미 여선교사 대표, 여장로회 대표, 각 부 위원, 청소년 선교회 회원 15명에 1명 비례로 선정된 대표로 구성한다.		• 현행 제9조(전국대회)→개정안 제12조로 수정 • 현행 제9조 ①항 '참가자격' →개정안 제12조 1항 '개최일과 참가자격'으로 보완하여 수정

현 행 법	개 정 안	비 고
단, 당해연도 장소 및 사정에 의하여 대회 규모의 축소 또는 확대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전국대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보고 및 토의 2. 결산 및 예산 보고 3. 선교사 파송 4. 전국 회원의 신앙향상과 친교모임 5. 기타사항 **제 10 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2년에 1회,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연합회 임원, 연회 임원, 지방회장, 지방대표 1명, 여교역자 대표 10명, 여장로회 대표 5명으로 구성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총대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승인 2.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 3. 임원선출 4. 규칙개정 5. 기타 중요한 사항 ④ 임시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제 10 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전국연합회 임원, 연회대표 5명, 지방회장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승인 2)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3) 임원 선출 4) 규칙 개정 5) 기타 중요한 사항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대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제 11 조(회계년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2 조(전국대회)** 1. 개최일과 참가자격 : 전국대회는 매년 4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전국의 모든 회원과 청소녀선교회 회원으로	• 현행 제10조(총회의 구분) ①항'정기총회는 2년에 1회'→'정기총회는 매년 11월'로, '동항의 총대를' 전국 연합회 임원, 연회대표 5명, 지방회장'으로 수정 • 현행 제10조 2항은 개정안 제 10조 3항으로 이동 • 현행 제10조 3항은 개정안 제10조 2항으로 이동 • 현행 제11조는 개정안 제13조로 이동

현 행 법	개 정 안	비 고
	구성한다. 단, 당해연도 장소 및 사정에 의하여 대회 규모의 축소 또는 확대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2. 전국대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보고 2) 결산 및 예산 보고 3) 선교사 파송 4) 전국 회원의 신앙향상과 친교모임 5) 기타사항	
제 11 조(각종 회의 의결) 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중 과반수 참석으로 성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선택권을 가진다. ③ 총무 및 감사는 발언권을 가지되 의결권은 없다. ④ 회의 종결 후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 13 조(각종회의 의결)** 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중 과반수 참석으로 성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선택권을 가진다. 3. 총무 및 감사는 발언권을 가지되 의결권은 없다. 4. 회의 종결 후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고 그 진위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 5 장 임원	제 6 장 임원	• 현행 제5장 임원→개정 제6장 임원으로 수정
제 12 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연회별 1명씩), 총무 1명(직책상), 서기 2명, 회계 2명, 각부 부장 1명, 감사 4명으로 한다. ① 자문위원 : 본 회는 본 회 운영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합회 임원 경력 4년 이상으로 공로가 뛰어난 자문위원 약간 명을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추대할 수 있다. ② 자문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14 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각 연회 회장), 총무 1명(직책상), 서기 2명, 회계 2명, 각부 부장 1명, 감사 4명으로 한다.	• 현행 제12조 '부회장(연회별 1명씩)'→개정 제14조 '부회장(각 연회회장)'으로 수정 • 현행 제12조 1항 자문위원 → 개정 제8장 자문위원으로 이동
제 13 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중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	**제 15 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한다.	• 현행 제13조 1항 '1회에 관하여 중임을 할 수 있다'→개정안 제15조 1항 '재선에 한한다'로 수정, 현행 2항

현 행 법	개 정 안	비 고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③ 총무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총회에서 임원선출이 있었을 시 구임원의 임기는 총회 폐회와 더불어 만료된 것으로 한다. **제 14 조(임원의 선출)** ① 본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총무는 연합회 내규에 의한 공채를 원칙으로 하며 임원회의 추천으로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재석위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15 조(결원 임원의 선출)**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 16 조(임원의 자격)** ① 회장은 감리교회에 15년 이상 출석한 이로 지방 및 연회에서 4년 이상 임원으로 봉사한 자라야 하며, 내규에 준한다. ② 부회장 및 부장, 감사는 4년 이상 지방 및 연회에서 봉사한 자라야 하며 내규에 준한다. **제 17 조(임원의 의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임원회에서 부회장 중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실무를 담당하며 지방회장과 사무를 연락한다.(기타 총무에 관한 사항은 연합회 내규에 의한다.) ④ 서기는 본 회의 일반 문서 및 기록 사무를 정리한다.	2. 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3.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합 6년) 4.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총회에서 임원선출이 있었을 시 구임원의 임기는 총회 폐회와 더불어 만료된다. **제 16 조(임원의 선출)** 1. 본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는 연합회 내규에 의한 공채를 원칙으로 하며 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재석위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17 조(결원 임원의 선출)**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 18 조(임원의 자격)** 1. 회장은 감리교회에 15년 이상 무흠하게 출석한 이로 지방 및 연회에서 4년 이상 임원으로 봉사한 자라야 하며 내규에 준한다. 2. 부회장 및 부장, 감사는 4년 이상 지방 및 연회에서 봉사한 자라야 하며 내규에 준한다. **제 19 조(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임원회에서 부회장 중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실무를 담당하며 본 회의 모든 시설과 기관 즉 연합회 사무실, 회관, 안	'중임한'을 '재임한'으로 수정(개정안 제15조 1,2항), 3항 '3회'→'2회'로 수정(개정안 제 15조 3항), 5항 '만료된 것으로 한다'→'만료된다'로 수정(개정안 제15조 5항) • 현행 제14조 2항 '실행위원회의 인준'→개정 제16조 2항 '총회의 인준'으로 수정 • 현행 제16조 1항에 '무흠하게' 삽입(개정안 제18조 1항) • 현행 제17조 3항 '지방회장과 사무를 연락한다'→'본회의 모든 시설~연락한다' 보

현 행 법	개 정 안	비 고
⑤ 회계는 본 회의 모든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결산과 예산을 임원회와 실행위원회, 전국대회,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⑥ 각부 부장은 그 부서의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전국대회와 실행위원회,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⑦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며 임원회, 실행위원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식관, 연수원, 선교교회, 사랑의 둥지의 제반 사무(인사, 행정, 재정)를 지휘, 관장하며 각 연회와 지방과 사무를 연락한다.(기타 총무에 관한 사항은 연합회 내규에 의한다.) 4. 서기는 본 회의 일반 문서 및 기록 사무를 정리한다. 5. 회계는 본회의 모든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결산과 예산을 임원회와 정기총회, 전국대회에 보고한다. 6. 각 부 부장은 그 부서의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정기총회, 전국대회에 보고한다. 7.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며 임원회, 총회에 참석하여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완 수정(개정안 제19조 3항) • 현행 제17조 5항 '실행위원회' 삭제, '전국대회, 정기총회'의 순서를 '정기총회, 전국대회'로 수정, 7항 '실행위원회' 삭제
제 6 장 부서 **제 18 조(부서구별)** 본 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기획부 : 본 회의 모든 행정을 관할하며 사업추진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인사위원회 : 본 회 직원의 인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을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고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2. 규칙위원회 : 규칙의 제정, 개정에 대하여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개정토록 하고 규clr해석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규칙 해석을 맡는다. 3. 회관관리위원회 : 여선교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맡는다. 4. 감리교 여선교회 사회복지재단 운영위원회 : 연합회 사회복지재단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맡는다.	제 7 장 부서 **제 20 조(부서구별)** 본회의 목적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기획부 : 본 회의 모든 행정을 관할하며 사업추진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인사위원회 : 본 회 직원의 인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을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고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2) 규칙위원회 : 규칙의 제정, 개정에 대하여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 개정토록하고 규칙해석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규칙해석을 맡는다. 3) 회관관리위원회 : 여선교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맡는다. 4) 연수원운영위원회 : 연수원의 관리 및 운영을 맡는다.	• 현행 제6장 부서 제18조 1항 4를 삭제, 개정안 제7장 제20조 1항 4), 5), 6) 삽입

현 행 법	개 정 안	비 고
② 재정부 : 회원의 회비 납부를 장려하며 필요한 재정조달에 힘쓴다. ③ 선교부 : 회원의 신앙향상과 국내외 선교에 힘쓴다. 1. 국내선교위원회 2. 해외선교위원회 3. 사회선교위원회 ④ 교육부 : 본 회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 등을 개최한다. 1. 성서연구위원회 2. 여성개발위원회 3. 장학위원회 4. 교육자문위원회 ⑤ 사회사업부 : 안식관 운영과 지역봉사에 힘쓴다. 1. 안식관운영위원회 ⑥ 연구부 :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쓴다. 1. 환경보전연구위원회 2. 기타조사연구위원회 ⑦ 청소녀지도부 : 청소녀선교회원의 신앙지도와 선교의식 개발 및 선교활동 참여에 힘쓴다. 1. 교회청소녀선교위원회 2. 학교청소녀선교위원회 3. 청년선교위원회	5) 홍보출판위원회 : 본회의 사업을 홍보하며 모든 책자 및 회보를 발간한다. 6) 섭외위원회 2. 재정부 : 회원의 회비납부를 장려하며 필요한 재정조달에 힘쓴다. 1) 바자위원회 3. 선교부 : 회원의 신앙향상과 국내외 선교에 힘쓴다. 1) 국내선교위원회 : 국내의 선교와 여선교회 선교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힘쓴다. 2) 국외선교위원회 3) 사회선교위원회 4. 교육부 : 본회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 등을 개최한다. 1) 성서연구위원회 2) 여성개발위원회 3) 장학위원회 4) 교육자문위원회 5. 사회사업부 : 안식관 운영, 사랑의 둥지 운영과 지역봉사에 힘쓴다. 1) 안식관 운영위원회 2) 사랑의 둥지 운영위원회 6. 연구부 : 본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쓴다. 1) 환경위원회 2) 여성지위향상연구위원회 3) 기타조사연구위원회 7. 청소녀지도부 : 청소녀선교회원의 신앙지도와 선교의식 개발 및 선교활동 참여에 힘쓴다. 1) 교회청소녀선교위원회	• 현행 제18조 2항에 '바자위원회' 삽입(개정안 제20조 2항) • 현행 제18조 3항 국내선교위원회에 '국내의 선교와 여선교회 선교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힘쓴다' 삽입(개정안 제20조 3항) • 현행 제6장 제18조 3항 2. 해외선교위원회→국외선교위원회로 수정 • 현행 제18조 5항 사회사업부 설명에 '사랑의 둥지 운영'과 '사랑의 둥지 운영위원회' 삽입(개정안 제20조 5항 1),2)) • 현행 제18조 6항 '환경보전연구위원회'→'환경위원회'로 수정(개정안 제20조 6항 1)) • 현행 제18조 6항에 '여성지위향상연구위원회' 신설(개정안 제20조 6항 2))

현 행 법	개 정 안	비 고
⑧ 문화부 : 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 1. 음악위원회 2. 연극위원회 3. 미술 및 창작위원회 4. 섭외위원회	2) 학교청소녀선교위원회 3) 청년선교위원회 8. 문화부 : 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 1) 음악위원회 2) 연극위원회 3) 미술 및 창작위원회	• 현행 제18조 8항 '4.섭외위원회' 삭제
	제 8 장 자문위원	• 현행 제5장 제12조 ①항 자문위원회를 분리, 개정안 제8장으로 이동 수정
	제 21 조(자문위원) 1. 자문위원 : 본 회는 본회 운영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합회 임원 경력 4년 이상으로 공로가 뛰어난 자문위원 약간 명을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추대할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7 장 선거 및 방법	제 9 장 선거 및 방법	
제 19 조(선거) 본 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공천위원회를 둔다. **제 20 조(공천위원회 구성)** ① 공천위원은 회장과 부회장 및 임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원 등 9명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위원장이 된다. 회장이 피선거권자가 될 시는 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② 임기가 만료되어 피선거권이 있는 임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단, 본인이 중임을 포기할 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1 조(공천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22 조(선거)** 본 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공천위원회를 둔다. **제 23 조(공천위원회 구성)** 공천위원은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위원장이 된다. 회장이 피선거권자가 될 시는 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 현행 제7장 제20조 1항 '임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원 등 9명'과 2항 삭제(개정안 제23조)

현 행 법	개 정 안	비 고
② 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2 조(간사의 직무)** ① 총무는 간사가 되며 규정에 의한 업무를 준수하며 공정한 선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 2명 이상의 확인을 받아 비치하고 중요사항을 기록한 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 23 조(공천위원회의 의무)** ① 위원회는 총회 60일 전에 각 연회에 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부장은 위원회가 각 연회에서 추천한 임원후보자를 심의하여 본인의 의사를 타진한 후 공천위원회에서 선정할 수도 있으며 회장은 배수공천하되 총회 20일 전에 이력사항을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공시방법은 각 연회 및 후보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하며 피선거권 및 선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선거 직전 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순서를 추첨하여 짧게 출마 의도를 밝히게 하며 회장 투표시는 추천사를 할 수 있게 한다. ⑤ 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장은 당선 확정을 선포한다. **제 24 조(투표용지 및 참관인)** ① 투표용지는 위원회에서 직인을 날인하여 선거 실시 전	**제 24 조(공천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1. 위원회는 필요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5 조(총무의 직무)** 1. 총무는 규정에 의한 업무를 준수하며 공정한 선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2. 총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 2명 이상의 확인을 받아 비치하고 중요사항을 기록한 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 26 조(공천위원회의 의무)** 1. 위원회는 총회 60일 전에 각 연회에 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임원후보자(부회장 포함)를 심의하여 본인의 의사를 타진한 후 공천위원회에서 선정할 수도 있으며 회장은 배수 공천하되 총회 20일 전에 이력사항을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3. 공시방법은 각 연회 및 후보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하며 피 선거권 및 선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선거 직전 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순서를 추첨하여 짧게 출마 의도를 밝히게 하며 회장 투표시는 추천사를 할 수 있게 한다. 5. 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장은 당선확정을 선포한다. **제 27 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납부하여야 할 각종 부담금을 총회 30일 전까지 완납하지 못한 연회 또는 지방의 회장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 현행 제7장 제22조 ①항을 개정안 '제25조'로 분리 • 개정안 제9장 제25조(총무의 직무) 신설, 현행 '제22조' ①항 '간사가 되며' 삭제, ②항의 '간사'→'총무'로 수정 • 현행 제23조 2항 '부장은' 삭제, '위원회가'→'위원회는' 수정(개정안 제26조 2항) • 개정안 제26조 2항에 '임원후보자(부회장 포함)' 보완 수정 • 개정안 제27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신설

현 행 법	개 정 안	비 고
선거인 명부와 대조, 날인하고 교부한다. ② 투개표 참관인은 후보자가 지명하는 2인으로 한다. **제 25 조(개표 및 무효표)** ① 개표는 참관인 입회하에 공천위원이 한다. ② 다음 표는 무효로 한다. 1. 위원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가 아닌 것 2. ○표가 아니고 인장, 사인 등을 표시한 것 3. 기타 위원회에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 **제 26 조(투표 방법)**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 부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은 확정된 신임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회장은 재석대표 2/3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단, 2차 투표시까지 2/3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할 시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② 부회장의 선출은 각 연회별로 하되 총회시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 및 감사의 선출은 종다수로 결정한다.	**제 28 조(투표용지 및 참관인)** 1. 투표용지는 위원회에서 직인을 날인하여 선거 실시 전 선거인 명부와 대조, 날인하고 교부한다. 2. 투개표 참관인은 후보자가 지명하는 2인으로 한다. **제 29 조(개표 및 무효표)** 1. 개표는 참관인 입회하에 공천위원이 한다. 2. 다음 표는 무효로 한다. 1) 위원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가 아닌 것 2) ○표가 아니고 인장, 사인 등을 표시한 것 3) 기타 위원회에서 무효라고 판정한 것 **제 30 조(투표방법)**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 부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은 확정된 신 임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회장은 재석대표 2/3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단, 2차 투표 시까지 2/3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할 시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2. 부회장(연회 회장)의 선출은 각 연회별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전국연합회 공천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후보여야 한다. 3. 임원 및 감사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 현행 제26조 2항에 '단, 전국연합회 공천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한 후보여야 한다' 삽입(개정안 제30조 2항)
제 8 장 상벌	제 10 장 상벌	
제 27 조(표창) 본 회 회원 및 임원과 직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를 얻어 본 회 회장이 표창한다. **제 28 조(징계 대상)** 본 회 회원과 임원 및 직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① 본 회 규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② 본 회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	**제 31 조(표창)** 본 회 회원 및 임원과 직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를 얻어 본 회 회장이 표창한다. **제 32 조(징계대상)** 본회 회원과 임원 및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 현행 제27조, 제28조→개정안 제31조, 제32조로 수정

현 행 법	개 정 안	비 고
③ 본 회의 목적과 사업운영에 비협조적이거나 사무집행을 방해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자 ④ 업무상 부정행위가 있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회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자 ⑤ 기타 각종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자 **제 29 조(징계위원회와 징계 종류)** 본 회 회원 및 임직원이 제28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 징계할 수 있다. ① 징계위원회는 임원회에서 선출한 6인의 위원과 회장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징계위원장은 제28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회 2/3 이상의 찬성결의로 변상, 자격정지, 직위해제, 직원면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징계결의와 동시에 해산되고 위원의 위촉은 해체된다.	1. 본 회 규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본 회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 3. 본 회의 목적과 사업운영에 비협조적이거나 사무집행을 방해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자 4. 업무상 부정행위가 있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회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자 5. 기타 각종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자 **제 33 조(징계위원회와 징계 종류)** 본 회 회원 및 임직원이 제28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 징계할 수 있다. 1. 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들로 구성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2. 징계위원장은 제32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재적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회 2/3 이상의 찬성 결의로 변상, 자격정지, 직위해제, 직원면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징계결의와 동시에 해산되고 위원의 위촉은 해제된다.	• 현행 제29조 1항 '임원회에서 선출된 6인의 위원과 회장으로 구성되며'→'인사위원들로 구성되며'로 수정(개정안 제33조 1항)
제 9 장 재정 **제 30 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연합회가 배정한 부담금과 사업운영을 위한 찬조금, 회관 임대수입 및 헌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11 장 재정 **제 34 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연합회가 배정한 부담금과 사업운영을 위한 찬조금, 회관 임대수입 및 헌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10 장 부칙 **제 31 조(임원의 정년)** 전국연합회 임원의 정년은 70세로	제 12 장 부칙	

현 행 법	개 정 안	비 고
한다. **제 32 조** 본 회는 민법상의 위임 규정을 적용치 않는다. **제 33 조** 본 회 규칙은 전국연합회 총회를 통과한 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제 34 조**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 및 통상규칙에 준한다.	**제 35 조(임원의 정년)** 전국연합회 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제 36 조** 본 회는 민법상의 위임 규정을 적용치 않는다. **제 37 조** 본 회 규칙은 전국연합회 총회를 통과한 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제 38 조**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 및 통상규칙에 준한다.	